

연구총서 10-08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소년원의 처우방안에 대한 연구

- 8호처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reatment Measures in the Juvenile Reformatory
- Focused on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8 -

이승현 · 강경래

■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 강경래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발간사

2007년 12월 소년법 개정으로 소년사법 체계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처분의 대상을 변경하여 촉법소년 연령이 10세로 인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년보호대상의 상한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었고, 소년사법에 회복적 사법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화해권고제도가 마련되었고, 수사단계에서의 다이버전을 확대하기 위해 검찰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보호처분의 다양화 및 내실화 방안으로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이 주된 처분으로 변경되었고, 외출 제한명령, 보호자교육명령 등이 명문화되었으며, 8호처분(1개월 이내의 소년원송치처분)이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보호처분의 다양화 및 소년사법에 있어서 근본적 비행예방대책으로서 도입된 8호처분은 기존의 소년원 송치처분이 가진 폐쇄적이고 단일한 처우의 문제를 해소하면서 집중적이고 단기간의 개별처우를 통해 소년의 재사회화 및 교정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8호처분은 시설내구금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과연 단기간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정교육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8호처분(1개월 이내 소년원송치처분)에 대한 평가와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8호처분의 성격에 대한 재고찰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8호처분의 실시현황 및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8호처분이 교정교육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어떠한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8호처분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연구가 원만히 수행되도록 도움을 주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관계자, 설문조사 및 전문가 면접에 협조해 주신 대덕소년원과 청주소년원 직원 및 서울보호

관찰소와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등 보호관찰소 관계자 여러분, 기타 소년사법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년간 본 연구를 성실히 수행한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이승현 부연구위원과 대구가톨릭대학교 강경래 교수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2010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김 일 수

CONTENTS

국문요약	13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9
제2절 연구의 내용	21
제3절 연구의 방법	22
제2장 8호처분의 의의	23
제1절 8호처분의 도입배경	25
1. 소년원 송치처분의 발전 형태	25
2. 기존 소년원교육의 문제점	26
3. 새로운 수용처분 형태의 필요	27
4. 8호처분의 도입 방향	29
제2절 8호처분의 의의	30
제3절 8호처분의 성격	32
1. 9호·10호처분과의 차이	32
2.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혼합형태의 처우	33
3.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개방처우	34
4. 병합처분의 가능	35
5. 자율적 선택에 의한 입소	37
6. 초기비행자 대상	38
제4절 소결	38

제3장 8호처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39
제1절 8호처분의 운영현황	41
1. 소년보호처분의 현황	41
2. 8호처분의 운영기관	49
3. 8호처분자에 대한 처우	51
4.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51
제2절 8호처분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54
1. 설문조사 방법	54
2. 8호처분 대상자의 특성	55
3. 8호처분 결정에 대한 인식	60
4. 8호처분의 생활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	62
5.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65
6. 교육효과에 관한 인식	74
제3절 8호처분의 문제점	76
1. 8호처분 성격의 불명확	77
2. 8호처분 대상자 선정의 문제	78
3. 8호처분 운영관련 법적 기반의 미비	80
4. 8호처분의 병합 및 부가명령 부과 문제	81
5. 8호처분 운영시설 및 환경의 개방성 결여	84
6. 8호처분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	86
제4장 외국의 단기구금 형태	87
제1절 일본의 특수단기처우	89
1. 서언	89
2. 특수단기처우제도의 성립경위	90
3. 특수단기처우제도에서의 개방처우의 의의	93
4. 「운영통달」에 따른 특수단기처우의 의의와 대상자	97
5. 특수단기처우의 기본적 교육과정	101

6. 특수단기처우제도의 개별적 실시상황	106
7. 특수단기처우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119
제2절 미국의 단기구금	124
1. 쇼크구금	125
2. 병영캠프	125
3. 소년교정에 있어서 병영캠프의 처우	139
제3절 독일의 소년구금처분	143
1. 개관	143
2. 소년구금처분의 도입	144
3. 소년구금처분의 발전	146
4. 현행 소년법원법의 소년구금제도	150
5. 소년구금처분을 둘러싼 논란과 논의	153
6. 베를린소년구금소의 소년구금집행 사례	156
제4절 8호처분과의 차이점 및 시사점	159
 제5장 8호처분의 개선방안	 165
제1절 8호처분의 성격 규명	167
제2절 대상자 선정의 명확화	168
1. 8호처분 대상자의 선정 기준	168
2.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 마련	172
3. 법원과의 긴밀한 협조 필요	173
제3절 8호처분 관련 규정의 법적기반 마련	174
1. 8호처분 운영지침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의 편입	174
2. 4·8호처분 병합관련 규정 신설	175
3. 부가명령 관련 규정 마련	176
제4절 시설 및 환경의 개방화	176
1. 8호처분의 독립기관화	176
2. 8호처분 전담인력의 충원 및 전문화	177

3. 생활환경 및 처우의 개방화	178
4. 입원소년에 대한 두발 자유화	179
제5절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의 전문화	180
1. 9·10호처분 교육과의 차별화	180
2. 비행유형별·연령별·성별 프로그램 개발	181
3. 교육프로그램 내용의 개방화	182
4. 외부전문인력의 활용	183
5. 지역사회의 참여 유도	184
6. 부모의 교육 참여기회 확대	185
 제6장 결론	 187
 참고문헌	 193
 Abstract	 201
 부록 [8호처분의 만족도 조사] 설문지	 207

표 차례

〈표 2-1〉 개정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종류	26
〈표 2-2〉 8호처분과 9·10호처분의 차이	33
〈표 2-3〉 법원의 입원일 지정 현황	37
〈표 3-1〉 최근 5년간 보호처분 현황	42
〈표 3-2〉 8호처분의 병합 현황	43
〈표 3-3〉 부가처분 현황	44
〈표 3-4〉 8호처분 인원	44
〈표 3-5〉 최근 5년간 소년원 신수용인원	45
〈표 3-6〉 일일수용인원(2010년 10월 기준)	46
〈표 3-7〉 8호처분자의 연령별 현황	46
〈표 3-8〉 8호처분자의 학력별 현황	47
〈표 3-9〉 8호처분자의 비행별 현황	48
〈표 3-10〉 8호처분자의 비행전력별 현황	48
〈표 3-11〉 소년원 학교 명칭 및 교육과정	49
〈표 3-12〉 8호처분 소년원 수용현황(2010년 10월 기준)	50
〈표 3-13〉 대덕소년원의 8호처분 교육과정	54
〈표 3-14〉 조사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56
〈표 3-15〉 조사 대상자의 가정환경	57
〈표 3-16〉 조사 대상자의 비행 특성	58
〈표 3-17〉 대상자의 비행경력	59
〈표 3-18〉 입원일 지정에 대한 설문	60
〈표 3-19〉 처분의 병과에 대한 의견	61
〈표 3-20〉 입원시 식발하는 것에 대한 생각	62
〈표 3-21〉 생활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	64
〈표 3-22〉 소년원 생활에 있어서 힘든 부분	65

〈표 3-23〉 교육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만족도	67
〈표 3-24〉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 유무	68
〈표 3-25〉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69
〈표 3-26〉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70
〈표 3-27〉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71
〈표 3-28〉 교양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71
〈표 3-29〉 교육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	72
〈표 3-30〉 교사의 수업방식에 대한 만족도	73
〈표 3-31〉 퇴원 후 적응 위해 꼭 필요한 것	74
〈표 3-32〉 8호처분의 교육개선 위해 꼭 필요한 것	74
〈표 3-33〉 생활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한 시기	75
〈표 3-34〉 8호처분의 교육 효과	75
〈표 3-35〉 퇴원 이후의 계획	76
〈표 4-1〉 有明高原療의 交通安全教育지도계획표	110
〈표 4-2〉 일본의 소년원처우 일람표	118
〈표 4-3〉 특수단기처우 수용인원의 추이	120
〈표 4-4〉 특수단기처우대상자 연령	120
〈표 4-5〉 특수단기처우대상자 비행내용	121
〈표 4-6〉 특수단기처우대상자 교육정도	122
〈표 4-7〉 교정병영캠프에 있어서 진화과정	128
〈표 4-8〉 교정병영캠프시설 수(연방주)	128
〈표 4-9〉 종사인력 현황(2009년 9월 1일 기준)	156

그림 차례

[그림 3-1] 8호처분의 교육과정	52
[그림 3-2]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66
[그림 4-1] 有名高原療 특수단기처우의 교육 개요	115
[그림 4-2] 豊ヶ岡学園의 기본처우계획(특수단기처우)	117
[그림 4-3] 독일 소년형법상 공식·비공식 형사제재 실무의 변화추이	144
[그림 4-4] 소년구금처분 선고현황	151

8호처분은 2007년 소년법 개정 과정에서 기존의 소년원 송치처분이 폐쇄적이고 대형화되어 있어 소년의 특성에 맞는 개별처우를 하기에 곤란하고 처우내용도 단순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호처분의 다양화 방안으로서 도입되었다. 동 처분은 비행초기 단계에 있는 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1개월 이내의 단기 집중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비행성을 조기에 개선하고 재비행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를 두고 법무부 내에서는 8호처분을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중간처우 또는 개방처우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8호처분은 일정 기간 동안 소년원에 수용된다는 점에서 시설내처우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고,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혼합으로 인해 8호처분이 당초 목표한 고유의 성격을 살리지 못하는 문제점을 수반하게 되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8호처분 시설도 청주와 대덕 두 곳에 편중되어 있고 전담직원 10여명으로 25개 정도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인력면이나 시설면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다.

8호처분 운영현황을 보더라도 2008년 개정소년법 시행 이후 9호처분이나 10호처분의 비율은 현저하게 줄어든 반면에 8호처분의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8호처분이 단독처분인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장기보호관찰과 병합처분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부가처분도 함께 받고 있어 8호처분의 성격이 모호해졌다. 8호처분 대상자는 16-17세에 해당하는 인원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학업을 중단한 자의 비율이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비행전력이 없는 경우는 19.5%에 불과하고 수회 비행을 저지른 자의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조사대상자의 대다수가 16-18세이었고, 학교를 유예하거나 중퇴한 자의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50%를 차지하였으나 가정의 기능적 결손으로 인해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8호처분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소년원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55%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지만 생활지도과정에서 교사의 거친 언어사용, 과도한 벌주기,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 등은 불만족을 갖게 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8호 처분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도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개별 프로그램별로 경험 유무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8호처분 대상자들은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생활에 변화를 느꼈고, 교육을 통해 잘못에 대한 반성, 가족에 대한 사랑,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등을 배운다고 응답하였다. 교육효과로서 8호처분 대상자는 퇴원 이후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관계개선이나 주위의 따뜻한 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학교 생활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고 적응하려는 긍정적인 태도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에 8호처분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고 8호처분을 실시하고 있는 소년보호기관에서도 운영방향을 정확히 설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8호처분의 성격 및 운영방식, 8호처분의 내용 등을 진단하여 8호처분의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8호처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8호처분이 시설내처우이자 사회내처우는 특징 때문에 8호처분 자체의 성격이 불명확해져 있다. 둘째, 8호처분의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거나 분류심사기준에 의한다면 초기비행자, 저연령자, 부모의 보호력이 있는 자가 그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수용경험이 다수 있는 자, 재비행력이 높은 자,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등 8호처분으로 교정목적을 살리기 부적합한 자가 포함되어 있어 문제이다. 셋째, 9호나 10호 처분의 경우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나 8호처분의 경우 「8호처분 운영지침」이라는 법무부 내규에 의해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가 된다. 넷째, 8호처분을 보호관찰과 병합함으로써 인한 집행상의 문제나 일률적인 장기 보호관찰과의 병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부가명령을 확장하여 적용함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섯째, 8호처분 운영을 개방처우로 한다고 하나 9·10호처분 업무와 병행으로 인해 개방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고, 두발제한 등의 문제는 개방성을 제한하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여섯째, 8호처분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25개 프로그램을 1개월 이내에 소화하다 보니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영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에서도 비행이 상습화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단기구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미국, 일본, 독일의 경

우 프로그램에 있어서 개방적인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시설내 처우를 전제로 하여 단기 집중식 교육을 통해 재비행 예방효과를 얻고자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 8호처분의 운영실태 및 설문조사 결과, 외국의 단기구금 형태에 대한 검토를 종합하여 8호처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8호처분의 성격은 개방처우, 중간처우 등이 아니라 단기간의 시설내 처우의 필요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그 처우방식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개방성을 가미하여 시설내처우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내처우와 사회내 처우의 중간형태 또는 혼합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8호처분의 대상자는 이전에 소년원에 수용된 경험이 없는 초기비행자이어야 하고 부모의 보호력이 전제되는 상황에 있는 소년이어야 하며, 인성교육을 통해 개선의 가능성이 높은 자가 되어야 한다. 다만, 지나치게 저연령 소년의 경우 시설내 수용이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자제할 필요가 있고, 보호관찰 준수 사항 위반자의 경우에도 보호관찰에 대한 집행력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8호처분이 활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다른 행정적 제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8호처분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제재인바 그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법률에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나, 현재 9호나 10호처분의 경우에도 법률에 그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는바 법률개정 작업단계에서 8, 9, 10호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법무부와 법원 판사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통일된 기준 하에 적정한 대상군이 선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8호처분 관련 규정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8호처분 운영지침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 대부분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편입되어 구체화되어야 하고, 이외에도 외부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감호 및 감호장비 사용의 문제, 이탈의 처리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8호처분을 일률적으로 장기보호관찰 처분과 병합할 것이 아니라 소년의 특성이나 교육효과 등을 고려하여 단기보호관찰과도 병합할 수 있도록 하고, 부가명령도 비행소년의 재사회화 여부, 환경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으로만 부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시설 및 환경의 개방화를 위해 8호처분 대상자만을 위한 개방형시설이 마련되어야 하고, 최소한 권역별로 소규모의 독립시설이 신설되어야 한다. 그리고 8호처분만을 전담하여 교육하는 전문인력이 증원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해당 인력이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연구할 수 있도록 전문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8호처분의 경우 시설내처우이기 때문에 시설 수용만으로 폐쇄성을 갖기에 충분하므로 건물외벽이나 물리적 시설환경을 개방적으로 바꾸고, 대상소년 스스로 수용질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여야만 한다. 입원소년에 대한 두발 자유화를 통해 1개월 교육 이후에 느끼는 사회로부터의 단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이 전문화되어야 한다. 기존의 소년원 교육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본교육프로그램과 차별화된 특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수용소년의 비행경력이나 비행원인 등을 파악하여 비행유형별·연령별·성별로 개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서도 개방성이 있어야 하는바, 8호처분 대상소년의 내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모색뿐만 아니라 일정한 규제 안에서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부족한 8호처분 교육전문가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강사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들 강사선발에 있어서도 비행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진 자로 구성하고 강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8호처분 대상자가 가정이나 지역사회로 돌아갔을 때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물적·인적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비행청소년의 가정은 대부분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으므로, 부모에게 단순히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명령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족기능 강화를 통해 가정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소년법 개정, 8호처분, 소년원, 개방처우, 시설내처우, 교육프로그램의 전문화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청소년 인구의 감소 및 소년사건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죄의 재범율은 여전히 높은 단계에 있고, 소년범죄가 점점 흉포화되고 있어 처벌 위주의 소년사법 체계가 소년의 개선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12월 21일 「소년법」이 개정되었다. 「소년법」의 개정으로 ① 소년사법의 기본방향으로서 회복적 사법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화해권고제도가 신설되고(제25조의2), ② 수사단계에서의 다이버전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찰단계에서의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도입되었으며(제49조의3), ③ 보호처분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위해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주된 처분으로 변경하고 그 시간과 대상연령도 조정하였고(제32조 제1항 제5호, 제6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을 신설하였으며(제32조 제8호), 외출제한명령과 보호자에 대한 교육명령도 명문화하였고(제32조의2 제2항, 제3항), ④ 검사선의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검사결정전조사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으며(제49조의2), ⑤ 보호사건의 대상범위를 변경하여 촉법소년의 연령은 10세로 인하함은 물론이고, 소년보호대상의 상한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였다(제2조, 제4조 제1항).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보호처분의 다양화·내실화 및 소년사법에 대한 근본적인 비행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서 8호처분(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처분)의 도입

이다. 8호처분의 도입은 기존의 소년원송치처분이 폐쇄적이고 대형화되어 개별처우를 하기에 곤란할 뿐만 아니라 처우의 내용도 일률적이고 단순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간을 줄이면서 집중적인 개별처우를 할 수 있는 시설내처우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었다.

8호처분은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가 결합된 형태로서, 사회내처우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나 단기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역시 적합하지 않은 소년에 대해 쇼크구금을 통해 집중적인 비행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이다. 8호처분은 2008년 6월 『소년법』 개정과 함께 시행되어 2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8호처분은 당초 쇼크구금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비행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개방처우로서의 성격을 갖추어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8호처분의 도입내용과 운영을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8호처분이 단기쇼크구금이면서 시설내처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처우 프로그램들은 운영하다 보니 8호처분 자체의 성격이 모호해졌다. 장기보호관찰과의 병합으로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중간형태를 취하고 있긴 하나 병합으로 인해 보호관찰의 집행이나 그와 관련된 부가명령 부과에 있어서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으며, 운영과 관련된 법적 기반이 미비한 수준이다. 8호처분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프로그램이 너무 많고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 처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아직까지 8호처분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고, 8호처분을 실시하고 있는 소년보호기관에서도 운영방향의 가닥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8호처분의 운영방식과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진단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이하에서는 8호처분의 의의와 성격에 대하여 재검토해 보고, 현행 8호처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공식통계와 8호처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알아보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현행 8호처분의 문제점을 분석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외국의 단기구금제도는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나라 8호처분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외국 구금제도를 통해 8호처분이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 분석결과와 외국제도의 비교검토 결과를 토대로 8호처분이 개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성격 규명, 대상자 선정기준, 법적 기반 마련, 시설 및 환경의 개방화, 프로그램의 전문화 측면에서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서는 8호처분의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 및 외국 단기구금제도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해 8호처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제1장에서는 8호처분에 관한 연구를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연구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기존 소년원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8호처분이 도입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개방처우, 중간처우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 8호처분의 의의 및 성격에 대하여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8호처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8호처분 관련 공식통계자료와 운영관련 법무부 내부자료들을 통해 8호처분의 운영현황, 운영기관,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등에 대하여 알아본다. 또한 8호처분 대상자에 대한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로 8호처분 대상자들이 8호처분 운영과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본다. 운영현황과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8호처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8호처분의 성격, 대상자 선정기준, 관련 법적 기반, 병합문제, 시설 및 환경과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 등을 살펴본다.

제3장은 외국의 단기구금 형태를 일본, 미국, 독일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각국의 단기구금 형태와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8호처분과의 차이점과 8호처분 운영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시사점을 찾아본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8호처분의 문제점과 외국의 단기구금형태에서 추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8호처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여기서는 8호처분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고, 8호처분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8호처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검토하며, 8호처분이 시설내 처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시설 및 환경의 개방화 방향, 프로그램의 전문화 형태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3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와 8호처분 대상자에 대한 직접 설문, 관련전문가에 대한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하였다.

8호처분의 운영실태 파악은 여러 가지 형태로 하였다. 첫째, 현행 8호처분의 운영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 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 등 공식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운영실태에 관하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의 협조를 받아 집계된 통계자료와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운영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얻었다. 둘째, 운영현황 파악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일 필요가 있는바 법원 소년부 판사 및 소년보호관찰관 자문, 8호처분 전담직원과의 심층면접을 토대로, 자료로서 얻을 수 없는 8호처분 시행현장에서의 문제점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셋째, 8호처분을 받고 있는 소년원 수용소년을 대상으로 8호처분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직접 설문조사방식을 통해 실시하였다. 8호처분의 경우 수용자 수가 적은 관계로 소년원 퇴원예정자 150명 외에도 소년원 퇴원 이후 장기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소년 55명을 함께 조사하여 총 205명에 대하여 설문결과를 얻었다.

외국의 단기구금형태에 대한 분석은 비교분석방식으로 채택하여 일본, 미국, 독일의 관련기관 홈페이지 자료를 활용하였고,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관련 외국 문헌을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운영실태 및 외국단기구금형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8호처분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현행 8호처분제도의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2장

8호처분의 의의

8호처분의 의의

제1절 8호처분의 도입배경

1. 소년원 송치처분의 발전 형태

소년원송치처분제도가 처음 『소년법』에 도입된 것은 『소년법』 제정 당시부터이다. 소년법 제정 당시 소년부판사가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보호자에의 위탁, 사원·교회 기타 소년보호단체의 감호에의 위탁, 병원 기타 요양소 위탁, 감화원예의 송치, 소년원예의 송치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1988년 『소년법』 개정 당시에는 보호처분 중 감화원 송치처분을 폐지하고, 소년원송치를 단기소년원송치와 장기소년원송치로 구분하고 단기소년원송치는 6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1988년 『소년법』에서의 소년원 형태가 계속 유지되다가, 2005년 12월 법무부는 ‘소년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년법』 개정작업에 착수하였고, 9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몇 가지 중요쟁점에 대한 안을 마련하였다. 2007년 12월 『소년법』의 개정으로 ① 소년사범의 기본방향으로서 회복적 사범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화해권고제도가 신설되고(제25조의2), ② 수사단계에서의 다이버전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찰단계에서의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도입되었으며(제49조의3), ③ 보호처분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위해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주된 처분으로 변경하고 그 시간

과 대상연령도 조정하였고(제32조 제1항 제5호, 제6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을 신설하였으며(제32조 제8호), 외출제한명령과 보호자에 대한 교육명령도 명문화하였고(제32조의2 제2항, 제3항), ④ 검사선의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검사결정전조사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으며(제49조의2), ⑤ 보호사건의 대상범위를 변경하여 촉법소년의 연령은 10세로 인하함은 물론이고, 소년보호대상의 상한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였다(제2조, 제4조 제1항).

표 2-1 개정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종류

종류	내용	기간	적용연령	구) 처분
1호	보호자감호위탁	6월+6월	10세 이상	1호
2호	수감명령	100시간	12세 이상	부가▶본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14세 이상	부가▶본
4호	단기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2호
5호	장기보호관찰	2년+1년	10세 이상	3호
6호	아동복지시설등 위탁	6월+6월	10세 이상	4호
7호	병원·요양소 위탁	6월+6월	10세 이상	5호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송치	1월 이내	10세 이상	신설
9호	단기소년원 송치	6월 이내	10세 이상	6호
10호	장기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7호

2. 기존 소년원교육의 문제점

소년원송치처분은 구금의 기능과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로서 비행에 대한 책임보다는 교육적 기능을 중시하여 인성교육, 특성화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통해 비행을 교정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게 하는 점에서 소년교도소와 다르다. 그러나 실제로 소년의 비행의 질에 대한 고려없이 강력범죄자들까지 소년원 교육대상으로 포섭하고 있어, 개선가능성이 높은 대다수 소년들의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비행의 감염 우려까지 있으며, 보호처분의 집행기관으로서 소년원과 형사처분의 집행기관으로서 소년교도소의 역할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청소년 시기에

는 가치관의 혼란에 빠지기 쉽고 주변환경의 영향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시설내 수용으로 인해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수용되어 있는 동안 범죄기술을 학습하게 된다. 따라서 소년범죄자에 대한 제한적 교정시설에서의 인신구금과 자유박탈을 통한 교정은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게 된다.

기존의 소년원 송치처분은 교과교육, 직업훈련, 심성순화훈련 등을 통해 보호소년이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하고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소년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대부분 미흡하거나, 비전문적이고 형식적인 지도에 그치고 있고, 집단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교과교육은 비행으로 인해 학교에서 중도탈락된 청소년들에게 퇴원 이후에서 정상적으로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대부분 실용영어나 컴퓨터교육 등 특정과목에 집중되어 있어 예체능과 같은 다양한 재능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자격증 취득 등 실적 위주의 교육에 치중되어 있었다. 직업훈련 교육은 소년이 스스로 땀흘려 일하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직업관과 직업인이 갖추어야 하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대부분 소년원생의 경우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원하는 학생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어 취업이나 기술습득 위주의 교육에 대하여 수용자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담치료 등을 함에 있어서도 상담공간이나 방법이 폐쇄적이어서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강제적인 상황에서 치료자와 피치료자의 관계가 권위적이고 억압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 정서적 불안문제를 치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이러한 소년원송치처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보호처분의 도입이 절실했다.

3. 새로운 수용처분 형태의 필요

2007년 「소년법」 개정 당시 보호처분의 다양화·내실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그리고 소년사법 차원에서의 비행예방 대책 마련 방안으로서 8호처분제도가 도입되었다. 기존의 소년원송치처분이 폐쇄적이고 대형화되어 있어 소년의 특성에 맞는 개별처우를 하기에 곤란하고 처우내용도 단순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간을 줄

이고 집중적으로 개별처우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소년원 송치처분보다 단기간 동안 집중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존의 소년원 송치보다 단기간의 구금 형태에 대하여 기존의 논의들을 중심으로 찬반 논쟁이 뜨겁게 이루어졌다.

단기구금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청소년의 잘못된 생활행동의 와해, 다른 비행청소년과의 분리 등으로 인해 좋지 않은 유대관계를 끊을 수 있게 되어 비행과 멀어질 수 있다고 본다.¹⁾ 또한 미성숙한 청소년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²⁾

반면에, 단기구금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소년원에서 교육처우를 하고는 있으나 국가가 운영하는 구금시설에 일정기간 수용한다는 점에서 구금처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구금 자체가 재범방지에 효과적이지 못하고³⁾, 청소년이 구금시설에 다른 비행자와 함께 수용됨에 따라 스스로 범죄자라고 인식하는 낙인효과에 의해 재범을 하게 되고 이런 구금 경험이 비행자로서의 지위를 강화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본다.⁴⁾ 또한 청소년기에는 주위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청소년 스스로 자신이 어떤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축되거나 자기비하 등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본다.

미국 등 선진 국가에서는 소년원 구금을 통해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들을 줄이기 위해 구금시설 내의 수용 대상범죄를 중범죄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소년원 수용에 대한 대안으로 개방성을 확대하여 중간시설에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⁵⁾

1) David M. Altschuler & Troy L. Armstrong, Intensive Aftercare for High-Risk Juvenile, U.S. Office of Juvenile and Delinquency Prevention, 1994; Stott Henggeler, Home-Based Services for Serious and Violent Juvenile Offenders, Center for the Study of Youth Policy,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4.

2) Barry C. Feld, "Violent Youth and Public Policy : A Case Study of Juvenile Justice Law Reform", Minnesota Law Review 79, 1995, pp.965-1128.

3) B. Krisberg, Guide for Implementing the Comprehensive Strategy for Serious, Violent, and Chronic Juvenile Offenders,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1995, p.13.

4) Dean J. Champio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 Delinquency, Processing, and the Law, Prentice-Hall, 2001, p.516.

또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견해에서도 경비를 철저히 갖춘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소규모 시설에서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⁶⁾

단기구금에 대하여 긍정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긴 하나, 단기구금이 가진 장단점을 모두 가진 소년원에서의 1개월 소년원송치처분이 단기구금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적정한 대상자를 추출하여 그들에게 맞는 교육을 한다면 재범방지나 소년의 낙인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는 데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4. 8호처분의 도입 방향

소년법 개정 당시에는 8호처분은 쇼크구금의 형태이었다. 구금경험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1개월 정도의 단기구금 후 보호관찰 조건부로 석방하는 것으로, 교도소의 수용기간을 줄이고 사회복귀를 도와주며 가족관계를 유지시켜주고 교도소 인구와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즉, 장기구금 없이 범죄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사회내 일반적인 처벌과 달리 범죄자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석방되도록 하며, 국가정책적 요구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교정처우를 실시할 수 있으며 범죄학습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쇼크구금은 보호관찰을 위반했을 때 예상되는 상황을 경험함으로써 일반보호관찰에 비해 보다 성실한 처분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다.⁷⁾

쇼크구금이 초범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극기훈련이나 준법 교육 등 프로그램을 통하여 범죄자의 성향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짧은 기간 자유를 박탈함으로 인해 오히려 비행을 학습할 수 있다는 비판과 단기쇼크구금이 되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⁸⁾

5) Dean J. Champion, 앞의 책, p.516.

6) B. Krisberg, 앞의 책, p.13.

7) 이백철, 중간처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45면

8) 강동구/안병경, “소년법에 대한 시설내처우 및 사회내처우의 연계성 강화방안”, 소년보호논집 제7집,

이후 법무부는 8호처분 운영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국법원 소년부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직원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 전국법원 소년부 판사 18명을 대상으로 한 2008년도 설문조사⁹⁾에서 8호처분의 도입이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에 판사의 11.1%(2명)가 매우 적절하다고 응답했고, 44.4%(8명)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8호처분이 도입될 경우 어느 정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16.7%(3명)이 적극 활용하겠다고 응답하고, 38.9%(7명)가 활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8호처분 대상 청소년에게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서도 상담 및 심리치료가 37.5%(15명), 봉사활동·극기훈련 등 체험활동이 32.5%(13명) 등으로 나타났다. 8호처분 대상 청소년에게 적합한 소년원의 형태도 개방형 시설이어야 한다고 응답한 자가 55.6%(10명), 완전 개방형 시설이어야 한다고 응답한 자가 11.1%(2명)이었다. 2008년도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8호처분 시범운영예정기관의 환경조사 및 직원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8호처분 대상청소년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봉사활동·자기도전훈련 등 체험활동이라는 응답이 65.7%(46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라는 응답이 22.9%(16명)를 차지했다.

법무부는 소년부 판사의 설문결과와 직원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여 8호처분의 운영방향을 새롭게 모색하였다. 기존의 소년원 시설과는 다른 개방형 시설내처우 방식을 도입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수용의 부작용을 줄이고 일상생활과의 접촉을 통해 생활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개방적 성격을 가미한 8호처분의 형태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제2절 8호처분의 의의

8호처분은 비행초기단계의 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의 악순환 연결고리를 끊고 비행에 대한 억제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소년원에서 1개월 이내의 단기 집중 인성교육

2007, 313면

9) 법무부 보호국 소년보호과, 법원 판사 방문 설문조사 결과보고자료, 2008.2 참조

프로그램을 통해 그 비행성을 조기에 개선하여 재비행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8호처분은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가 결합된 형태로서, 사회내처우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단기 소년원송치하는 것 역시 적합하지 않은 소년에 대해 쇼크구금을 통해 집중적인 비행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8호처분은 대상소년을 시설에 수용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소년원송치처분과 유사한 성격도 가지나, 8호처분이 초범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용경험이 없는 대상소년에게 짧은 기간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비행행위의 심각성을 느끼게 하고, 단기집중교육을 통해 자기개선의 의지를 높임으로써 재비행을 예방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9호나 10호처분과는 구별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8호처분이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의 한 종류로서 단독처분이며 재범방지를 위해 장기보호관찰처분을 병합하기 때문에 교도소 구금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전제로 하는 쇼크구금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본다. 쇼크구금은 교정비용의 절감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8호처분은 대상소년의 특성에 맞는 처분을 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도입취지가 다르고 교육프로그램도 개방적 인성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어 구금을 목적으로 하는 쇼크구금과는 다르다고 판단한다.¹⁰⁾ 결국 8호처분은 시설내처우이긴 하나 구금적 측면보다는 다양한 체험위주의 단기집중적 인성교육이라는 측면을 강조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보호처분의 단계에 따라 보면, 8호처분은 보호관찰처분과 소년원 송치처분 사이에 있는 중간처우이자, 입원일시의 지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소년원의 입원이 가능하고 교육과정도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체험교육 등 개방적 인성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넓은 의미의 개방처우라고도 한다.

다만, 8호처분자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¹¹⁾ 첫째, 비행 및 일탈청소년들이 초반의 일탈행위로 인하여 사회화의 유대가 약해지며 그 유대를 보완하기 위해 하위문화를 조성하게 되며 그들만의 문화에 맞는 행동을 발달시키고 점차 일반사회와 분리가 된다. 따라서 이들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10) 이영호, 소년법의 사회복지적 실효성 연구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처분(8호)을 중심으로,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27-28면

11) 법무부, 비행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집중교육, 2008, 6면

사회와 연계시키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 및 문제해결적 접근방식을 가르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긍정적인 가치관이나 자기개념, 지지체계 등과 같은 요인들이 중요한 보호요인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기본생활습관 지도 등을 통해 적절한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 교육을 통해 성공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8호처분 교육과정 속에 녹아들어갈 때 8호처분은 성공적인 비행예방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8호처분의 성격

8호처분이 도입된 지 얼마되지 않았고, 현재도 그 성격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바, 여기에서는 8호처분이 기존의 소년원송치처분과 구별되는 점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징들을 가진 처분인지 검토하기로 한다.

1. 9호 · 10호처분과의 차이

8호처분은 보호관찰보다는 중하고 9호나 10호의 소년원송치처분보다는 가볍다고 할 수 있다. 8호처분은 기본적으로 시설내처우이긴 하나 소년부판사가 소년을 지정한 날에 스스로 입원하여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점과 보호관찰과 병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8호처분은 사회내처우보다 시설내처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¹²⁾ 즉, 8호처분은 시설내처우이긴 하지만, 9호 · 10호처분이 사회보호와 소년보호를 위해 수용기능과 교육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에 비해 8호처분은 소년보호를

12) 실제로 법무부 8호처분 운영계획 당시 전국 소년부판사 1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중이거나 구속상태에 있는 소년에게 8호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하였고 8호처분을 확대하게 되면 이전의 2호 내지 4호처분을 상대적으로 줄이겠다는 응답을 많이 한 것으로 보아 1호부터 7호까지의 처분보다 8호처분이 중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8호처분은 주로 14세·15세 소년을 대상으로 기존의 소년원 시설과는 다른 개방형 수용시설(55.6%)에서 상담 및 심리치료,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위한 교육기능을 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2 8호처분과 9·10호처분의 차이

구분	8호처분	9·10호처분
입교일자	정해진 날짜에 자진입교	결정즉시 입교
교육기간	1개월 이내	6월 이내 또는 2년 이내
교육내용	비행유형별 전문교육 체험위주의 인성교육 집단상담 교양교육	일반교과교육 직업훈련 인성교육 정신교육 특별교육
담당교사	인성교육전문가	중등교사 및 직업훈련교사
교육방법	모둠별 체험활동 위주	학급별 교육활동 위주
개방처우	대부분의 학생을 대상으로 주말가정학습 등 실시	생활태도가 우수한 학생에게만 실시
재학생 학업연계	학교출석으로 인정	전편입학으로 처리

2.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혼합형태의 처우

일반적으로 보호처분의 종류는 1호처분에서 10호처분의 순으로 사회내처우, 중간 처우, 시설내처우 순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8호처분은 시설내처우와 사회내 처우의 중간처우라고 보고 있다.

본래 시설내처우란 말 그대로 일정기간 동안 소년교도소나 소년원 등의 시설에 수용되어 교정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사회내처우(community treatment)란 행위자를 일정한 시설 안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 안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일정기간 지도와 통제를 받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내처우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행위자가 사회 내에서 생활하도록 하면서 그를 효과적으로 재사회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있다.¹³⁾ 대표적인 유형이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이다. 소년분류심사기준에 따르면 시설내처우는

13) 이진국, “형사제재체계 내에서의 사회내처우제도”, 형사법연구 제22호 특집호, 2004, 517-518면.

초기비행이 저연령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사회내처우는 초기비행이 고연령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부모의 보호의지 및 능력이 낮은 경우에는 시설내처우를, 보호의지 및 능력이 높은 경우에는 사회내처우를 고려한다고 한다.¹⁴⁾

8호처분을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중간처우라고 하나, 본래 ‘중간처우’란 표현은 형기만료 전단계에서 가석방이나 조기출소 등에 의해 석방된 범법자에 대한 사회내처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소년원송치처분시 행해지고 있는 외출, 통학, 주말가정학습제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중간처우는 일정한 감독과 관리 하에 범죄자의 사회에의 참여를 확대하여 구금되어 있는 동안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유지시킴으로써 출원 또는 출소 이후 사회에 대한 이질감을 해소시키고 재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으므로¹⁵⁾, 8호처분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8호처분에 대하여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중간처우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8호처분은 소년원에 일정기간 수용된다는 점에서 시설내처우라는 점을 배제할 수 없고, 대부분이 장기보호관찰과 병합된다는 점에서 사회내처우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8호처분은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중간처우라고 보기보다는 ‘혼합형태’의 처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개방처우

8호처분은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개방처우라고 한다. 개방처우란 폐쇄처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전통적인 폐쇄시설(교도소, 소년원) 내에서의 형 집행으로부터 탈피를 시도하는 처우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시설 내의 폐쇄적인 처우의 폐해를 제거하고 가능한 한 생활조건을 정상화하여 수형자의 개선효과를 도모하려는 것이다.¹⁶⁾ 개방처우는 광의로서 개방시설에서의 처우뿐만 아니라 폐쇄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는 외부통근제, 귀휴제, 사회참관, 부부접견제, 주말구금제도 등과 같은 반자유처우

14)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개정소년법에 따른 분류심사기준, 2008.7, 7면

15) 박미숙, 소년법에 대한 중간처우제도 도입에 관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20-21면

16) 이정국, “개방처우의 내용 및 개선방안”, 고시연구 통권 제374호, 2005.5, 410면. 김용우, “수형자의 개방처우론”, 교정 139호, 1987, 55면

또는 출소준비를 위한 Halfway House와 같은 중간처우를 포함하고, 협의로는 형벌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개방시설, 즉 주벽, 쇠창살, 자물쇠 등 물리적 시설이 없는 시설에서 수형자의 자율과 신뢰를 기초로 하여 처우하는 것만을 의미한다. 개방처우는 자율적 생활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사회생활의 장에서 완전히 격리된 채 명령복종을 해야 하는 교정시설에서 행해지는 시설내처우와 성격이 다르고, 사회 내에서 범죄인에게 자율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지도·감독·원호·보호 등을 통해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회내처우와도 다르다. 따라서 개방처우는 사회내 처우와 시설내처우의 중간영역에 속하는 처우의 일종으로 반사회적·반시설적 처우라고도 한다. 개방처우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직원의 적절하고 성의 있는 지도, 수용자에 대한 세밀한 행동관찰, 물적·경비·관리수단이나 형벌에 의존하지 않는 지도, 정확한 분류심사를 통한 개별적 처우계획 수립, 사회화·개방화에 따른 시설의 설비, 전문인력의 배치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¹⁷⁾ 개방처우는 인간성의 파괴를 막고 인권을 존중하며 수형자의 생활환경을 사회생활의 내용에 근접시킴으로써 수형자의 재사회에 도움을 주는 등 형벌의 인도화에 공헌하고, 수형자와 직원 간의 인간관계가 개선되고 직원의 기능변화로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재사회화에 공헌하며, 물적 시설을 용이하게 개변가능하여 행형경제의 효율화에 기여한다.¹⁸⁾

하지만 8호처분에서의 ‘개방’이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교정에서 의미하는 ‘개방처우’의 의미가 아니라, 8호처분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의 개방이고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다.¹⁹⁾ 따라서 여기서의 개방은 교육에 있어서 개방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의 개방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4. 병합처분의 가능

8호처분은 단독처분이면서 병합처분이 가능하다. 소년법 제32조 제2항 제5호에

17) 김화수, “준개방처우제도의 실시”, 교정 144호, 1988, 52면.

18) 이보영, “천안개방교도소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사회과학논문집 제15집, 1996, 128면.

19) 최인섭/이순래, 청소년의 재범예방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238면.

의하면 8호처분을 하면서 5호처분(장기보호관찰처분)도 병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병합처분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소년부판사가 8호처분을 단독처분으로 하거나 5호와 8호를 병합하여 처분하는 것을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다.

8호처분을 단독으로 처분한 경우 기존 소년원생처럼 처우를 통해 이송하므로 신병확보가 용이하고 안전한 수용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1개월이라는 처분기간의 절반 정도를 분류, 이송, 신입자 교육에 소비하게 되어 실질적인 교육기간이 부족하고, 수시 이송·입출이 발생함에 따라 교육과정상 어려움이 발생하며, 동일집단에 대한 집중교육이 미흡하여 소년원 교육을 이수한 후에 아무런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회에 복귀한다는 단점이 있다.

8호처분과 5호처분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기간 중 지정된 기간에 소년원 교육을 이수한 후 잔여기간에 다시 보호관찰을 집행하므로 사회내처우와 시설내처우의 연계로 보호소년의 재범방지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고, 안정되고 효과적인 집중교육이 가능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입원할 경우 준수사항 이행여부와 변화정도 등에 적응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²⁰⁾

단독처분의 경우 집행주체가 소년원장이 되므로, 수용상한기간에 도달하면 즉시 퇴원할 수 있다. 하지만 병합처분의 경우엔 각 처분의 집행주체는 보호관찰소장과 소년원장이 되므로, 각 처분을 개별적으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제37조, 제38조). 병합된 처분은 상호 대등한 효력을 지니므로 한 처분의 효력 상실은 다른 처분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²¹⁾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년원 가퇴원자에게도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내처우와 보호관찰을 연계하는 것, 즉 보호관찰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1개월 소년원송치제도를 활용한다거나 보호관찰을 통해 출원 이후에도 구금에 의해 조성된 교정효과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²²⁾

20) 이운호, “개정소년법 시행에 따른 신설제도의 성과분석”, 2009 소년보호정책용역 논집,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09, 142-143면

21) 한영선, “개정소년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 1개월 이내 소년원송치(8호)처분을 중심으로”, 시민과 생활법률 제2호, 한국사법교육원, 2009.

22) 김성언, “소년보호처분의 실효적 실천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2호, 2008, 46-49면

5. 자율적 선택에 의한 입소

8호처분의 특징 중의 하나는 대상소년이 스스로 소년원에 입원할 수 있다는 점이다. 8호 단독처분자와 9호 및 10호 처분자는 즉시 소년원에 송치되지만, 5호처분과 병합처분을 받은 8호처분자는 지정된 날에 보호자와 함께 소년원에 스스로 입원할 수 있다. 소년심판규칙 제31조 제3항에서는 소년부 판사가 1개월 소년원 송치를 명하는 경우에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처분과 병합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년이 입원하여야 할 소년원과 입원 연월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소년원 송치처분자와 달리 소년원 입원시 학원 등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소년원에 입소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실제로 개정 『소년법』 시행 이후 8호처분을 받은 소년 전체 중 2008년 12월 31일까지 71.7%인 235명이, 2009년에는 90.9%인 1,219명이, 2010년 3월까지 97.6%인 246명이 입원일을 지정받았다.

표 2-3 법원의 입원일 지정 현황

구분		지정	미지정	계
인원 (명) (%)	08.6~12	235 (71.7)	93 (28.3)	328 (100)
	09.1~12	1,219 (90.9)	123 (9.1)	1,342 (100)
	10.1~3	246 (97.6)	6 (2.4)	252 (100)
계		1,700 (88.5)	222 (11.5)	1,922 (100)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통계(2010)

소년 스스로 입원하게 될 경우 교육에 대한 참여의지가 높고 인성교육시 자기개발성이 높아서 교육에 도움이 되고, 소년원 교육에 있어서 개방처우하는 것이 더욱 용이해져서 이탈 위험성도 낮아진다. 또한 보호자와 함께 입원하면서 장거리 이동하는 동안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법원의 입원일시를 지정하여 선택적으로 입원하는 것은 8호처분의 본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바람직한 것이라 사료된다.

6. 초기비행자 대상

『소년법』이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는 소년원 송치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소년분류심사기준에 따르면, ① 수용경험이 없는 자 중에서 비행력은 없으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나 위험성은 낮으나 기소유예 또는 보호처분 등 비행력이 2-3회 있는 경우, ② 사회내처우나 시설내처우 간 연계를 통해 경각심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④ 상담조사시 교육태도가 매우 불량한 경우, ⑤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경미한 비행을 반복하는 경우를 8호처분 대상자로 삼고 있다. 따라서 8호처분은 수용경험이 없고 비행력은 없으나 위험성이 높은 자나, 비행위험성은 낮으나 기소유예나 보호처분 등의 비행력이 비교적 적은 자 등 주로 초기 비행청소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4절 소결

8호처분은 시설내처우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기존의 9호·10호처분이 사회보호와 소년보호를 위한 수용기능과 교육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에 비한다면 8호처분은 소년보호를 위한 교육기능을 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소년원송치처분과는 처분의 성격을 달리한다. 또한 장기보호관찰과 병합하는 처분형태를 취함으로써 시설내처우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회내처우에 보다 가까워지고 있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9·10호처분을 하기에는 부적합하나 1호 내지 6호의 처우만으로는 교정교육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를 대상으로 비행성향이 심화되지 않은 초기비행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8호처분은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혼합형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제3장

8호처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8호처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제1절 8호처분의 운영현황

1. 소년보호처분의 현황

가. 소년보호처분의 실태

『소년법』 개정 전의 소년보호사건의 처분결과를 보면 2호처분(단기보호관찰처분)과 3호처분(장기보호관찰처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1호처분(보호자감호위탁처분), 6호처분(단기소년원송치), 7호처분(장기소년원송치), 4호처분(소년보호시설위탁처분) 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 12월 『소년법』 개정으로 기존의 7개 보호처분에서 10개 보호처분으로 다양화되었고 처분명도 변경되었다. 1호처분(보호자감호위탁)은 소폭 감소하였고 새롭게 2호처분(수강명령), 3호처분(사회봉사명령), 8호처분(1개월 이내 소년원송치)이 도입되었다. 새로운 처분의 도입과 함께 시설내 보호처분인 4호처분(아동복지시설 송치), 9호처분(단기소년원 송치), 10호처분(장기소년원 송치)의 비율이 소폭 감소하였다. 반면에 1호처분과 4호처분(6,259명), 1호처분과 5호처분(2,599명) 등 여러 처분을 함께 부과하는 병합처분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소년원의 수용인원의 경우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2008년 6월 소년법 개정 이후 최근 몇 년간은 8호처분이 도입되면서 9호처분이나 10호처분의 비율은 현저히 줄어든 반면에 8호처분자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표 3-1 최근 5년간 보호처분 현황

(단위 : 명, %)

처분명 연도	1호	1·2호	1·3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계
2005	4,166 (19.7)	6,897 (32.6)	7,470 (35.3)	9 (0)	9 (0)	577 (2.7)	5 (0)	1,053 (5.0)	949 (4.5)	21,135 (100)
2006	4,596 (22.7)	7,003 (34.6)	6,416 (31.7)	10 (0)	10 (0)	462 (2.3)	10 (0)	883 (4.4)	851 (4.2)	20,241 (100)
2007	6,536 (24.3)	10,391 (38.7)	7,639 (28.4)	34 (0.1)	9 (0)	478 (1.8)	27 (0.1)	957 (3.6)	803 (3.0)	26,874 (100)

처분명 연도	1호	1·2호	1·2·3호	1·2·4호	1·2·5호	1·2·3·4호	1·2·3·5호	1·3호	1·3·4호	1·3·5호	1·4호	1·5호
2008	6,214 (20.6)	972 (3.2)	—	3,535 (11.7)	874 (2.9)	765 (2.5)	1,576 (5.2)	227 (0.8)	1,960 (6.5)	1,838 (6.1)	6,259 (20.7)	2,599 (8.6)
2009	5,883 (16.4)	3,388 (9.4)	572 (1.6)	4,891 (13.6)	1,186 (3.3)	1,905 (5.3)	1,581 (4.4)	1,148 (3.2)	2,183 (6.1)	1,731 (4.8)	4,780 (13.4)	1,256 (3.5)
~2010.10	3,740 (14.4)	3,509 (13.5)	488 (1.9)	3,506 (13.5)	964 (3.7)	1,289 (5.0)	1,009 (3.9)	1,170 (4.5)	1,774 (6.8)	1,241 (4.8)	2,902 (11.2)	683 (2.6)

2호	3호	4호	4·6호	5호	5·6호	5·8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기타	계
130 (0.4)	181 (0.6)	— (—)	137 (0.5)	10 (0)	142 (0.5)	408 (1.4)	410 (1.4)	— (—)	6 (0)	762 (2.5)	857 (2.8)	360 (1.2)	30,222 (100)
71 (0.2)	268 (0.7)	23 (0.1)	192 (0.5)	2 (0)	739 (2.1)	1,708 (4.8)	128 (0.4)	100 (0.3)	22 (0.1)	929 (2.6)	992 (2.8)	151 (0.4)	35,819 (100)
27 (0.1)	104 (0.4)	24 (0.1)	74 (0.3)	4 (0.0)	636 (2.5)	1,319 (5.0)	70 (0.3)	66 (0.3)	10 (0.0)	687 (2.6)	631 (2.4)	51 (0.2)	25,978 (100)

자료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2009), 대법원, 사법통계(2010).

8호처분의 병합 현황을 보면, 단독처분의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병합처분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병합처분의 경우에도 5·8호 처분(1개월 이내 소년원송치처분과 장기보호관찰처분의 병합처분)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년법 제32조 제2항에서는 5호와 8호처분의 병합규정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

제로 1·5·8호처분, 3·5·8호처분과 같이 병합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8호처분 대상자만을 살펴보면 「소년법」 개정 직후인 2008년 6월부터 12월까지 328명(월평균 46.9명), 2009년에는 1,342명(월평균 111.8명),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1,092명(월평균 109.2명)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3-2 8호처분의 병합 현황

(단위 : 명, %)

구분		단독처분	병합처분				계	월평균
		8호	소 계	5·8호	1·5·8호	3·5·8호		
인원	08.6~12	10 (3.0)	318 (97.0)	309 (94.0)	5 (1.5)	8 (2.5)	328 (100)	46.9
	09.1~12	17 (1.3)	1,325 (98.7)	1,308 (97.4)	12 (0.9)	5 (0.4)	1,342 (100)	111.8
	10.1~10	4 (0.4)	1,088 (99.6)	1,086 (99.5)	2 (0.3)	0 (0.0)	1,092 (100)	109.2
계		31 (1.1)	2,731 (98.9)	2,703 (97.9)	19 (0.7)	13 (0.5)	2,762 (100)	89.3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2010)

8호 처분자의 부가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도에 33%를 차지하던 부가처분 비율이 2009년도와 2010년도 10월에는 각각 65.7%, 48.9%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부가처분 유형 중에서 보호자특별교육명령과 야간외출제한명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 6월부터 2010년 10월 현재까지 전체 8호 처분 중에서 보호자특별교육, 야간외출제한, 보호자특별교육+야간외출제한의 부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각각 24.2%, 22.9%, 5.9%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년법」에 8호처분자에 대하여 부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55% 이상 부가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3 부가처분 현황

(단위 : 명, %)

구분		없음	보호자 특별교육	야간외출 제한	보호자 +야간	보호자 +야간 +복학명령	대안 +보호자	대안 교육	계
인원(명) (%)	08.6~12	220 (67.0)	62 (18.9)	41 (12.6)	5 (1.5)	— (—)	— (—)	— (—)	328 (100)
	09.1~12	460 (34.3)	343 (25.6)	328 (24.4)	157 (11.7)	37 (2.7)	— (—)	17 (1.3)	1,342 (100)
	10.1~10	559 (51.1)	263 (24.1)	263 (24.1)	— (—)	— (—)	4 (0.4)	3 (0.3)	1,092 (100)
계		1,239 (44.9)	668 (24.2)	632 (22.9)	162 (5.9)	37 (1.3)	4 (0.1)	20 (0.7)	2,762 (100)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2010)

나. 수용 현황

남자소년의 경우 대덕소년원에서, 여자소년의 경우 2008년 6월부터 2009년 말까지는 안양소년원에서, 이후에는 청주소년원에서 수용하고 있다. 2009년 6월 22일 이후부터 2010년 3월까지의 8호 처분 인원은 2010년 10월 31일 현재까지 2,762명이다. 남자와 여자의 구성 비율을 보면, 여자에 비해 남자의 인원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소년의 입원율이 증가하는 하고 있는데, 이는 법원단계에서 여자소년에 대한 소년원 수용처분을 내리는 것을 꺼려하는 현상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3-4 8호처분 인원

연도별	2008년(6월~)			2009년			2010년(~10월)			합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인원(명)	284	44	328	1,172	170	1,342	970	122	1,092	2,762
비율(%)	86.6	13.4	100	87.3	12.7	100	88.8	11.2	100	—

주 : 8호처분 인원은 신수용인원 기준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2010)

최근 5년간 처분별 신수용 인원을 보면, 신수용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6년 1,468명으로 최저를 기록한 후 점차 증가하여 2009년 2,709명, 2010년 10월까지는 2,241명으로 증가하였다. 신수용인원의 증가는 개정 「소년법」에 따른 8호처분 신설 등의 영향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3-5 최근 5년간 소년원 신수용인원

(단위 : 명)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0월
8호	남	—	—	254	1,116	970
	여	—	—	40	153	122
	계	—	—	294	1,269	1,092
9호	남	707	746	530	651	527
	여	114	121	127	142	113
	계	821	867	657	793	640
10호	남	577	547	609	513	403
	여	70	97	144	134	106
	계	647	644	753	647	509
총계	남	1,284	1,293	1,423	2,280	1,937
	여	184	218	311	429	347
	계	1,468	1,511	1,705	2,709	2,241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2010)

2010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 소년원의 수용인원 중 8호처분자는 전체의 약 7.8%(108명)를 차지한다. 8호처분자 108명 가운데 여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9.3%(10명)으로, 여자 8호처분 대상자의 비율이 적은 것은 소년범죄 중 여자소년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는 측면도 있고, 아직까지 법원 판사들이 여자소년범에 대하여 시설내수용을 하는 것을 꺼리는 측면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3-6 일일수용인원(2010년 10월 기준)

(단위 : 명)

구분	보호소년				위탁소년	계
	7호처분	8호처분	9호처분	10호처분		
	6개월미만	1개월미만	6개월미만	2년미만	1개월미만	
인원 (여자)	25 (3)	94 (10)	319 (51)	714 (136)	414 (77)	1,566 (277)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2010)

다. 8호처분 비행소년의 특성

8호처분자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16~17세에 해당되는 인원이 50%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전체 소년범죄자 중 16~17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소년원에 송치되는 비율도 가장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2세 이하의 저연령 소년도 8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까지 2009년도 대상자 4명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처분대상자는 없었다.

표 3-7 8호처분자의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이상	계
인원 (명) (%)	08.6 ~12 (-)	- (-)	- (-)	6 (1.9)	18 (5.6)	65 (20.1)	75 (22.8)	97 (29.6)	52 (15.9)	15 (4.1)	328 (100)
	09.1 ~12 (-)	- (-)	3 (0.2)	30 (2.2)	143 (10.7)	294 (21.9)	408 (30.4)	301 (22.4)	147 (11.0)	16 (1.2)	1,342 (100)
	10.1 ~10 (-)	1 (-)	- (-)	21 (1.9)	89 (8.1)	225 (20.6)	281 (25.7)	284 (26.0)	175 (16.0)	16 (1.5)	1,092 (100)
계	- (-)	1 (-)	3 (0.1)	57 (2.1)	250 (9.0)	584 (21.1)	764 (27.8)	682 (24.7)	374 (13.5)	47 (1.7)	2,762 (100)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2010)

8호처분자의 학력별 현황을 살펴보면,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입원자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특히 고등학교 중퇴자의 비율이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8호처분의 경우에도 학교중퇴자에 대한 학교교육을 간과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현재

제도상으로 8호처분자가 재학생인 경우 8호처분으로 교육을 받게 된 때에는 교육기간을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하고 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2).

표 3-8 8호처분자의 학력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초등			중등			고등			대재	기타	계
		재학	유예	졸업	재학	유예	졸업	재학	유예	졸업			
인원	08.6 ~12	1 (0.3)	- (-)	- (-)	34 (10.3)	78 (22.3)	18 (5.6)	64 (19.5)	134 (40.9)	3 (0.9)	1 (0.3)		328 (100)
	09.1 ~12	1 (0.1)	3 (0.2)	2 (0.1)	194 (14.4)	316 (23.5)	30 (2.2)	284 (21.2)	486 (36.2)	14 (1.0)	12 (0.9)		1,342 (100)
	10.1 ~10	1 (0.1)	2 (0.2)	2 (0.2)	165 (15.1)	203 (18.6)	44 (4.0)	225 (20.7)	345 (31.6)	9 (0.8)	9 (0.8)	87 (7.9)	252 (100)
계		3 (0.1)	5 (0.2)	4 (0.1)	393 (14.2)	597 (21.6)	92 (3.3)	573 (20.7)	965 (34.9)	26 (0.9)	22 (0.8)	87 (3.2)	2,762 (100)

주 : 기타는 검정고시 등 인원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2010)

8호처분자의 비행별 현황을 살펴보면, 형법범 중 재산범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폭력범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8호처분대상자 가운데 재산범죄자가 많고 강력범죄자가 적은 이유는 강도·강간 등 죄질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 소년교도소에 수감되고, 8호처분 대상자가 되는 것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이한 것은 특별법범 가운데는 보호관찰 위반자가 대다수라는 점인데, 이는 8호처분 대상자 가운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수용되는 경우가 많음을 나타낸다. 절도와 폭력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비행 유형이고, 도로교통법 위반은 오토바이를 즐겨 타는 청소년에 의한 범죄이다.

표 3-9 8호처분자의 비행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형법범						특별법범							계
		소계	재산 범	강력 범	폭력 범	과실 범	기타	소계	보호 관찰	유해 화학	성 폭력	도로 교통	공무집 행방해	청소년 성보호	
인원	08.6 ~12	173 (52.7)	82	12	79	-	7	155 (47.3)	94	6	14	39	-	2	328
	09.1 ~12	743 (55.4)	446	68	229	-	11	599 (44.6)	388	4	90	93	4	20	1,342
	10.1 ~10	585 (53.6)	350	72	155	-	8	507 (40.5)	318	14	94	66	2	13	1,092
계		1,501 (54.3)	878	152	463	-	26	1,261 (45.7)	800	24	198	198	6	35	2,762

주 : 1. 성폭력은 강간 등 성과 관련된 모든 범죄를 포함함
 2. 폭력범은 폭행 및 폭력행위 등을 포함함
 3. 도로교통범은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가법(도주차량)을 포함함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2010)

2008년 6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8호처분자의 비행전력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인원의 48.3%만이 비행전력이 없는 경우이고, 20.0%가 1회의 비행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회 이상의 비행전력을 가진 자도 3.2%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0 8호처분자의 비행전력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없음	1회	2회	3회	4회	5회이상	계
인원	08.6 ~12	51 (15.5)	133 (40.5)	96 (29.3)	25 (7.6)	12 (3.7)	11 (3.4)	328 (100)
	09.1 ~12	255 (19.0)	361 (26.9)	304 (22.6)	244 (18.2)	100 (7.5)	78 (5.8)	1,342 (100)
	10.1 ~10	1,029 (94.2)	58 (5.3)	3 (0.3)	2 (0.2)	- (-)	- (-)	1,092 (100)
계		1,335 (48.3)	552 (20.0)	403 (14.6)	271 (9.8)	112 (4.1)	89 (3.2)	2,762 (100)

주 : 소년원 재입원일 기준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2010)

2. 8호처분의 운영기관

가. 8호처분 전담기관

2008년 개정 「소년법」 시행당시부터 2009년도말까지 8호처분은 남자소년원의 경우 대덕소년원에서, 여자소년은 안양소년원에서 수용과 교육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자 8호처분자의 경우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있어서 입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직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독립시설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었던바, 2009년 청주소년원의 개청으로 2010년 1월 청주소년원이 여자 8호처분 전담기관으로 바뀌었다. 단, 제주지역의 경우 8호처분을 받은 남자소년은 제주소년원으로 보내지고 있다.

표 3-11 소년원 학교 명칭 및 교육과정

구 분	기관 (학교명)	설립일	개교일	처우과정	교 육 과 정
인문계 학 교	대덕소년원 (대산학교)	98. 7. 1.	02. 3. 4.	7호 8호 9호 10호	- 중학교 교과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 의료재활교육 - 8호처분자 교육(남자 보호소년) - 보호자교육
	청주소년원 (미평여자학교)	09. 7. 1.	-	8호 9호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 8호처분자 교육(여자 보호소년) - 보호자교육
정보통신 학 교	제주소년원 (한길정보 통신학교)	87. 11. 9.	00. 8.30.	8호 9호 10호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 8호처분자 교육(제주지역 남자 보호소년) - 보호자교육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통계(2010)

대덕소년원은 법원소년부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 가운데 7·8·9·10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의료 및 재활치료, 인성교육, 특별활동 등을 하고 있다. 또한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의 분류심사 및 불위탁 소년에 대한 상담조사를 통하여 비행의 원인과 자질을 규명하여 법원의 심리자료로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08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안양소년원은 법원소년부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여자소년 가운데 8·9·10호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여 중·고등학교 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2010년 1월

부터 청주소녀원에서 여자 8호처분자를 대상으로 하여 인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청주소녀원은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중 8호·9호처분을 받은 여자 소년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컴퓨터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표 3-12 8호처분 소년원 수용현황(2010년 10월 기준)

구분	정원	현재인원(명)				
		소계	8호	9호	의료	위탁
대덕소년원	200	244	108	—	76	60
청주소녀원	80	71	15	56	—	—

나. 8호처분 전담기관의 시설현황

대덕소년원은 8호처분 중심 기관으로 개편하기 위해 개방형 시설로 전환하였다. 생활시설은 5명 정도 생활할 수 있는 호실이 23개가 있고, 교육시설로는 종합강의실 2개, 집단상담실 4개, 체험교육장, 강당, 운동장 등이 있다. 건물 전체에 철문과 철격자를 없애고 화사한 색상으로 내부를 꾸밈으로써 교육친화적 공간으로 바꾸었다. 또한 전국소년원 가운데 유일하게 자연친화 등 각종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대덕청소년수련장’을 갖추고 있고, 인근에 위치한 ‘한국법문화진흥센터(대덕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이용하여 대상자들이 법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주소녀원은 여자 8호처분자를 위한 생활호실 및 전용교육시설을 확보함으로써 한층 세밀하고 전문적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8호처분 전담기관의 인력현황

대덕소년원은 직원 67명, 이들 가운데 청소년지도 및 상담 등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 53.7%이다. 8호처분이 처음 운영될 당시 대덕소년원은 8호처분 전담직원으로 6급 이하 보호직 4명을 배치하였으나 2010년 10월 현재 10명의 직원이 8호처분자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주소녀원은 직원 30명 가운데 보호직 직원은 23명, 의무직 직원은 2명, 식품위생직원은 1명, 기능직 직원은 4명이

고, 이 중 8호처분 전담직원을 3명 배치하였으나 아직도 교육직원이 부족하여 시간제 전문강사를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다.

3. 8호처분자에 대한 처우

8호처분 대상자에 대해서는 9·10호처분 운영계획과는 차별화되고 개방적인 인성 교육 중심의 별도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하고, 처우에 있어서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 8호처분자의 급양, 지급품, 보건 등의 기본적 처우는 9호와 10호처분자와 동일하게 처우하고 있다(8호처분 운영지침 제2조 제2항).

그러나 생활시설, 교육시설 등은 다른 처분자와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다(8호처분 운영지침 제4조).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처우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보호소년의 생활실 및 처우과정과 달리할 수 있다.

4.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8호처분 대상자는 급양, 지급품, 보건 등 기본적 처우는 9호, 10호처분자와 동일하게 처우하고 있으나 생활시설, 교육시설, 교육과정은 다른 처분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8호처분 운영지침 제4조). 최근 법무부에서는 비행청소년이 준법정신을 가지고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인격과 확고한 책임감, 긍정적인 자아상을 키워줌으로써 비행의 악순환 고리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8호처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기관의 실정과 여건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활용하고 있다.²³⁾

8호처분의 교육프로그램은 시간 순으로 신입자 교육, 기본교육프로그램 운영, 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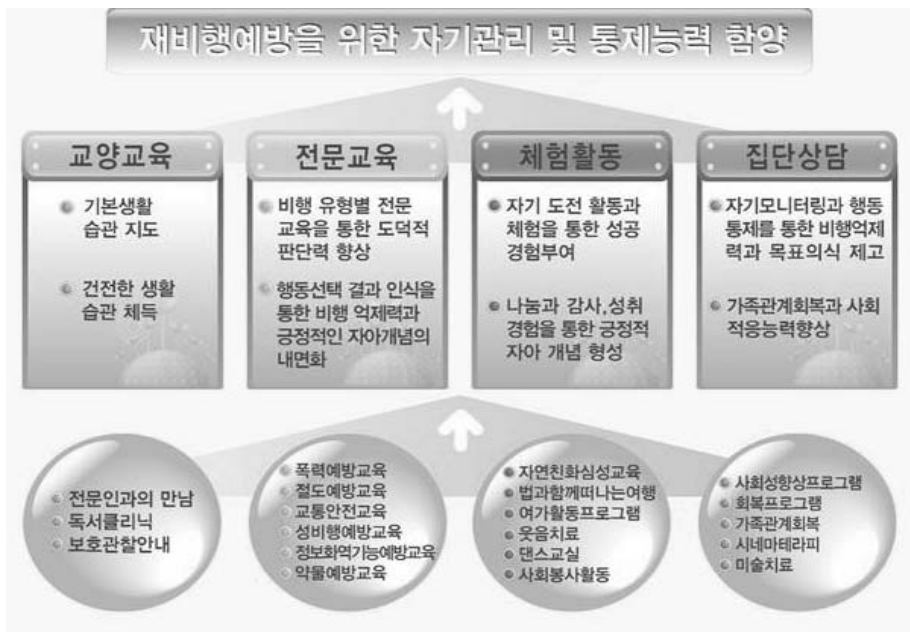
23) 법무부, 비행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집중교육, 2008, 3면 이하.

원자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기간은 4주이고, 1일 7교시, 매시 45분 수업으로 운영된다. 또한 처분자의 특성에 따라 기본교육프로그램은 비행유형별 전문교육, 심성훈련을 위한 집단상담, 체험활동, 교양교육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비행소년은 스스로 자기관리하고 통제능력을 기르게 된다.

일단 법원을 통해 8호처분 교육대상자가 결정되면 보호자에게 입원안내문을 발송하고, 입·퇴원 및 교육에 관한 제반업무는 소년원 교무과에서 담당자가 처리하고, 학생 인수 후 처분결정서를 보관하고 신상조사, 신체검사, 개별상담을 실시한다. 미입원자가 발생한 경우 처분을 결정한 법원소년부 판사 및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신입자 교육은 8호처분 대상자가 심리적 안정을 기하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안내, 교육과정 소개, 적응지도 및 상담활동으로 구성되며, 교육시간은 8시간 이내이다.

그림 3-1 8호처분의 교육과정



전문교육은 폭력예방, 절도예방, 성비행예방, 정보화역기능예방, 약물예방교육 등

비행유형별 전문교육을 통해 도덕적 판단력을 향상시키고, 자기모니터링과 행동통제를 통한 비행억제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체험활동은 등산, 법체험, 웃음치료, 댄스교실 등 자기도전 활동과 다양한 체험을 함으로써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봉사활동 등을 통해 나눔과 감사의 생활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집단상담은 사회성향상프로그램, 영화치료, 미술치료 등을 통해 자기 이해와 타인수용 등을 통한 긍정적인 자아개념 내면화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회복과 사회적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퇴원자 교육은 보호관찰 안내, 퇴원 후 생활지침 등에 대하여 8시간 이내로 실시한다.

교육평가는 교육태도 등을 생활성적 체크리스트 제도를 활용하여 평가점수별 등급을 부여하는 교육수행평가제도로 운영하며, 결과는 매주 3주째 토·일요일에 외출·주말가정학습, 영화감상 및 문화체험, 전화사용 등 생활편의 제공의 조건으로 이용되며, 이를 통해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있다.²⁴⁾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은 기관별 실정을 고려하여 편성·운영된다(8호처분 운영지침 제11조). 대덕소년원의 경우 8호처분자 교육과정은 총 140시간으로, 신입자 교육이 4시간, 기본교육과정이 132시간, 퇴원자 교육이 4시간으로 운영된다. 기본교육과정의 세부내용은 전문교육 35시간, 체험활동 57시간, 집단상담 33시간, 교양교육 9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주소년원도 기본적인 교육프로그램은 대덕소년원과 유사하나 대상소년이 여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 프로그램에 있어서 차별성을 두고 있다.

24) 법무부, 8호처분 운영기본계획, 2008.

표 3-13 대덕소년원의 8호처분 교육과정

구 분	프로그램(시간)	내 용
신입자 교육(4)	입교식	교육등록, 규칙 및 생활안내, 교육과정 소개 교사소개, 교육생 선서, 시설안내(보호자 동행)
	신상조사	신체검사, 신상조사, 개인상담, 반배치, 생활용품지급, 보관금품 확인
기본교육 프로그램 (132)	전문교육 (36)	학교폭력 예방교육, 약물(음주 및 흡연) 예방교육, 절도비행 예방교육, 성비행 예방교육, 교통안전교육, 정보화역기능 예방교육
	체험활동 (58)	자연친화심성교육프로그램(야영, 심신수련), 사회봉사활동, 스포츠교실, 법과함께 떠나는 여행, 인라인 교실, 웃음치료, 댄스교실, 등산 등
	집단상담 (32)	미술치료(3회),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3회), 세상열기/두드림(4회), 시네마세라피(2회), 자아성장회복프로그램(3회), 법교육 프로그램, 감수성훈련프로그램, 분노조절훈련 프로그램
	교양교육 (6)	독서클리닉, 전문직업인과의 만남
퇴원자 교육(4)	퇴원안내	보호관찰 안내
	수료식	나의결의 작성, 교육생 설문조사, 수료증 수여, 나의 각오 및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 등 발표

제2절 8호처분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1. 설문조사 방법

본 설문조사는 2010년 9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0일까지 대덕소년원과 청주소
년원에서 8호처분을 받고 수료 직전에 있는 자와 8호처분을 받은 이후 서울보호관
찰소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에 있는 자 205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
식 설문방법을 통해 실시한 것이다. 8호처분 대상자의 경우 제주도는 지리적 여건
및 대상자 수가 많지 않음을 고려하여 추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우 전국 조사의 어려움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기적 면담시기 조정 등을 이유로
서울 지역에 한정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2. 8호처분 대상자의 특성

가.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총 인원 205명 가운데 남자 185명(90.2%), 여자 20명(9.8%)이었다. 8호처분의 시행 초기이고, 법원에서 아직까지 여자의 시설내 수용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 여자 대상자 수는 현격하게 적었다.

소년부 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판사들이 생각할 때 8호처분 대상자는 만 14세-17세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66.7%이었다.²⁵⁾ 그렇다면 실제로 8호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이 누군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연령별로 보면 10세 이하의 대상자 가운데 한 명도 없었고, 16-18세는 147명(71.7%)으로 상당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13-15세가 42명(20.5%)를 차지하였으며, 11-12세의 경우 2명(1.0%)에 불과하였다. 현재까지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저연령에게는 8호처분을 거의 시행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소년원 입원 전의 학력을 보면 8호처분을 받기 전에 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자는 205명 가운데 80명(39.1%)이었고, 나머지 60% 정도는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자이었다. 전체 8호처분 대상자 가운데 고등학교 재학생은 28.3%, 중학교 졸업생은 21.0%, 고등학교 중퇴자는 18.6%, 중학교 재학생은 15.6%이었다. 8호처분 대상자 가운데 학업을 중단한 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학업에 실패한 청소년이 비행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²⁶⁾이 입증되었고, 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였다.

소년원 입원 전의 직업으로는 학생이었던 경우는 80명(40.6%), 무직이었던 경우는 76명(37.3%),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45명(22.1%)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직업 없이 지내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는 대상자의 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25) 법무부 보호국 소년보호과, 법원판사 방문 설문조사 결과보고 자료, 2008.2 참조

26) 김선남, 청소년 비행관련 변인간의 인과적 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82면

표 3-14 조사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구 분	내 용	사례수	%
성별	남	185	90.2
	여	20	9.8
	합 계	205	100
연령	11~12세	2	1.0
	13~15세	42	20.5
	16~18세	147	71.7
	19세	14	6.8
	합 계	205	100
학력	초등학교재학	1	0.5
	초등학교유예	3	1.5
	초등학교졸업	8	3.9
	중학교재학	19	9.3
	중학교유예	32	15.6
	중학교졸업	43	21.0
	고등학교재학	58	28.3
	고등학교유예	36	17.6
	고등학교졸업	3	1.5
	대학교재학	2	1.0
	합 계	205	100
직업	학생	83	40.6
	아르바이트생	45	22.1
	무직	76	37.3
	계	204	100

나. 조사대상자의 가정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가정결손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소년원 입소 전 누구와 함께 동거하고 있었는지를 질문한 결과 부모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경우는 98명(48.5%)이었고, 부 또는 모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경우도 84명(41.6%), 조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는 11명(5.4%), 형제자매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경우는 5명(2.5%), 친구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도 3명(1.5%), 친척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는 1명(0.5%)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48.5%에 이르고 있어, 실제로 구조적 가정결손이 있다고 더 많이 범죄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고 8호처분 대상자의 가정의 기능적 결손문제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3-15 조사 대상자의 가정환경

구 분	내 용	사례수	%
가정 결손 여부	부모	98	48.5
	조부모	11	5.4
	형제자매	5	2.5
	부 또는 모	84	41.6
	친척	1	0.5
	친구	3	1.5
	합 계	202	100
생활 소득	100만원 미만	32	16.4
	100~200만원	72	36.9
	200~300만원	60	30.8
	300만원 이상	31	15.9
	계	195	100

다. 조사대상자의 비행 특성

8호처분을 받은 자의 비행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비행의 종류, 과거 경찰입건 횟수, 비행 동기, 공범 여부, 과거 보호처분 전력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표 3-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8호처분 대상자가 저지른 비행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차지하는 것은 절도·사기·공갈 등 재산범죄로 67명(27.5%)이었다. 다음으로 보호관찰 위반이 63명(25.8%), 폭행·상해 등의 폭력범죄가 48명(19.7%), 도로교통법 위반이 30명(12.3%),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가 28명(11.5%),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가 8명(3.3%)이었다. 8호처분 대상자 가운데 보호관찰 위반자가 25.8%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자칫 잘못하면 8호처분이 보호관찰 위반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8호처분 대상소년이 비행을 하게 되는 계기로는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84명(43.8%), 실수에 의해 하는 경우가 33명(17.2%), 호기심에 의한 경우가 29명(15.1%), 친구의 유혹에 못 이겨 하는 경우가 28명(14.6%)이었다.

표 3-16 조사 대상자의 비행 특성

구 분	내 용	사례수	%
비행 종류 (복수응답)	재산범죄	67	27.5
	강력범죄	8	3.3
	폭력범죄	48	19.7
	보호관찰 위반	63	25.8
	도로교통법 위반	30	12.3
	성폭력범죄	28	11.5
	계	244	100.0
비행동기	우발적, 충동적	84	43.8
	호기심	29	15.1
	실수	33	17.2
	유흥비 마련	6	3.1
	생활비 마련	12	6.2
	친구의 유혹에 못 이겨	28	14.6
	계	192	100.0
공범여부	있다	139	69.2
	없다	62	30.8
	계	201	100

또한 8호처분자의 경우 공범이 있는 경우가 139명(69.2%)에 달하고 있어서 청소년이 혼자 단독 범행을 하기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려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하는 비행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비행행동을 함에 있어서 또래집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청소년 스스로의 행동의 변화도 중요하나 청소년기의 또래집단과의 관계형성이 중요함이 인식되어야 한다.

조사대상자가 비행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과거 경찰에 입건된 횟수와 과거 보호처분을 받은 경험 등을 살펴보았다. 경찰입건 횟수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의 13.8%만이 입건 경험이 없었고, 4~5회이었던 경우는 52명(27.5%)으로 가장 많았고, 2~3회이었던 경우는 50명(26.5%), 6~10회이었던 경우는 34명(18.0%), 1회이었던 경우는 14명(7.4%), 10회 이상이었던 경우도 13명(6.9%)이나 되었다. 8호처분 받은 대상자의 경우 대부분 경찰 입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보아 실제로 8호처분이 초기비행자를 대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과거에 보호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도 전체 응답자 중 157명(77.0%)이 보호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보호처분을 받은 유형을 보면 보호관찰을 받은 자가 117명(32.5%), 보호자감호위탁을 받은 자가 85명(23.6%), 수감명령을 받은 자가 75명(20.8%)이었다. 소년원 입원을 한 경험이 있는 자가 8호처분을 받은 경우도 1.9%에 해당하였다.

과거 경찰 입건경험이 많은 자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누적적으로 1개월 이내 소년원송치를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3-17 대상자의 비행경력

구 분	내 용		사례수	%
경찰 입건 횟수	없음		26	13.8
	1회		14	7.4
	2~3회		50	26.5
	4~5회		52	27.5
	6~10회		34	18.0
	10회 이상		13	6.9
	계		189	100.0
과거 보호처분 전력	보호처분 경험 유무	없음	47	23.0
		있음	157	77.0
		계	204	100.0
	보호처분종류 (복수응답)	보호자감호위탁	85	23.6
		수감명령	75	20.8
		사회봉사명령	60	16.7
		보호관찰	117	32.5
		아동복지시설 수용	6	1.7
		소년원 입원	7	1.9
		모르겠다	10	2.8
		계	360	100.0

3. 8호처분 결정에 대한 인식

가. 판사의 입원일 지정에 대한 의견

8호처분의 경우 판사가 입원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195명(95.1%)에 해당하였는데, 대상자들이 판사의 입원일 지정에 대하여 만족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45명(22.8%)이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하였고, 69명(35.0%)가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입원일 지정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경우는 8.6%에 불과하여 대체로 입원일 지정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일 지정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이유는 판사가 임의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5명(33.3%)으로 가장 높았다.

표 3-18 입원일 지정에 대한 설문

구 분	내 용	사례수	%
지정 여부	예	195	95.1
	아니오	10	4.9
	계	205	100
만족도	매우 만족	45	22.8
	대체로 만족	69	35.0
	그저 그렇다	66	33.5
	불만족	12	6.1
	매우 불만족	5	2.5
	계	197	100
불만족 이유	판사가 임의로 결정해서	5	33.3
	학업일정에 지장을 받아서	2	13.3
	부모와 자유롭게 입원할 수 없어서	1	6.7
	입원일이 너무 촉박해서	2	13.3
	친구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서	1	6.7
	명절을 보내지 못해서	3	20.0
	억울해서	1	6.7
	계	15	100

나. 처분의 병과에 대한 의견

『소년법』 제32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8호처분을 할 경우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

단하면 5호처분인 장기보호관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8호처분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처분을 할 때 5호처분인 장기보호관찰을 병합하는 사례가 많은지를 보기 위해 보호관찰 병합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 전체 205명 중 무응답을 한 5명을 제외하고 200명 모두 보호관찰을 함께 부과받았다고 응답하였다. 현행 8호처분 부과시 거의 대부분이 보호관찰을 함께 부과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보호관찰을 부과받는 대상소년들이 어떠한 부가처분을 함께 부과받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부가처분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보호관찰을 부과받는 대상자의 71.0%가 야간외출제한명령을 함께 부과받았고, 보호자특별교육명령을 받은 경우도 27.2%에 해당하였다.

그리고 조사대상자들이 처분을 여러 가지 함께 병과받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본인이 받은 처분이 대체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73명(36.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보통이라는 의견이 61명(30.5%), 매우 적절하다는 의견이 44명(22.0%),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15명(7.5%), 매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7명(3.5%)이었다. 대체로 처분이 병과되는 것에 대하여 대상소년들이 만족하는 비율이 58.5%로 높았다.

표 3-19 처분의 병과에 대한 의견

구 분	내 용		사례수	%
병합 여부	보호관찰	예	200	97.6
		아니오	0	0
		무응답	5	2.4
		계	205	100
	부가처분 (복수응답)	보호자특별교육명령	44	27.2
		야간외출제한명령	115	71.0
		대안교육	3	1.8
		계	162	100
만족도 (처분의 적절성)	매우 적절		44	22.0
	대체로 적절		73	36.5
	보 통		61	30.5
	부적절		15	7.5
	매우 부적절		7	3.5
	계		200	100

4. 8호처분의 생활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

실제로 8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입원한 대상소년들이 소년원 생활시설이나 환경에 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활이나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입원시 이루어지는 식발에 대한 의견, 소년원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만족, 생활지도방식에 대한 만족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 식발에 대한 의견

우선 대상소년이 소년원에 입원할 때 일괄적으로 머리를 자르게 되어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응답자 203명 가운데 입원시 식발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경우는 55.2%이었고, 만족하는 경우는 34.5%이었다. 식발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자유를 구속하는 느낌이 들어서 싫다는 의견이 63명(31.0%)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퇴원 후 학교에 갔을 때 다른 학생들과 차이가 나서 싫다는 의견이 47명(23.2%), 출원 후 생활에 지장이 되어서 싫다는 의견이 2명(1.0%)을 차지했다. 반면에 식발에 대하여 만족하는 이유로는 새로운 마음을 갖는 계기가 되어서 좋다는 의견이 57명(28.1%)이었고, 규칙에 따르도록 유도하는 것이므로 좋다는 의견이 13명(6.4%)이었다.

표 3-20 입원시 식발하는 것에 대한 생각

내 용	사례수	%
퇴원 후 학교에 갔을 때 다른 학생들과 차이가 나서 싫다	47	23.2
자유를 구속하는 느낌이 들어 싫다	63	31.0
별 생각이 없다	20	9.9
규칙에 따르도록 유도하는 것이므로 좋다	13	6.4
새로운 마음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좋다	57	28.1
의미를 모르겠다	1	0.5
출원 후 생활에 지장이 되어서 싫다	2	1.0
계	203	100

나. 소년원 생활에 대한 만족도

소년원 생활 전반에 대하여 만족하는지에 대하여는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자는 84명(41.2%),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자는 29명(14.2%)이었다. 반면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자는 16명(7.8%), 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자는 8명(3.9%)이었다. 55.4%가 소년원 생활 전반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원의 시설 및 환경에 대하여 대상소년이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81명(39.5%)이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27명(13.2%)이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30명(14.6%)은 불만족한다고, 5명(2.4%)은 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시설 및 환경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사유를 보면 식사 및 간식이 부실하다는 응답이 15.8%, 세탁하기가 불편하다는 응답이 15%, 의류 또는 침구가 청결하지 않다는 응답이 14.3%, 샤워하기가 불편하다는 응답이 12.8%로 급식 또는 위생상태 등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원의 생활에 있어서 교사의 생활지도 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8호처분 대상자 중 42명(20.5%)이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80명(39.0%)이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총 59.5%가 만족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10.3%를 대상으로 지도방식에 불만족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교사가 거친 언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31.1%이었고, 자신의 잘못에 비해 과도하게 벌을 준다는 응답이 25.9%에 달하였으며, 교사의 대상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에도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15.5%이었다. 교사의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는 학생 스스로 자기관념을 나쁘게 하여 비행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바, 생활지도교사의 지도에 있어서 좀더 인권적이고 대상소년을 배려하는 행동과 언행을 할 필요가 있다.

표 3-21 생활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

구분		내 용	사례수	%
소년원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매우 만족	29	14.3
		대체로 만족	84	41.2
		그저 그렇다	67	32.8
		불만족	16	7.8
		매우 불만족	8	3.9
		계	204	100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	매우 만족	27	13.2
		대체로 만족	81	39.5
		그저 그렇다	62	30.3
		불만족	30	14.6
		매우 불만족	5	2.4
		계	205	100
	불만족 이유 (복수응답)	잠자리가 비좁고 불편하다	13	9.8
		잠금장치, 철창이 너무 많다	6	4.5
		식사 및 간식이 부실하다	21	15.8
		화장실이 불편하다	14	10.5
		의류, 침구류가 청결하지 않다	19	14.3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13	9.8
		샤워하기에 불편하다	17	12.8
		냉난방이 잘 안된다	10	7.5
		세탁하기가 불편하다	20	15.0
		계	133	100
생활지도 방식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	매우 만족	42	20.5
		대체로 만족	80	39.0
		그저 그렇다	62	30.2
		불만족	17	8.3
		매우 불만족	4	2.0
		계	205	100
	불만족 이유 (복수응답)	선생님의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	9	15.5
		선생님의 무관심	2	3.4
		거친 언어 사용	18	31.1
		폭력사용	9	15.5
		과도한 벌주기	15	25.9
		찾은 옷 또는 소지품검사	3	5.2
		선생님의 편애	2	3.4
		계	58	100

다. 소년원 생활에서의 어려움

8호처분 대상자에게 소년원 생활을 함에 있어서 힘든 점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 148명(28.2%)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크다고 응답하여, 수용기간 동안 가족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응답자 중 106명(20.2%)이 구속된 생활로 힘들다고 응답했고 106명(20.2%)이 신체훈련이 힘들다고 응답했으며 45명(8.5%)이 규칙적인 생활이 힘들다고 응답한 결과로 보아 평소 대상소년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질서있는 생활을 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3-22 소년원 생활에 있어서 힘든 부분(복수응답)

내 용	사례수	%
친구들의 괴롭힘	4	0.8
구속된 생활	106	20.2
규칙적인 생활	45	8.5
신체훈련	106	20.2
선생님의 꾸중과 벌	40	7.6
가족에 대한 그리움	148	28.1
금연 및 금주	59	11.2
많은 수업과정	9	1.7
기타	9	1.7
계	526	100

5.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소년부 판사가 생각하는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은 상담 및 심리치료(37.5%), 봉사활동·극기훈련 등의 체험활동(32.5%)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2008년 2월 8호처분 시범운영예정기관의 환경조사 및 직원설문조사에서도 대다수의 직원들이 봉사활동·자기도전훈련 등의 체험활동(65.7%), 상담 및 심리치료(22.9%)가 8호처분 대상자에게 적합하다고 응답

한 바 있다. 실제로 대상이 된 소년들이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필요성을 느끼고 만족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이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교육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의견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 전반에 대하여 만족하는지에 대하여 응답자의 21.1%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48.0%가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69.1%가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만족한다는 62.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28.3%를 차지하였다.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자는 2.5%에 불과했는데, 불만족한 이유를 보면 프로그램이 너무 많거나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림 3-2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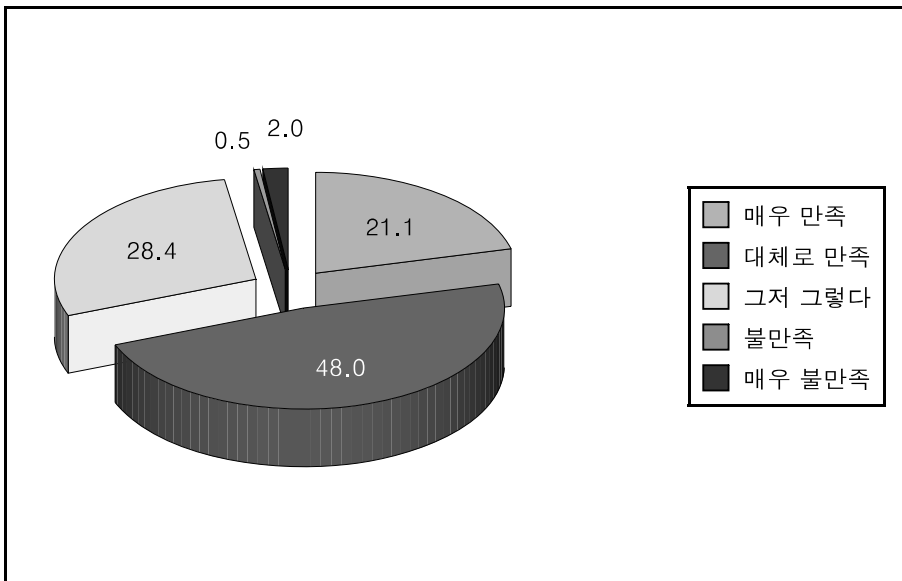


표 3-23 교육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만족도

구분	내 용	사례수	%
만족도	매우 만족	43	21.1
	대체로 만족	98	48.0
	그저 그렇다	58	28.4
	불만족	1	0.5
	매우 불만족	4	2.0
	계	204	100
만족 이유	스스로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91	62.8
	프로그램이 재미있어서	9	6.2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41	28.3
	미래에 유익할 것 같아서	4	2.8
	계	145	100
불만족 이유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2	40.0
	프로그램이 지루해서	1	20.0
	내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2	40.0
	계	5	100

나.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

개별프로그램의 경험 유무는 대상소년의 입원시기, 기관의 운영 사정 등과 깊이 관련된다. 비행예방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응답자의 대다수가 프로그램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나 집단상담프로그램이나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은 프로그램별로 경험있는 자의 비율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여자대상자의 경우 대상자 수가 적음으로 인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4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 유무

(단위 : 명, (%))

교육 내용	구분	경험 유무		
		경험있음	경험없음	계
비행예방 교육프로그램	절도비행예방교육	197 (96.6)	7 (3.4)	204 (100)
	폭력예방교육	200 (98.5)	3 (1.5)	203 (100)
	성비행예방교육	200 (98.0)	4 (2.0)	204 (100)
	약물예방교육	194 (95.1)	10 (4.9)	204 (100)
	교통안전교육	160 (78.4)	44 (21.6)	204 (100)
	정보화역기능예방교육	174 (85.3)	30 (14.7)	204 (100)
집단상담 프로그램	미술치료	202 (99.0)	2 (1.0)	204 (100)
	인간관계회복프로그램	191 (93.6)	13 (6.4)	204 (100)
	두드림	88 (43.1)	116 (56.9)	204 (100)
	영화치료	188 (92.2)	16 (7.8)	204 (100)
	세상열기	135 (67.2)	66 (32.8)	201 (100)
	법교육프로그램	181 (88.7)	23 (11.3)	204 (100)
	음악치료	119 (58.6)	84 (41.4)	203 (100)
체험활동 프로그램	자연친화교육	134 (65.7)	70 (34.3)	204 (100)
	사회봉사활동	112 (55.2)	91 (44.8)	203 (100)
	스포츠교실	185 (91.1)	18 (8.9)	203 (100)
	솔로몬파크	148 (73.3)	54 (26.7)	202 (100)
	인라인교실	104 (51.0)	100 (49.0)	204 (100)
	댄스교실	161 (78.9)	43 (21.1)	204 (100)
	등산	139 (68.1)	65 (31.9)	204 (100)
	전통체험	131 (64.2)	73 (35.8)	204 (100)
교양교육 프로그램	독서클리닉	129 (63.2)	75 (36.8)	204 (100)
	전문직업인과의 만남	151 (74.0)	53 (26.0)	204 (100)
	보호관찰안내	167 (82.7)	35 (17.3)	202 (100)

다. 개별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비행예방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비행예방교육 전체에 관하여 평균 63.7%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6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절도비행예방교육과 성비행예방교육, 약물예방교육이 각각 66.5%, 교통안전교육은 55.6%이었고, 정보화역기능예방교육이 55.2%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표 3-25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

교육내용	구분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비행 예방교육 프로그램	절도비행 예방교육	39 (19.8)	92 (46.7)	65 (33.0)	1 (0.5)	0 (0)	197 (100)
	폭력 예방교육	49 (24.5)	86 (43.0)	63 (31.5)	1 (0.5)	1 (0.5)	200 (100)
	성비행 예방교육	53 (26.5)	80 (40.0)	62 (31.0)	5 (2.5)	0 (0)	200 (100)
	약물 예방교육	49 (25.3)	80 (41.2)	62 (32.0)	3 (1.5)	0 (0)	194 (100)
	교통안전 교육	29 (18.1)	60 (37.5)	64 (40.0)	6 (3.8)	1 (0.6)	160 (100)
	정보화역기능 예방교육	32 (18.4)	64 (36.8)	70 (40.2)	7 (4.0)	1 (0.6)	174 (100)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68.9%로, 다른 교육프로그램의 만족도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집단상담 개별프로그램별 만족도를 보면, 영화치료가 83.5%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미술치료가 79.7%, 법교육프로그램이 71.8%, 음악치료가 64.7%, 인간관계회복프로그램이 62.8%, 두드림이 60.2%, 세상열기가 60.0%를 차지하였다.

표 3-26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

교육 내용	구분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집단 상담 프로 그램	미술치료	79 (39.1)	82 (40.6)	39 (19.3)	2 (1.0)	0 (0)	202 (100)
	인간관계회복 프로그램	43 (22.5)	77 (40.3)	65 (34.0)	4 (2.1)	2 (1.1)	191 (100)
	두드림	33 (37.5)	20 (22.7)	30 (34.1)	3 (3.4)	2 (2.3)	88 (100)
	영화치료	100 (53.2)	57 (30.3)	27 (14.4)	3 (1.6)	1 (0.5)	188 (100)
	세상열기	41 (30.4)	40 (29.6)	49 (36.3)	5 (3.7)	0 (0)	135 (100)
	법교육 프로그램	75 (41.4)	55 (30.4)	47 (26.0)	4 (2.2)	0 (0)	181 (100)
	음악치료	41 (34.4)	36 (30.3)	39 (32.8)	3 (2.5)	0 (0)	119 (100)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별로 만족도의 편차가 컸다. 체험활동프로그램은 평균 61.8%이었고, 개별 프로그램별로 보면 솔로몬파크가 8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스포츠교실 80.0%, 등산 71.2%, 사회봉사활동 58.1%, 댄스교실 57.1%, 전통체험 56.5%, 인라인교실 51.9%, 자연친화교육 35.9% 순으로 나타났다. 활동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인라인교실이나 자연친화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표 3-27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

교육 내용	구분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체험활동 프로그램	자연친화교육	23 (17.2)	25 (18.7)	52 (38.8)	18 (13.4)	16 (11.9)	134 (100)
	사회봉사활동	31 (27.7)	34 (30.4)	37 (33.0)	7 (6.2)	3 (2.7)	112 (100)
	스포츠교실	104 (56.2)	44 (23.8)	32 (17.3)	4 (2.2)	1 (0.5)	185 (100)
	솔로몬파크	78 (52.7)	46 (31.0)	21 (14.2)	1 (0.7)	2 (1.4)	148 (100)
	인라인교실	20 (19.2)	34 (32.7)	40 (38.5)	7 (6.7)	3 (2.9)	104 (100)
	댄스교실	34 (21.1)	58 (36.0)	47 (29.3)	15 (9.3)	7 (4.3)	161 (100)
	등산	56 (40.3)	43 (30.9)	32 (23.0)	3 (2.2)	5 (3.6)	139 (100)
	전통체험	22 (16.8)	52 (39.7)	46 (35.1)	7 (5.3)	4 (3.1)	131 (100)

교양교육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내용이 많지 않았다. 전체 교양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57.4%로, 전문직업인과의 만남이 59.6%, 보호관찰 안내가 56.9%, 독서클리닉이 55.8%이었다.

표 3-28 교양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

교육 내용	구분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교양교육 프로그램	독서클리닉	24 (18.6)	48 (37.2)	55 (42.6)	1 (0.8)	1 (0.8)	129 (100)
	전문직업인과의 만남	37 (24.5)	53 (35.1)	59 (39.1)	0 (0)	2 (1.3)	151 (100)
	보호관찰안내	28 (16.8)	67 (40.1)	67 (40.1)	4 (2.4)	1 (0.6)	167 (100)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집단상담 교육프로그램(68.9%)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

고,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63.7%), 체험활동프로그램(61.8%), 교양교육프로그램(57.4%) 순으로 나타났다.

라. 교육시설 및 환경에 대한 의견

8호처분을 교육하는 시설 및 환경에 얼마나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43.9%가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14.6%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불만족하는 8.8%의 응답자는 불만족 이유를 책걸상이 몸에 맞지 않아 불편하고, 교실 등 교육장소가 비좁다는 등으로 응답하였다.

표 3-29 교육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

구 분	내 용	사례수	%
만족도	매우 만족	30	14.6
	대체로 만족	90	43.9
	그저 그렇다	67	32.7
	불만족	14	6.8
	매우 불만족	4	2.0
	계	205	100
불만족 이유	교실 등 교육장소가 비좁다	4	26.7
	교육 기자재가 낡았다	3	20.0
	책걸상이 몸에 맞지 않아 불편하다	5	33.3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3	20.0
	계	15	100

마.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의견

교사의 수업진행방식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있고 8호처분 교사가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하였다. 대상소년의 51.7%는 교사의 수업진행방식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15.6%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전체 응답자의 67.3%가 8호처분 교육교사의 수업진행방식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하는 3.4%의 이유를 들어보면, 수업이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된다고거나 이해하기 어렵게 설명한다는 등의 이유가 있었다.

표 3-30 교사의 수업방식에 대한 만족도

구 분	내 용	사례수	%
수업진행방식에 대한 만족도	매우 만족	32	15.6
	대체로 만족	106	51.7
	그저 그렇다	60	29.3
	불만족	5	2.4
	매우 불만족	2	1.0
	계	205	100
불만족 이유	수업이 너무 일방적이다	3	42.8
	이해하기 어렵게 설명한다	1	14.3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수업을 진행한다	1	14.3
	교육 시간이 너무 길다	1	14.3
	수업준비 및 진행에 성의가 없다	1	14.3
	계	7	100
교사의 전문성	매우 전문적	21	10.2
	대체로 전문적	96	46.8
	그저 그렇다	78	38.0
	전문적이지 않다	9	4.5
	매우 전문적이지 않다	1	0.5
	계	205	100

교사의 전문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46.8%가 대체로 전문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고, 10.2%가 매우 전문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바. 8호처분의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8호처분 대상소년들이 퇴원 후에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34.5%는 부모님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주위의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은 22.7%, 선량한 친구들과의 교우관계 형성은 19.7%를 차지하였다.

부모님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응답자 비율이 높았던 것은 대상소년의 대다수가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길 희망하고 부모와의 대화를 원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인다. 이들을 위해 부모와의 관계회복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을 드러내는 항목이라 할 것이다.

표 3-31 퇴원 후 적응 위해 꼭 필요한 것

내 용	사례수	%
주위의 따뜻한 시선	46	22.7
부모님과의 관계 개선	70	34.5
선량한 친구들과의 교우관계	40	19.7
복학 또는 구직	27	13.3
생계의 안정	13	6.4
기타	7	3.4
계	203	100

대상소년에게 8호처분의 교육이 개선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35.9%가 좀더 자율적인 생활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응답하였고, 25.3%가 교육프로그램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응답하였으며, 19.7%는 시설 및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응답하였다.

표 3-32 8호처분의 교육개선 위해 꼭 필요한 것

내 용	사례수	%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50	25.3
선생님의 전문화	26	13.1
자율적인 생활화	71	35.9
시설 및 환경의 개선	39	19.7
기타	12	6.0
계	198	100

6. 교육효과에 관한 인식

8호처분의 교육효과에 대하여 대상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중요하다. 일단 8호처분 대상소년이 생활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33.3%가 소년원 교육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변화를 느꼈다고 응답했고, 18.2%가 소년원에 들어오면서부터 또는 신입자교육을 받으면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응답했다. 판사로부터 처분을 받았을 때 바로 생활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응답한

자도 15.8%에 해당하였다.

표 3-33 생활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한 시기

내용	사례수	%
판사로부터 처분을 받았을 때	32	15.8
소년원에 들어오면서부터	37	18.2
신입자 교육을 받으면서	37	18.2
소년원 교육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67	33.0
소년원 퇴원 직전	26	12.8
변화를 느끼지 못했음	4	2.0
계	203	100

8호처분의 교육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대상소년은 잘못에 대한 반성(19.4%), 가족에 대한 사랑(18.8%), 인내심(16.2%), 책임감(13.3%)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3-34 8호처분의 교육 효과(복수응답)

내용	사례수	%
잘못에 대한 반성	175	19.4
가족에 대한 사랑	170	18.8
타인 이해 및 배려	96	10.6
인내심	146	16.2
자기 이해와 자기존중	67	7.4
책임감	120	13.3
준법의식	76	8.4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습득	42	4.7
효과 없음	6	0.8
기타	4	0.4
계	902	100

소년원 퇴원 이후에 무엇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학교에 복학하겠다는 응답이 4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구직 또는 취업준비를 하겠다는 응답이 23.5%, 검정고시를 준비하겠다는 응답이 20.1%이었다. 8호처분을

받을 당시 대상소년 중 학교중퇴자의 비율이 높았던 반면에, 퇴원 이후에 학교에 복학하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겠다는 응답이 높았던 것을 미루어 보아 8호처분 이후 대상소년이 학교생활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고 적응하려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8호처분이 대상소년의 학교로의 재진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35 퇴원 이후의 계획

내 용	사례수	%
학교 복학	90	44.1
구직 또는 취업 준비	48	23.5
검정고시 준비	41	20.1
계획 없음	10	4.9
군입대	9	4.4
자격증 준비	2	1.0
기타	4	2.0
계	204	100

제3절 8호처분의 문제점

8호처분은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중간적 제재로서, 병합처분이 가능하고 초기 비행자를 대상으로 대상소년이 스스로 입원할 수 있는 자율성을 줌은 물론이고, 교육프로그램도 직업교육이나 학과교육보다는 비행과 관련된 집중식 교육이어서 소년보호를 위한 교육기능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9호나 10호 소년원 송치처분보다는 한층 개방적 형태의 처우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법무부에서 8호처분 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²⁷⁾를 보면 교육에 대하여 수료생의 87%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의 효과로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가족에 대한 사랑, 타인이해 및 배려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8호처분이 대상소년에게 교육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법

27) 성우제, “8호처분의 운영성과 분석”, 소년보호연구 제14호, 2010.6, 32면 이하.

무부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8호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재비행율도 전체 소년범죄의 재범율(25% 내외)과 비교할 때 9.3%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아 실제 교육효과도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법원 판사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소년부 판사의 90% 정도가 보호처분의 다양화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었고, 8호처분의 도입에 대하여도 56%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8호처분은 그 성격규명이라든지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명확히 해야 할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하에서는 8호처분이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1. 8호처분 성격의 불명확

시설내처우이자 사회내처우라고 성격 규명을 하고 있으나, 아무리 개방의 형태를 띤다 하더라도 소년이 일정기간동안 수용되어 있으므로 8호처분 자체는 시설내처우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²⁸⁾ 적정한 대상자에 대한 처우가 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송치로 인해 비행을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고 낙인의 우려도 있다. 소년 스스로도 일정기간 수용됨으로써 위축감을 느끼게 되고 정서적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정확한 분류처우 과정을 통해 가장 적정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설내처우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 8호처분 시설들은 기존의 소년원 업무를 하면서 8호처분을 병행하지만 교육에 있어서는 개방처우라는 측면을 강조함으로 인해 사회내처우인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8호처분이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혼합형태로 이루어짐으로 인해 8호처분이 가진 고유의 성격을 잘 살리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8호처분이 시설내처우로서 어떠한 특성을 가져야 하며 사회내처우로서 어떠한 특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한계지를 필요가 있다.

시설내처우이긴 하지만 기존의 9·10호처분이 가진 시설의 폐쇄성은 대상소년의 교정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바 생활시설 및 환경에 있어서 개방화가 필요하고 교육

28) 최인섭/이순래, 청소년 재범예방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237면 이하.

프로그램에 있어서 개방적인 내용으로 소년이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내용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 사회내처우로서의 8호처분은 소년원 내 교육과 중복되지 않는 한도에서 소년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호처분이 독자적인 성격의 처우가 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9·10호처분 기관과의 시설 공유 등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생활시설 및 환경의 개방화를 추구하기 위해 시설을 독립기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8호처분이 운영되는 보호기관을 보면 대덕소년원과 청주소년원 두 곳에 편중되어 있다. 대덕소년원의 경우 8호처분 전담직원 10명으로 200명이 넘는 수용인원에게 제한된 1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25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바 운영에 있어서 한계를 느끼고 있다. 청주소년원의 경우 여자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 수는 10명 내외여서 적지만 대상자 수가 적다 하더라도 전담직원 3명이 1개월 동안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인력면이나 시설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8호처분 교육기관에서 대상소년을 연령별·비행유형별로 구분하여 개별방식에 맞는 처우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거니와, 시설이 특정지역에 편중시키거나 대규모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문제이다.

2. 8호처분 대상자 선정의 문제

소년법 제32조에 규정된 8호처분은 초기비행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8호처분의 대상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나 공식통계자료를 보면 비행전력이 다수인 자나 보호관찰법 위반, 소년원 입시퇴원자의 처분취소 등 규칙위반이나 비행 정도가 중한 대상자도 함께 수용되어 교육과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8호처분의 도입 의도와 상충되고 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다만 법원의 분류심사 단계에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법원단계에서 하는 8호처분 대상자 선정은 판단 당시의 판사의 결정성향이나 해당법원의 지리적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뿐만 아니라 당해 비행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

소년의 개선가능성, 소년의 환경이나 개인적 특성들을 감안한 처분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에 일본 특수단기처우의 대상자는 비행경향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나 일반 단기처우의 대상자보다 진행되지 않고, 소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성이 단순하거나 비교적 가벼우며 조기에 개선이 가능하므로 단기간의 계속적·집중적 지도와 훈련에 의해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대할 수 있는 소년으로 되어 있다.²⁹⁾ 즉, 일본의 3개월 이내 특수단기처우의 경우 ① 비행이 상습화되어 있지 않을 것, ② 소년원 수용경력이 없을 것, ③ 현저한 성격의 편중 및 심신장애가 없을 것, ④ 개방처우에 적합할 것(자기통제에 문제가 없을 것, 심판결정에 납득하고 있으며 갇혀있을 것, 보호자 및 가족과의 정신적 연결이 있을 것, 교제하고 있는 이성으로 인하여 고민하는 등의 불안정 요소가 없을 것, 사건내용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닐 것), ⑤ 보호환경에 문제가 없을 것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전반적으로 시설내 수용경험이 없고, 부모의 보호감독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8호처분도 일본의 특수단기처우 대상자와 같이 대상군 범위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³⁰⁾ 특히 8호처분은 부모의 조력과 감독이 필요한 상태에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부모교육이 가능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선별할 필요가 있다.

현행 8호처분의 운영결과를 보면 보호관찰 미준수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8호처분 조치가 30%를 넘고 있다. 이는 자칫 잘못하면 8호처분이 보호관찰 미준수자에 대한 제재조치로 될 소지가 있어 악용가능성이 높다. 보호관찰 중인 소년에 대하여 새로운 범죄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수용처분인 8호처분을 하는 것은 원래 비행행위를 다시 끄집어내어 판단하는 것으로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나이가 준수사항의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하는 소년분류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한다고는 하나 그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불명확하여 판사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의 경우 크건 작건 요보호성을 지니고 있는 소년이기

29) 關根 夫, 少年法の解説, 一橋出版, 2009, 65면

30) 강경래, 소년원 처우의 실효성 확보방안 : 8호처분과 일본의 특수단기처우와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2010년 한국소년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0, 27-29면

때문에 준수사항 위반은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고 준수사항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일정한 판단기준 없이 보호관찰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를 구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³¹⁾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소년원에 보낼 수 있다는 위하를 수반하는 8호처분 제도의 도입은 소년과의 신뢰관계 확보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보호관찰 미준수자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8호처분 부과는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

3. 8호처분 운영관련 법적 기반의 미비

8호처분에 대한 도입근거에 관한 규정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8호에 있기는 하나 생활시설 및 환경이나 프로그램의 내용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소년원의 처우 및 교정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도 9·10호처분에 대한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는 있으나 8호처분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에서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부터 송치된 8호처분자를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수용 및 보호, 교정교육, 출원 등에 관한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다만, 8호처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내 ‘8호처분 운영지침’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8호처분이 제대로 정착되어 운영되기 위해서는 8호처분의 대상자 선정,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 법률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 현재 소년법 제32조에서의 8호처분은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 외에는 당해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문상 소년원에 1월 이내로 수용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따라서 쇼크구금을 통하여 본래의 처분 의미를 살리고자 한다면 기존 소년원과 다른 장소나 시설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법률상으로 명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³²⁾

더구나 8호처분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즉 외출시 대상자 선정 및

31) 최중식, “일본 소년법 개정의 최근동향(Ⅲ)”, 강원법학 제25권 2008, 141면

32) 김석병, 소년법 개정법률안 공청회자료집 토론자료, 법무부 소년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2007.4.20, 57면

시행과 관련된 문제, 사회봉사활동이나 외부체험활동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호 및 감호장비의 사용 문제, 이탈 문제 등에 대하여도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8호처분의 경우 시설이나 환경의 개방성으로 인해 이탈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탈 등에 대한 부담으로 교육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직원의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되는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4. 8호처분의 병합 및 부가명령 부과 문제

가. 보호관찰과의 병합문제

5호처분은 일반적으로 ①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경우, ② 비행력은 없지만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동종비행을 반복하거나 불량교육 단절, 규칙적인 생활 등을 위해 보호관찰이 필요한 경우, ③ 기소유예 이하의 동종비행을 범하고 6개월 경과 전 또는 이종비행을 범하고 1년 경과 전 본 비행을 하거나 전에 소년부 송치 이상의 비행을 범하고 2년 경과 전에 본 비행을 범하는 등 비행력이 있는 경우, ④ 시설 내처우 유경험자 중 비행내용이 경미하고 단순하며 동기가 우발적이거나 공범관계에서 개입정도가 미약하거나 소극적인 경우, ⑤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보호환경과 보호자의 보호의지가 보통인 경우에 이루어진다. 장기보호관찰은 소년의 비행사실보다는 재범위험성 및 보호필요성에 중점을 두어 결정하게 된다.

반면에 8호처분은 ① 수용경험은 없는 자 중 비행력은 없으나 위험성은 높거나, 위험성은 낮으나 기소유예 또는 보호처분 등 비행력이 2~3회 있는 경우, ② 사회내 처우와 시설내처우 간 연계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워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④ 상담조사시 교육태도가 매우 불량한 경우, ⑤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경미한 비행을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일각에서는 5호처분과 8호처분을 병합함으로써 단기간 동안 시설 내에서 집중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생활의 단절을 최소화하면서 보호관찰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의 성격을 달리하는 8호처분과 5호처분을 병합하는 것이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또는 집행에 있어서 과연 조화로우л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본다.

(1) 보호관찰과의 병합으로 인한 집행의 문제

소년부판사는 8호처분을 단독으로 내리거나 5호처분과 병합하여 처분을 내릴 수 있다. 8호처분 단독처분인 경우 집행주체가 소년원장이 되므로 수용기간이 경과하면 퇴원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병합처분의 경우 집행주체는 보호관찰소장과 소년원장으로 이원화되고 개별적으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병합처분은 상호 대등한 효력을 지니므로 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다른 처분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

하지만 병합처분의 집행에 있어서 어떠한 처분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병합처분의 경우 소년원 입원일의 지정 유무에 따라 집행의 우선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소년원 입원일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즉시 소년원장이 소년의 신병을 인수하여 8호처분을 우선 집행하게 된다. 반면에 입원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5호처분이 집행되는 중간에 8호처분이 집행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입원할 경우 보호관찰 기간 동안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8호처분을 해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8호처분을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과연 8호처분 집행 후 5호처분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5호처분 집행 중 8호처분을 집행하고 이후 남은 기간동안 5호처분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리라 본다. 소년원 출원 후 보호관찰로 복귀한 경우 소년원에서의 교육효과에 바탕을 둔 차별화된 보호관찰이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

(2) 장기보호관찰과의 병합문제

현행 「소년법」 제32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8호처분은 5호처분인 장기보호관찰 처분과 병합이 가능하다. 실제로 공식통계자료를 보면 8호처분만 단독으로 받는 경우는 2008년 처분 시행 이후 1.5%에 불과하고 98% 이상이 5호처분과 병합되고 있다. 실제로 8호처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무응답을 한 5명을 제외하고는 205명 응답자 중 200명이 보호관찰과 병합처분을 받았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대상소년이 1개월간의 소년원송치처분을 받고 나와서 또다시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소년의 책임에 비해 가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소년부 판사도 소년들이 장기간 보호관찰을 받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하는 사례도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³³⁾ 8호처분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직원들의 심층면접에서도 획일화된 보호관찰처분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단기보호관찰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의 재비행가능성이라든지 개선가능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장기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보호관찰의 적용에 있어서도 필요최소한도로만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따라서 소년 개개인의 개선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부가명령 확장적용의 문제

『소년법』 제32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8호처분은 5호처분과 병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만, 실무상으로는 5호처분에 부가되는 명령들이 8호처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법무부의 공식통계자료에 의하면 2008년 처분시행 이후 2010년 3월까지 별도의 부가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는 40%이고, 나머지 60%는 보호자특별교육명령,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안교육명령 등을 함께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32조 제2항 제2호와 제32조의2 제2항에 의해 5호처분의 경우 대안교육명령, 야간외출제한명령, 보호자교육명령 등의 부가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조문을 유추적용하면 8호처분도 5호처분과 병합이 가능하므로 확장하여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단 5호처분에서의 부가처분을 8호처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대상소년에게 효과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만약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정확한 적용을 위해 법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소년분류심사기준에 따르면 대안교육명령은 기소유예, 보호관찰 등 비행력이 있으나 시설내처우가 필요할 정도로 비행성향이 심화되지 않은 경우, 우발적이고 충동적

33) 전국법원 순회설명회에서 부산지방법원 김현철 판사 의견(성우제, 앞의 논문, 23면).

인 성비행을 저질렀거나 무면허운전, 폭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나 절도 등 비행이 습관화된 상태와 같이 비행성향이 심화되어 단기프로그램만으로는 교정이 어려운 경우, 재학 또는 재직 중이나 학교 및 직장생활에 태만하거나 학업 또는 직장을 중단하고 무위도식하는 경우 등에 있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야간외출제한명령은 비행이 야간에 발생하였거나 야간외출시 불량소년들과 교우관계를 지속하는 등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습적으로 외박이나 가출을 하는 경우, 행동개선의지가 박약하거나 야간에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보호자가 야간에 부재하는 경우에 있는 자에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1개월 이내의 집중된 인성교육, 즉 비행예방교육, 체험활동,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받고 사회로 복귀한 대상소년에게 다시 대안교육명령이나 야간외출제한명령을 하는 것이 교육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야간외출제한명령의 경우 1개월 소년원 수용경험이 있는 소년에게 제재가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실무상으로는 8호처분에 5호처분의 부가명령을 부가할 수 있다고 확장해석하고 있으나 실제 「소년법」 제32조의2를 규정 그대로 해석하면 8호처분 대상자에게는 대안교육명령이나 외출제한명령을 할 수 없다.

5. 8호처분 운영시설 및 환경의 개방성 결여

가. 9·10호 처분 업무와의 병행으로 인한 개방성 결여

현재 8호처분 전담기관으로는 대덕소년원(남자)과 청주소년원(여자), 제주소년원(남자)이 있다. 대덕소년원은 8호처분 남자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기관이긴 하나 의료소년원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청주소년원은 여자소년원이라는 특징이 있는 하나 대부분의 업무가 9호처분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제주소년원은 지리적 여건상 8호처분 남자를 수용할 수 있을 뿐이지, 대부분 9·10호처분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8호처분 전담기관이라고 하는 세 기관들에서는 8호처분 업무가 주된 업무가 아니라 병행 또는 부수적인 업무로 되고 있고 다른 수용자들, 즉 9호 또는

10호처분 대상자가 함께 수용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문제이다.

9호, 10호처분 대상자와 함께 8호처분 대상자들을 수용할 경우 초기비행자인 8호처분 소년들이 쉽게 악풍에 감염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9호·10호처분 소년들의 경우 처분의 상이함으로 인한 심리적 박탈감도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다.³⁴⁾ 따라서 8호처분 대상자만을 위한 독립된 개방시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도 특수단기처우의 시행 초기부터 독립기관 설치의 주장이 있어 왔고, 현재도 특수단기처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로 들고 있는 것이 바로 독립기관에서 처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나. 두발 제한의 문제

8호처분자의 생활방식의 개방성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입원시 이루어지고 있는 두발 제한이다. 8호처분은 1개월 송치기간이 끝난 후 바로 사회에 복귀하기 때문에 9호나 10호처분보다는 소년에게 사회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조건들을 갖추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8호처분 수용자에 대한 입원시 삭발조치는 사회복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1개월 송치기간이 끝난 후 대부분 소년이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삭발을 한 상태에서는 일반인과 달라 소년이 느끼는 차별감이 사회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일 수 있다. 일본에서는 3개월 이내의 특수단기처우를 하는 경우 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발정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8호처분 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떠한 교육효과를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지 두발의 상태가 어떠한가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바 1개월 소년원송치처분의 경우에는 두발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리라 본다.

34) 이영호, 앞의 논문, 55면

6. 8호처분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

8호처분은 1개월 이내라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8호처분과 5호처분이 병합되는 경우는 1개월의 교육을 받지만, 8호처분을 단독으로 받는 경우에는 분류, 이송, 신입자 교육에 시간이 소모되어 15일 정도의 교육을 실제로 받게 되고, 그 기간 동안 비행예방프로그램 6개, 집단상담프로그램 7개, 체험교육프로그램 8개, 교양교육프로그램 3개 등 총 24개의 프로그램을 모두 소화해야 한다. 1개월 동안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이 너무 많아 교육을 받는 비행소년에게 차별성을 주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4주 동안 140시간, 1일 7시간의 교육을 받는 소년의 입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8호처분의 전담기관 대부분이 기존 소년원 시설의 일부를 나누어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개방적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에는 물리적·장소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교육시간에 비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교육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낮출 수가 있다. 많은 프로그램에 비해 담당직원의 수가 적어 직원 배치나 직원의 의식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당직조 편성 및 당직근무와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직원간 업무 배분이나 편중, 교육기자재 확보 어려움 등의 문제도 있다. 따라서 소년의 비행유형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별 교육 대상자를 정예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진단과 평가를 위한 전문가 확보 및 외부전문가 활용이 불가피하리라 본다.

또한 생활공간이 소년원 시설이기 때문에 쇼크구금을 시행하지 않는다고는 하나 소년이 느끼는 심리적 외상은 크리라 생각되므로, 짧은 기간이라도 대상소년 상호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비행을 학습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교정교육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지역내 아동치료시설이나 민간기관 활용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심리치료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관리는 사법기관이 하되 운영은 되도록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기관에 맡기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리라 본다.

제4장

외국의 단기구금 형태

외국의 단기구금 형태

제1절 일본의 특수단기처우

1. 서언

일본의 소년원은 가정재판소의 심판의 결과 소년원 송치의 결정이 이루어진 자를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현재 일본 전국에 53개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소년원은 수용소년의 연령, 범죄적 경향의 정도 및 심신의 상황에 따라 초등소년원(심신에 현저한 장애가 없는 대략 12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 중등소년원(심신에 현저한 장애가 없는 대략 16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 특별소년원(심신에 현저한 장애는 없으나 범죄경향이 진행된 대략 16세 이상 23세 미만의 자), 의료소년원(심신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대략 12세 이상 26세 미만의 자)의 4종류로 나뉘며 남녀별로 구분되어 있다.³⁵⁾

35) 일본소년원법 제2조 소년원은 초등소년원 중등소년원 특별소년원 및 의료소년원으로 한다.

2. 초등소년원은 심신에 현저한 문제가 없는 대략 12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를 수용한다.
3. 중등소년원은 심신에 현저한 문제가 없는 대략 16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를 수용한다.
4. 특별소년원은 심신에 현저한 문제가 없으나 범죄적 경향이 진행된 대략 16세 이상 23세 미만의 자를 수용한다. 다만, 16세 미만의 자라도 소년원수용수형자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
5. 의료소년원은 심신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 대략 12세 이상 26세 미만의 자를 수용한다.
6. 소년원은 수용해야 할 자의 남녀별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의료소년원에 대해서는 남녀를 분리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들은 개개의 자질과 환경, 그리고 행동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문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소년에 대해서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고, 공통된 문제성을 갖고 있는 소년을 가능한 한 같은 시설에 수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처우를 실시하기 위하여 분류처우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단기와 장기로 처우가 구분되어 있다. 이 가운데 장기처우는 단기처우에는 적합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여, 생활훈련, 직업능력개발, 교과교육, 특수교육 및 의료조치 등의 5가지의 처우과정으로 운영되며 수용기간은 2년 이내이다.

한편, 단기처우는 비행의 경향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는 있으나 소년의 문제성이 단순하거나 비교적 경미하고, 조기개선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간의 계속적이고 집중적인 지도와 훈련에 의해 그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대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처우를 실시하는 것으로 수용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하는 일반단기처우와 11주 이내로 하는 특수단기처우의 2종류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일본의 특수단기처우제도는 소년비행유형의 변화에 따른 대응, 처우의 개별화의 실현, 그리고 보호처분유형의 확대 등을 목적으로 1991년부터 실시된 제도로 우리의 8호처분(1개월 이내의 소년원송치처분)의 도입상황 등과 매우 유사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 제도이다. 물론 제도운영 등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차이를 나타내고는 있으나 우리의 8호처분의 발전적 운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일본의 특수단기처우제도의 개관과 개별적인 실시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개관하고자 한다.

2. 특수단기처우제도의 성립경위

1922년에 제정된 일본의 구소년법은 종전(終戰)과 함께 1948년에 새롭게 신소년법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신소년법의 운영과 관련하여 1950년대부터 변화가 나타났는데, 소년비행유형에 따른 개별적 처우를 위하여 각 소년원이 독립적으로 단기처우 등의 시책을 추진하였다. 즉, 和泉소년원(현 和泉학원)의 『단기처우과정』과 『통근제원 외위촉직업보도』, 松山소년원(현 松山학원), 宇治소년원, 置賜학원 등의 『교통단기처우과정』, 有明高原寮와 豊ヶ岡농공학원(현 豊ヶ岡학원)의 『단기과정』 등의 새로운 처우

시책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이 소년원 개별적으로 소년비행유형에 따른 단기처우가 실시되던 중, 1977년의 소년법개정 논의과정에서 소년원 처우의 다양화와 탄력적 운용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일본법무성은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년원 운영의 개선을 도모할 것과 종래 소년원에서 개별적으로 실시되어 왔던 단기처우관련시책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1977년 5월 25일 법무성 교정국장 통달인 『소년원의 운영에 대하여』가 발표됨에 따라 소년원운용개선시책이 실시되었다. 이것은 당시의 사회변화에 따른 소년비행유형의 변화에 맞추어 비행소년의 개별적 문제성의 해소를 위하여 가장 적합한 처우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즉, 통달에서는 (1) 처우의 개별화, (2) 수용기간의 탄력화, (3) 가퇴원 후의 보호관찰과의 유기적인 일체화 등을 기본적인 개선시책으로 하고, 장기처우에 대해서는 5가지의 처우과정(생활지도, 직업훈련, 교과교육, 특수교육, 의료처우)을 설정하였다. 또한 단기처우를 일반단기처우와 교통단기처우³⁶⁾로 구분하여 단기처우제도를 통일적인 제도로 발전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소년원운용개선시책에 따라 장기처우와 일반단기처우는 관계기관과의 연계실시 등으로 일정 정도의 성과가 나타났으나, 교통단기처우의 실시와 관련해서는 이후의 소년비행유형의 변화 등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 등이 지적되었다. 즉, (1) 교통단기처우 대상자의 수가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단독의 처우제도로 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2) 대부분의 교통단기처우대상소년의 비행이 교통관련비행만이 아니라 일반비행과 결합된 복합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3) 종전과 달리 단순한 비행유형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일반단기처우와는 다른 유형의 처우가 필요하게 되었다. 당시 일본은 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년홍악법이 감소하였고, 초발형 비행 및 무직소년에 의한 비행의 증가 등, 소년비행의 질적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의 개정³⁷⁾에 따라 소년교통사건의 감소 등³⁷⁾, 소년비행유형의 변화에 따라 단기처우제도의 운영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특히 교통단기처우에 대해서는 운영개시 후 10여년이 경과했음에도 가정재판소의 결

36) 교통단기처우란 주로 자동차 등의 운전과 관련된 비행을 범한 소년을 대상으로 소년원에서 실시된 단기처우(4개월 이내)제도를 말한다.

37) 末永清, 『特修期処遇の現状と展望』, 『ケース研究』 第233号, 1992年, 43면.

정인원에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그 운영방법과 대상소년의 종류, 처우내용 등을 재검토할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다.³⁸⁾ 또한 일반단기처우(6개월 이내) 대상자들 가운데 비교적 비행성이 진행되지 않은 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개별적인 처우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들을 사회내 처우인 보호관찰 내지 교통단기처우로 처리하는 등의 변형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여 왔다. 이에 따라 교통단기처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1977년의 개선시책의 기본이념을 보다 발전시키고 당시의 사회상황과 비행유형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1991년 6월 1일에 소년원운영의 개선에 관한 법무성교정국장통달인 『소년원의 운영에 대해서(이하, 운영통달)』를 일부 개정하였다.³⁹⁾ 개정된 운영통달의 중심내용은 (1) 일반단기처우에 3가지의 처우과정(교과교육, 직업지도 및 진로지도)을 설정하고, (2) 1970년대부터 播磨소년원(현 播磨学園)에서 실시되어 왔던 『일반단기처우특수과』를 중심으로 교통단기처우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편성함과 동시에 새롭게 특수단기처우로 제도화하는 등, 단기처우의 개선시책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즉, 종전의 일반단기처우대상자 가운데 비교적 비행성이 진행되지 않은 소년과 교통단기처우대상의 소년을 결합한 특수단기처우제도가 실시되는 등 소년원에 있어서 단기처우의 근본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⁴⁰⁾

이러한 단기처우의 개선시책의 중심은 무엇보다 소년원에서의 개방처우를 전국적인 제도로 발전시킨 것으로, 운용에서는 종전부터 모색되어 왔던 소년원처우의 실현을 위하여 직원과 소년 간의 신뢰관계와 소년의 자주성과 자율성에 따른 처우를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종전과 구분되는 획기적인 구상이었다. 즉, 소년원에 수용의 확보를 위한 보안직원을 배치할 하지 않는 것, 건물의 시정장치의 배제, 철격자의 철거 등이 도모되었다. 이와 같이 인적·물적 경비력을 대폭적으로 배제한 처우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특수단기의 개방처우는 새로운 유형의 소년원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⁴¹⁾

38) 中井和則, 「少年院施設期処遇の再出発」, 『刑政』 第102卷 第10号, 1991年, 17면

39) 西岡清一郎, 「特修施設期処遇の実施に寄せて」, 『刑政』 第102卷 第10号, 1991年, 26면

40) 末永清, 前掲論文, 44면

41) 中井和夫, 「特修施設期処遇 - 「処遇の社会化」に向けた制度発足10年の軌跡と展望」, 『家庭裁判月報』 第54卷 第10号, 2002年, 5면

한편, 이후의 특수단기처우의 실시과정에서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특수단기처우만을 위한 독립시설의 설치와 교육프로그램의 표준화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7년 5월 1일에 특수단기처우실시시설을 집중화함과 동시에 교육프로그램의 중점화와 표준화 등을 도모하였다. 즉, 개방처우를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하는 특수단기처우실시시설의 입지조건과 관련하여 종래까지 원외위축교육의 적극적인 실시 등의 관점에서 도시부근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야외훈련이 실시를 위하여 자연적인 환경이 정비되어 있는 지역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러한 여러 조건 등을 검토한 결과 사회자원과 자연적인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남자소년을 수용하는 시설로 有明寮(長野県), 美保学園(鳥取県), 佐世保学園(長崎県)의 3곳으로 하고, 여자소년의 수용하는 시설로 愛光女子学園(東京都) 및 丸亀少女の家(香川県)의 전체 5개소로 집중화하는 것으로 하였다.⁴²⁾

또한, 교육프로그램의 표준화와 관련해서는 비행유형별지도 및 SST⁴³⁾, 역할연기(roleplaying) 등을 표준교육프로그램으로 하여 모든 시설에서 공통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고, 그 외 각 시설에서는 이러한 표준적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시설 독자의 교육내용을 정비하도록 하여 종전까지 각 시설에 따라 상이하였던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어느 정도 표준화하였다.

3. 특수단기처우제도에서의 개방처우의 의의

운영통달은 특수단기처우의 처우방침⁴⁴⁾과 처우내용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한 것이 그 특징이다. 즉, 특수단기처우를 포함한 소년원수용경력, 현재의 가입의 유무

42) 林和治, 「少年院における新しい短期処遇について - 一般短期処遇の処遇課程の改編と特集短期処遇施設の集約化」, 『家庭裁判月報』 第59巻 第6号, 2007年, 31면.

43) SST(Social Skills Training)란 정신장애자의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주로 대인관계기능의 개선을 목적으로 그것을 함의적으로 훈련시키는 치료기법이다. 정신요법 중에서는 인지행동요법의 한 종류로 이해되고 있다.

44) 소년원운영의 처우방침으로서 ①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유기적 일체화, ② 처우의 개별화와 수용기간의 탄력화, ③ 시설의 특색화 추진 ④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등이다(中井和則, 前掲論文, 18면).

를 불문하고 반사회적집단예의 가입경력이 있는 자를 배제하는 것 외에, 「개방처우에 적합할 것」이라는 요건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보호환경과 관련된 요건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이것은 개방처우의 실시와 특히 원외위축교육의 적극적인 실시를 위하여 이에 적합한 대상소년선정의 중요성에 따라 추가되었다.

이와 같이 특수단기처우의 처우방침은 매우 명확하다. 즉, 수용처우시설에서의 가능한 한 개방화와 자유화이며, 관리운영상의 제한의 완화이다. 이러한 개방처우는 논자에 따라 그 개념이 상이한데 일본의 특수단기처우에 있어서의 개방처우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개방처우의 개념

개방처우를 규정하는 데에는 먼저 처우환경, 대상자, 예를 들어 선정기준의 적정 운용, 직원의 의식과 조직구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직원과 대상자와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다. 열거한 이런 모든 요소들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 가운데 개방처우를 대표하는 가장 중심적인 요소는 무엇보다 처우환경과 대상자의 선정이며 또한 직원과 대상자와의 관계여부라고 할 수 있다.

처우환경과 관련해서는 개방처우에 적합한 환경을 정비하는 것, 예를 들면 도주에 대한 인적·물적 경비력을 대폭적으로 후퇴시켜 수용처우시설에서 최대한 개방도와 자유도를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해서는 개방처우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 즉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 그리고 처우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자일 것 등이 요구된다. 그리고 개방처우에 걸맞은 직원과 대상자와의 관계도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상호 의사소통의 확립도 그 전제에 포함된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면 개방처우에 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개방처우란 인적·물적 경비력을 대폭적으로 후퇴시킨 처우환경에서 대상자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실시하는 처우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직원과 대상자와의 상호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처우라고 할 수 있다.⁴⁵⁾

45)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개방처우라고 하여도 어디까지나 시설내처우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결코 방임처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中村正則, 前掲論文, 19면).

나. 개방처우의 기본적 조건

개방처우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본적 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은 조건의 정비가 요구된다.

(1) 개방처우에 적합한 물적 환경을 갖추고 있을 것

개방처우라고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적 경비력의 대폭적인 경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숙사, 거실, 교실, 실습장 등의 창에 설치되는 철격자, 담장의 도주방지용의 장비, 감시카메라 및 방범센서 등은 배제되어야 하며, 숙사 등의 출입구의 시정장치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수용의 확보를 위한 물적 경비력은 원칙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물론, 신입교육기간 중의 자, 규율위반에 따른 징계처분자들을 수용하는 건물에서는 철격자를 설치하고 시정장치를 할 것 등이 요구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무제한적인 규제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

(2) 개방처우에 적합한 직원의 복무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것

개방처우에서는 물적 경비력의 대폭적인 경감과 마찬가지로 인적 경비력의 경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즉, 물적 경비력의 경감을 대신하여 도주방지를 위한 직원의 감시의 강화를 요소로 하여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는 직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먼저, 오로지 수용의 확보를 위한 직원만을 배치하고 시정장치는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을 것, 둘째, 대상자가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을 인정할 것, 셋째, 대상자의 신체, 의류, 소지품과 거실의 검사는 원칙으로 하지 않을 것 등으로, 이러한 사항은 운영통달에서도 강조하고 있다.⁴⁶⁾

(3) 개방처우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할 것

특수단기처우는 초기부터 개방처우에 적합한 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만약 개방처우에 부적합한 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본래 개방처우의 원

46) 中村正則, 「新しい少年院短期処遇について」, 『家庭裁判報』第43巻 第11号, 1991年, 21면

활한 전개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방처우에 부적합한 대상자는 개방시설로부터 신속하게 배제하는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하며, 또한 실시시설에 있어서 분류조사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개방처우에 위해를 끼치는 부적합한 자를 사전에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다.

(4) 개방화 및 자유화된 처우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개방처우에 있어서는 직원은 대상자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기대하고 또한 이것을 신뢰하며, 대상자는 그 기대와 신뢰를 거스르지 않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 그 전제에 있다. 이와 같이 개방처우에서는 이에 적합한 개방도와 자유도 등이 높은 처우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특수단기처우에서 이러한 개방처우의 시책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원외위축교육, 외출·외박, 귀성위축, 체험활동 등의 원외처우인데, 이러한 원외처우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사회생활과 유사한 처우환경의 정비가 도모되어야 한다. 즉, 자주 계획학습, 여가활동의 자주계획, 물품 등의 자기관리, 사후자기신고의 면회(무입회면회), 자변품의 확대, 의복과 두발의 자유화, 자주관리작업, 자율적 행동규칙, 침구의 개선 등이다. 물론, 원내생활에서의 무규율·무질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수단기처우의 대상자는 소년이기 때문에 직원의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 즉, 원내생활에 있어서는 지도된 자율적인 규율질서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

(5) 직원의 의식을 높이는 것

개방처우의 이념을 이해하는 직원의 확충은 매우 중요하며, 또한 지속적으로 직원의 교양훈련을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직원의 의식의 고양과 통일성을 도모하여 직원의 자각을 촉진하고 개방처우의 전통형성과 계승에 노력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개방처우의 성부는 처우를 담당하는 직원의 의식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6) 관계기관·지역사회·보호자의 협력을 얻을 것

개방처우의 적절한 운용을 위해서는 가정법원, 보호기관, 학교 등의 관계기관, 시

설주위의 지역사회, 그리고 보호자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각 실시시설에서는 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7) 개방처우에 적합한 입지조건일 것

개방처우, 특히 원외위촉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에서 위촉업체 등의 사회자원의 획득이 쉽고, 또한 귀주처에 가능한 한 가까운 지역적인 입지조건이 요구된다. 또한 개방처우의 처우내용인 야외훈련 등이 실시될 수 있는 자연환경을 함께 갖추고 있는 도시부근에 개방시설이 설치되어 한다.⁴⁷⁾

4. 「운영통달」에 따른 특수단기처우의 의의와 대상자

전술한 바와 같이 운영통달이 발표되어, 동년 9월 1일부터 특수단기처우가 실시되었다. 운영통달에 따른 특수단기처우의 의의와 대상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특수단기처우제도의 의의

특수단기처우에 있어서는 철격자의 제거와 시정장치 등을 하지 않는 등 인권제한의 정도가 낮은 개방처우를 대폭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교정교육에 있어서의 세계적인 추세를 따르고 있다. 즉, 종래의 교정교육에서는 무엇보다 과거의 생활을 반성하도록 하는 등 과거의 행위에 초점을 둔 처우가 중심이어서 시설내처우만으로 처우를 완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특수단기처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장래를 전망하고 앞으로 어떠한 생활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가퇴원 후의 사회복귀에 중점을 두어 원외위촉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며, 보호관찰소나 학교, 고용주 등 소년과 관계되는 사회자원과의 연계를 도모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소년원처우의 완결주의를 배제함과 동시에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와의 유기적인 일체화, 연계처우(시설에서 사회로),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연합협조 등을 전면에 둔 처우

47) 中村正則, 『少年院長期処遇の再出発』, 『刑政』第102卷 第10号, 1991年, 23면

이다. 이에 따라 획일적인 집단처우를 개선하고 개개의 소년의 개별적 문제성에 따라 처우를 개별화하며, 또한 수용기간에 있어서도 탄력적인 운용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한편, 가정재판소에 있어서도 특수단기처우제도라는 새로운 처우제도의 도입으로 처우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당시의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년비행의 질적 변화와 복잡한 사안의 증가 등이 지적되었는데, 이러한 점에서 가정재판소에 있어서도 소년의 문제성에 따른 보다 적절한 처우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종래까지 소년원 송치에 대해서는 소위 낙인의 폐해가 강조되어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는데, 그 배경에는 소년원이 소년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비행성의 배제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시설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특수단기처우제도의 도입으로 소년을 사회와 보다 가깝게 하고 자택 등에서 통학과 통근 등을 하게 함으로써 종래의 소년원의 이미지와 교정교육의 개념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운영통달」에 따른 특수단기처우의 대상자

(1) 대상자의 요건

특수단기처우의 대상자의 기준과 관련하여 운영통달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비행의 경향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나, 그 경향은 일반단기처우의 대상자보다 진행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소년이 갖고 있는 문제성이 단순하거나 또는 비교적 가볍고, 조기개선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간의 계속적·집중적인 지도와 훈련에 의해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대할 수 있는 자」라고 규정하여, 수용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소년일 것과 일반단기처우의 대상자보다 비행의 경향이 진행되지 않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7가지의 구체적인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즉,

- ① 비행이 상습화되어 있지 않을 것.
- ② 교호원, 소년원의 시설수용경력이 없을 것.
- ③ 반사회집단예의 가입경력이 없고 또한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지 않을 것.
- ④ 현저한 성격의 편중 및 심신의 장애가 없을 것.
- ⑤ 개방처우에 적합할 것.

- ⑥ 보호환경에 관한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⁴⁸⁾
- ⑦ 그 외 특수단기처우에 적합하지 않은 요인이 없을 것 등이다.

이러한 각 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⁹⁾

가) 비행성의 정도

운영통달에서는 일반단기처우의 대상자의 비행성 정도에 대해서 「비행성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수단기처우에서도 동일한 비행성의 정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통달에서는 일반단기처우와의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행성의 정도에 대해서 「일반단기처우의 대상자보다 진행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통달상의 요건으로는 비행성이 일반단기처우상당의 소년과 동일한 정도일 경우에는 특수단기처우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처우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비행성만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조건 중에서 요보호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공범관계에서 처분의 균형을 중시하거나, 처분경력 등으로부터 단계적 처우라는 관점에서 비행성이 진행된 자에 대해서 안일하게 특수단기처우를 선택하게 된다면 개방처우과정에 비행성이 진행된 소년이 합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다른 소년에게 악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결국은 해당소년의 처우에도 적당하다고 할 수 없다.

특수단기처우는 단순히 기간이 짧은 소년원처우가 아니라 개방처우를 중심으로 하는 종래와는 다른 성질을 가진 처우라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나) 반사회집단예의 가입경력

여기에서 말하는 반사회집단이란 폭력집단을 말하며, 가입경력이란 구성원이 된

48) 개방처우 특히 원외위축교육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호환경에 관하여 문제가 없는 자라고 하여도 그 해소가 용이할 것 등이 필요하다.

49) 東京家庭裁判所, 「特種短期処遇の対象者の適正選択について」, 『家庭裁判月報』第48巻 第3号, 1996年, 101-108면

것을 말한다. 또한 깊은 관련성이란 예를 들어 준구성원과 같이 구성원과 숙식 또는 행동을 같이 하는 등 가입직전의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요건은 『반사회적 집단에의 가입경력이 없고 또한 깊은 관계를 갖지 않을 것』이라는 형태로 과거에 가입경력이 있는 자 및 현재 깊은 관계를 가진 자를 제외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폭력집단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자는 원외 위축교육 중의 일탈행동이 우려되기 때문에 제외하고자 한 것이며, 또한 반사회적 집단에의 가입경력이 있는 자의 대부분은 요보호성이 높기 때문에 특수단기처우 대상자와 동질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시설내의 악풍감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다.

다) 보호환경에 관한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

원외위축교육의 적극적인 실시, 특히 보호자의 보호아래 통학 또는 통근의 실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호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환경에 관한 요건이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정시연락, 주말귀원 등의 실시에 있어서는 보호자의 협력은 필수적으로 가족과 지역, 교우관계 등에 문제가 없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 필요하다.

라) 개방처우에 적합할 것

개방처우란 전술과 같이 소년의 자주성과 자율성의 존중 및 그 신장을 도모하는 처우로 관리운영상의 제한을 완화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개방처우에 적합할 것』이란, 소년이 개방처우의 실시에 적합한 자주성과 자율성을 갖고 있고, 개방처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 제한이 완화되어도 처우가 가능한 자일 것을 말한다. 개방처우에 적합한 자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으로서는 다음과 같다. 즉, 충동적이지 않는 등 자기통제에 문제가 없을 것, 심판결정에 납득하고 있으며 갱생의욕이 있을 것, 보호자 또는 가족과의 정신적인 연결이 있을 것, 교제하고 있는 이성으로 인하여 고민하는 등의 불안정한 요소가 없을 것, 소년원의 교육에 대해서 보호자의 이해가 있으며 협력을 얻을 수 있을 것, 사건내용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닐 것 등이다.⁵⁰⁾

마) 현저한 성격의 편중 및 심신의 장애가 없을 것

특수단기처우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야간에는 직원이 숙사에 거주하지 않는 등 소년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심신의 장애 및 병적인 경향이 있어 이러한 자주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자 내지 직원의 개별적인 지도와 원조가 상당히 필요한 자, 혹은 성격의 현저한 편중, 은둔형 외톨이 등 직원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다소 시간이 필요한 자 등은 특수단기처우의 대상자로서 적합하지 않다.

5. 특수단기처우의 기본적 교육과정

가. 개방처우

특수단기처우의 특징은 무엇보다 철저한 개방처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반적인 소년원에서조차 가능한 한도에서 개방처우적인 요소를 도입·실시하고 있으나 특수단기처우에서는 보다 질적으로 확대된 개방처우가 실시되고 있다. 즉, 특수단기처우에서는 일반처우와 같이 입원초기의 폐쇄적 처우를 각 대상자의 성적에 따라 서서히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대상자에 대하여 입원 후 신속하게 개방처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⁵¹⁾ 또한 개방처우의 보다 효과적이고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이에 적합한 처우환경과 처우내용을 규정하였다. 즉, 대상자 개개인의 물리적·심리적 개방을 위하여 도주에 대한 물적·인적경비를 대폭적으로 정비하였다. 예를 들어 ① 대상소년의 처우를 위한 거실 및 교실 등의 건물에는 기본적으로 잠금장치 등의 수용을 확보하기 위한 장비를 설치하지 않으며, ② 대상소년의 처우에 있어서는 수용의 확보만을 위한 직원을 배치하고 시정장치를 하지 않는다. 또한 ③ 대상소년에게는 가능한 한 단독행동을 허용하며, ④ 대상소년의 신체·의류·소지품 및 거실 등의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 등이다.

50) 吉田秀司, 前掲論文, 27면

51) 末永清, 前掲論文, 45면

다음으로 개방처우를 추진하기 위한 처우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방처우는 무엇보다 대상자의 자주성과 자율성의 신장을 도모하며 나아가 스스로 자신의 개선향상에 노력하도록 하여 이를 기초로 한 처우의 전개를 도모할 것이 필요하므로, 다음의 5가지를 처우의 기본내용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 (1) 가능한 한 원외위촉교육을 실시할 것.
- (2) 처우에 있어서 처우내용과 방법 등을 대상소년 스스로가 계획하도록 할 것.
- (3) 대상소년에게는 규율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자변품의 사용을 허용할 것.
- (4) 대상소년의 두발과 관련해서는 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외위촉교육 등의 실시에 적합한 형태를 유지하도록 할 것(입원시의 두발정리의 원칙적 금지).
- (5) 대상소년의 면화와 관련해서는 보호자에 의한 효율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이 입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회를 하지 않을 것 등이다.⁵²⁾

나. 원내교육⁵³⁾

운영통달에서는 특수단기처우의 기본방침을 개방처우, 자주성 및 자율성의 신장, 원외위촉교육의 적극적인 실시 등으로 명시하고, 기간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을 2~3개월간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처우방법으로서는 대상자에 공통되는 처우내용에 따른 집단편성에 의한 분류처우를 실시하면서도 의무교육과 개별적인 대상자의 필요성에 따른 교과교육, 원외위촉교과교육, 직업지도, 원외위촉직업보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단처우와 개별처우를 적절히 조합하면서 가능한 한 처우의 개별화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각 소년에 대한 처우는 개별적 처우계획에 근거하여 이루어지지만, 그 기초가 되는 구체적인 처우내용에 대해서는 각 소년원이 지역특성을 살린 기본적 처우계획이 규정되어 있어 가정재판소가 처우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기본적 처우계획을 참고

52) 吉田秀司, 「少年院における短期処遇の新しい動向」, 『罪と罰』, 1995年, 23-25면.

53) 中田稔夫, 前掲論文, 27면 이하.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전형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다. 즉, 소년원에 입원하면 가장 먼저 1주일간은 오리엔테이션 및 개별적 처우계획의 작성이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중간기교육이 8주간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원내개방처우의 3주간, 원외위촉교육기간의 5주간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원외위촉교육에서는 소년원으로부터 통근(통학), 보호자의 보호에서 실시되는 통근(통학)과 계속적으로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등의 3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후반 2주간은 원칙적으로 소년원으로부터 통근 또는 소년원 내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지방갱생보호위원회가 가퇴원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원외위촉교육을 종료한 후에도 일정기간의 재평가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종래의 교통단기처우가 교통관련비행으로 한정하였던 것과 비교하여 특수단기처우에 있어서는 일반비행도 포함하기 때문에 지방갱생보호위원회의 보다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사안에 따라 프로그램이 상이한 경우도 있으며, 또한 통달에서는 「교육과정은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소년의 문제성 및 성적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게 된다.

운영통달의 기본방침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는 1991년 6월 1일의 교정국장통달 「소년원에 있어서 교육과정의 편성 및 그 운영에 대해서」가 있다. 여기에서는 특수단기처우의 목적을 개방적인 처우환경에서 지속적인 실천을 통하여 자율성과 책임감의 육성을 도모하며, 개개의 문제점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를 함과 동시에 원외위촉교육에의 원활한 이행과 관련된 원내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개방처우와 관련하여 1991년 7월 29일의 교정국장통달 「특수단기처우의 운용에 대해서」에서는 철격자와 시정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고, 단독행동을 허용하며, 신체검사 등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자변품의 사용을 인정하며, 원외위촉교육의 실시에 적합한 두발형태를 할 것과 면회시에 직원이 입회하지 않을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개방적 처우의 기본적인 형태로 실시과정에 있어서는 소년 스스로가 직접 자신의 계획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특수단기처우에 있어서는 종래와 같은 외형적, 타율적, 명령적, 강제적인 처우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소년의 자질과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대상소년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기대하여 직원과 소년과의 신뢰관계에서 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중심으

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市原学園에서는 소년들에게 1주간의 활동을 상담을 통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년 스스로가 생활과정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신뢰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활동하고, 원외위축교육의 기회를 통하여 사회에서 통용되는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특수단기처우는 종래의 교통단기처우를 발전적으로 개편한 것으로 종래의 교통단기처우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교정국장통달 『소년원에 있어서 교육과정의 편성 및 그 운용에 대해서』에서 교육과정편성의 지도영역으로서 『교통안전교육』을 예시하고 있어, 특수단기처우에 있어서도 문제군별지도에 따라 중점적인 교통안전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교통관련비행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해당소년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1991년 7월 31일 교정국교육과장통지인 『단기처우의 운용상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에 교통안전교육을 포함하여 당해 소년의 처우내용에 대해서 처우권고가 있으면 존중하도록 하였으며, 가정재판소가 처우결정시에 교통안전교육을 특히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그 중요성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의 성적평가와 관련해서는 1991년 6월 1일의 교정국장통달 『소년원성적평가기준에 대해서』에서 평가항목을 규범의식, 기본적인 생활태도, 학습태도, 대인관계, 생활설계 등으로 규정하였고, 처우심사회에 의한 심사에 따라 5단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한편, 운영통달에서는 특수단기처우대상자와 일반단기처우대상자는 숙사, 학과교실, 실과교실에 있어서 분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수단기처우시설에 있어서도 연장소년과 연소소년의 분리, 교통비행소년과 일반비행소년과의 분리를 명시하고 있다.

다. 원외위축교육

특수단기처우는 개방처우를 기반으로 한 원외위축교육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원외위축교육은 소년원법 제13조 제3항⁵⁴⁾의 규정에 따라 소년원이 아닌 위축된

54) 소년원법 제13조

1. 소년원장은 지방강생보호위원회, 보호관찰소장 또는 소년을 송치한 재판소에 대해서 소년의 심신의 상황, 가정, 교우관계 그 외 환경의 상황 등에 대해서 조사서의 제출 그 외 필요한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2. 소년원장은 경찰관, 아동복지법 제12조의3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아동복지사 그 외의 공무원에 대해서 필요한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학교, 사업소 또는 학식경험자의 지도에 의해 실시되는 직업보도와 교과교육을 말한다. 즉, 소년원에서 학습한 것을 사회에서 응용하고 실천하여 올바른 생활이 가능한가를 확인함과 동시에 새로운 문제 등을 발견하는 등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시되는 교육이다.⁵⁵⁾

이와 같이 원외위축교육은 특수단기처우소년의 일반사회생활로의 이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①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② 도주의 우려가 없고, 또한 ③ 원외위축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3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소년을 그 실시대상으로 하고 있다.⁵⁶⁾

원외위축교육의 실시방법은 일반적으로 소년원으로부터 위축교육장소에 통근(통학)하는 방법이 이루어지지만, 예외적으로는 보호자 또는 적당한 감독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통근(통학)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이러한 경우를 『귀성위축』이라고 하여 주말을 이용하여 소년원에 오도록 하는 방법을 채용하고 있다.

통근(통학)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경우라도 직원의 계호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교통기관도 공공을 이용하게 된다. 또한 의복, 휴대폰 등도 일반인과 동일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⁵⁷⁾ 위축업무내용으로서는 노인 홈의 양호업무, 원예, 포장, 판매, 제품검사, 조리실습, 인쇄작업, 자동차정비 등으로 위축기간은 1주 내지 4주의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위축교육기관으로부터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나 일정액의 상여금이 지급된다.

원외위축교과교육으로서는 일반교육기관(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의 위축에 따라 각

3. 소년원장은 그 소년원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정관구의 장의 승인을 얻어 학교, 병원, 사업소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를 위축하여 교정교육을 원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4. 소년원장은 사업소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위축한 소년원 이외의 시설에 있어서 재원자에 대한 직업의 보도를 원조하는 경우에는 노동기준법 및 노동안전위생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요하며, 또한 재원자에게 상여금이 지급될 때에는 이것을 전부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5)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www.moj.go.jp/KYOUSEI/kyouse04.html) 참조

56) 中村拉則第『特殊観刑処遇の実施内況の概観・制度創設とその後・安定的な発展を祈って-』、『家庭裁判月報』第45巻 第6号, 1993年, 21면

57) 대상소년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년원에서는 대상자의 신분을 원외위축시설의 특정한 관계자에게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연수생 또는 실습생 등으로 소개하여 대상자가 위화감을 갖지 않고 직장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일반교과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⁵⁸⁾

6. 특수단기처우제도의 개별적 실시상황

가. 有明高原療에서의 특수단기처우

(1) 처우의 기본적 방침

有明高原療는 초등·중등의 일반단기처우와 특수단기처우 등이 함께 실시되고 있는 시설로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된 처우가 그 특징이다. 有明高原療의 구체적인 처우의 기본방침은 반복학습, 신뢰관계에 따른 지도, 감동체험, 지역사회와의 연계, 자주성 및 자율성의 신장 등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실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반복학습

인간은 망각의 동물로 학습된 양만큼 잊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지도는 끊임없이 반복하여 이루어지며 이후에 습득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별양호노인 홈 등에서의 원외위축교육은 약 10일 전후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매일 작문을 쓰게 하여 그 날의 체험을 반복하여 생각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습득하게 한다.

나) 신뢰관계에 따른 지도

인간은 타인의 지도에 따르기 이전에 감정이라는 영역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감정이 지도에 대해 부정적이면 지도는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즉, 소년들이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의해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호소하여 담당자와의 신뢰관계에서 지도하고 생각하도록 한다. 신입교육 과정에서 담당자가 실시하는 온

58) 원외위축교과교육의 경우 위축교육기관은 소년원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학교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것은 소년원을 혐오시설로 보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것이라고 하고 있다(中村正則, 前掲論文, 24면).

천카운슬링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다) 감동체험

좋은 자극 또는 감동의 체험이 소년의 갱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자극은 시간(학습량 등)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즉, 자극은 가능한 한 강하고 또한 할애하는 시간 등이 많을수록 감동은 증대된다. 이러한 개념에서 소년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감동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스키캠프, 등산, 합창대회 참가 등 각종의 행사 등을 빈번하게 실시하는 것 등이다.

라) 지역사회와의 연계

인간은 혼자서 생활할 수 없다. 가족, 친구, 교사, 그 외의 다른 영역에 있는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활하게 된다. 그러므로 소년에 대한 교정교육도 소년개인의 활동만이 아니라 가족 등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지도가 요구된다. 따라서 부모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부모참가합숙, 지역과의 관계를 위한 사회봉사, 지역주민과의 합동 운동회 등 지역사회와 연계된 처우가 실시되고 있다.

마) 자주성 및 자율성의 신장

소년의 자기규제력 및 자기통제력을 습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규율을 강화하거나 벌칙을 무겁게 하는 등의 타율적인 방법이 아니라 원내생활에 있어서 약속을 지키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을 철저히 하여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하는 것에 의해 습득하도록 하는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자주성과 자율성의 신장을 목표로 하는 지도가 특수단기처우의 최대의 특색이다. 소년에 의한 자주적인 운영을 기본으로 소년 스스로가 의사결정이 가능한 한계와 소년에게 부여된 조건 등을 조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자치활동은 형식화 또는 표면화에 머무를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수단기처우의 담당자가 각 소년에 대해서 도입

교육을 철저히 하여 본래적인 자치활동이 유지되도록 지도하고 있다.

(2) 특수단기처우의 실시과정

有明高原療에서 실시되는 특수단기처우의 기간은 11주간으로, 제1주를 신입시 교육기간, 제2주부터 제3주까지를 중간기 전반의 교육기간, 제4주부터 제9주까지를 중간기 후반의 교육기간, 제10주 이후를 출원준비기간으로 구분하여 실시되고 있다.

가) 신입교육과정(제1주)

입원으로부터 3일간은 사정기간으로 시정장치가 되어있는 단독거실에서 생활하며 심신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지도가 이루어진다. 또한 면접과 과제(작문)에 의해 자신의 문제점을 스스로가 확인하도록 하며, 원내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야간에 특별한 지도를 실시하기도 한다.

4일째 되는 날부터 특수단기생의 일반거실로 이동하여 각종행사에 참가하는 등 기본적으로 다른 원생들과 동일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나 지도의 중심은 심신의 안정과 이후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 태도의 확립이며, 담당자 등이 특수단기처우의 목적과 규칙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러한 지도에서는 무엇보다 담당자와 소년 간의 신뢰관계가 중요한데, 이를 위하여 온천 카운슬링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온천 카운슬링은 담당자와 대상소년이 함께 온천에 가서 소년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 등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소년의 긴장감을 완화하여 담당자에게 자신의 문제점 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⁵⁹⁾

59) 소년원에서는 개개의 소년에 대해서 비행의 원인이 된 문제점과 소년의 장점 등을 명확히 하여 심신의 발달상황, 자질, 장애의 생활설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인 처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적처우계획은 입원으로부터 1주간 이내에 작성되는데, 처우기간이 단기간이기 때문에 조기에 작성될 필요성에 따라 사회기록이 송부되지 않은 단계에서 작성된다. 그러므로 소년조사표와 개별결과 등을 자료로 하여 개별면접을 실시하고 분류보호담당과를 중심으로 한 작성위원회에서 개별적처우계획안을 작성하며, 심의기관인 처우심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이러한 개별적처우계획표는 가정재판소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大江章, 前掲論文, 4면).

나) 중간기 전반의 교육단계(제2주~제3주)

이 시기에는 통상의 일과에 따라 생활하지만 2주까지의 지도의 중점은 신입사의 도입교육에 준한 심신의 안정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태도의 확립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일과 중에서 실시되고 있는 구체적인 지도내용은 생활지도면에서는 작문지도(주 3회(비행내용 및 장래희망 등)) 및 개별면접, 비행문제별 개별학습 등이다. 교통비행에 의해 입원한 소년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교육이 이루어지며, 직업보도 교육에서는 워드 및 컴퓨터와 관련된 지도가 이루어진다.

한편, 특별활동으로서는 소년으로만 운영되는 자치활동이 실시되어 「약속과 책임」, 「자주성과 자율성의 신장」과 관련된 실천이 이루어진다. 또한 근로체험학습과 감성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 원외봉사활동, 교통안전센터(적상검사실시), 직업안정소(이용방법의 학습)에의 사회견학 등이 실시된다.

보건체육으로서의 캠프훈련, 등산훈련, 스키캠프 등이 실시되며, 그 외의 각종행사(합창대회의 참가, 운동회, 소풍 등)가 빈번하게 실시된다. 특히, 합창대회는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도하며, 운동회는 지역의 자치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소년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참가하여 사회성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비행문제별 개별학습의 하나인 교통안전교육은 합계 32단위의 수업으로 전체의 채우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1회의 참가인원은 2~4명 정도의 소수로, 각 소년의 개별적 문제에 따른 탄력적인 지도가 이루어진다.

교통안전교육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상소년은 2인으로 1인은 폭주족의 공동위험행위로 송치된 소년이며, 다른 1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송치된 소년이다. 교육에 이용된 사고사례는 오토바이 운전 중의 폭주족 청년(22세)이 순찰차의 추적으로부터 도주 중, 적신호를 무시하고 교차점에 진입하여 승용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먼저 담당자가 사고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읽어주고, 이후 사망한 청년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가를 자유롭게 연상하도록 하여 발표하게 한다. 다음으로 이 청년의 가족 및 친구 등의 심정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한 다음 발표하게 한다. 소년들이 발표 중에 그릇된 인식을 하고 있는 점 등이 발견되면 담당자는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보다 깊은 생각을 하도록 유도한다.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소

년들에게 역할연기를 하도록 한다. 즉, 1명은 청년의 입장에서 「사망한 지금, 천국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다른 한 명에게는 부모의 입장에서 「사망한 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을 각각 편지형태로 기술하게 한다. 청년의 입장에서 기술한 소년은 「폭주족을 그만두고 싶었으나 친구의 권유로 1회 정도 참가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 것이 이러한 결과가 되었다. 커다란 불효를 하였다. 주위의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았다. 천국에서 후회해도 지금은 어쩔 수 없다.」라고 기술하였다. 한편, 부모의 입장에서 서술한 소년은 「20세가 넘으면 폭주족을 그만둘 것이라고 말했는데, 신용하고 있었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을 때 왜 부모나 여자 친구를 생각하지 않았는지.....」 등을 기술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주제로 다시 토론을 하며, 그 가운데 담당자는 청년이 폭주족을 그만두지 않은 점과 폭주행위보다 더 건전한 활동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같은 폭주족인 소년에게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한다. 부모의 입장에서의 편지를 통해서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한 소년들에게 가족과 주위의 사람들에 대한 생각 등의 중요성을 지도한다. 그 후 자동차의 사용목적, 사례를 통하여 생명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각하도록 한다. 이후 담당자는 소년개개의 문제성에 따른 지도와 조언 등을 실시하는 형태로 종료한다.⁶⁰⁾

표 4-1 有明高原療의 交通安全敎育지도계획표

단위	주제	지도내용	시간	지도방법 및 유의사항
비행의 반성	과거의 교통비행의 상기	작문(과거의 비행관련), 작문 발표 및 작문에 대한 토론	90분 (2단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함
속도 감각과 사고	교통사고의 공포 등	VTR(교통사고)의 시청 후 감상을 토론	90분 (2단위)	당사자가 되어 생각하도록 함
	속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습득	VTR(시속 100킬로미터의 공포) 시청 후 토론	90분 (2단위)	당사자가 되어 생각하도록 함
사회적 책임	피해배상의 중요성	VTR 시청 후 토론	90분 (2단위)	당사자가 되어 생각하도록 함
가족에의 책임	교통사고에 의해 남겨진 가족의 상처	VTR시청 후 토론	90분 (2단위)	당사자가 되어 생각하도록 함
교통규범	행정처분 및 손해배상의 올바른 지식습득	강의 중심	90분 (2단위)	교통규범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함

60) 大江章, 「少年事件における処遇選択の在り方」, 『研究紀要』第63号, 1994年, 5면

단위	주제	지도내용	시간	지도방법 및 유의사항
사례연구	사고사례, 교통사고에 의한 고아 등과 관련된 작문, 가해자의 수기 등으로부터 교통규범에 대한 인식의 제고	실제로 발생한 교통사고 등의 신문기사를 읽고 토론하며, 중대한 사고기록을 보고 토론. 교통사고고아의 작문을 읽게 하고 이에 대한 감상을 토론 등	360분 (8단위)	본인의 교통비행의 내용에 따른 탄력적 대응
적성검사	교통에 대한 적성의 인식	적성검사 실시 후 토론	90분 (2단위)	
체험학습	체험을 통하여 스피드, 소음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안전운전교육	자전거를 사용하여 실기를 실시, 소음의 녹음테이프를 듣게 한 후 토론	360분 (8단위)	상황에 따라 탄력적 실시
학습정리	학습한 내용의 정리	전 단위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작문으로 정리	90분 (2단위)	

자료 : 大江章, 「少年事件における処遇選択の在り方—少年院における特修短期処遇の実情を通して—」, 『研究紀要』第63号, 1994年, 6면

또한, 이러한 개방처우의 중심에는 「자주와 자율」, 「약속과 책임」의 실천의 하나로 특수단기처우대상자에 의한 자치활동이 중시되고 있다. 즉, 회의, 위원회활동(역할활동), 자치회 등이 담당자의 입회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회의는 매일 2회에 걸쳐 시행된다. 오전회의는 특수단기처우소년 전원이 하루의 생활목표 및 제안사항 등에 대해서 협의하고 협의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오후회의에서는 하루 일과의 점검 및 반성과 요망사항 등에 대해서 협의하고 협의결과는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위원회활동에는 생활위원회, 문화위원회, 보건위원회의 3가지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은 자치회의에서 선출된다. 생활위원은 물품관리, 화단관리, TV시청신청, 급여품의 점검 등이며, 문화위원은 도서정리, 인쇄물의 점검, 게시물, 게시판 관리, 신문관리 등을 담당한다. 보건위원은 청소점검, 쓰레기 관리, 건강관리 등을 담당한다. 이러한 위원회활동의 평가는 자치회의에서 검토되어 그 결과를 담당자에게 보고하며, 위원은 2주간 단위로 선출된다.

다) 중반기후반의 교육단계(제4주~제9주)

이 시기부터는 소년들의 단독행동이 허가된다. 처우내용은 통상적인 일과와 함께 부모와의 교류를 높이는 처우로서 후레아이(ふれあい)통신·부모합숙·원의위촉교육

등이 실시된다. 원외위촉교육에는 원외위촉교과교육과 원외위촉직업보도가 있다.

각 처우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후레이이(ふれあい)통신이란 소년이 시설에서 보호자에게 전화하여 출원 후의 진로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시기까지의 진로지도에 따라 소년 스스로가 생각한 구체적인 장래의 생활설계를 부모에게 전달하여 출원 후 신속하게 취업(취학)할 수 있도록 부모의 협력을 구하는 것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은 이후에 실시될 부모합숙에 연결된다.

후레이이통신은 사전에 소년으로부터 보호자에게 편지를 보내 전화의 내용을 예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년원에서는 사전에 보호자에게 프로그램의 취지 등을 설명한다.

부모합숙은 보호자가 직접 소년원에 와서 가정숙사에서 소년과 함께 1일간 생활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소년의 출원 후의 생활설계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자녀와의 관계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부모합숙은 입원일로부터 5~6주째에 실시되는데, 보호자에게는 사전에 합숙의 안내서를 송부하고 보호자가 내원하게 되면 합숙이 실시되기 이전에 합숙의 목적과 규칙(흡연 및 휴대물품 등) 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보호자들은 소년원에 대한 편견과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년원 측에서는 가능한 한 그러한 경계심 등이 해소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합숙에서는 먼저 가정숙사에서 소년과 보호자가 대화를 하고, 이후 담당자가 참가하여 3자 대면형식의 대화가 실시된다. 여기에서는 소년의 문제점에 따라 보호자와 소년에 대한 카운슬링이 실시된다. 이후 소년의 안내로 소년원 근처를 산책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며, 합숙 종료 후에는 보호자에 대해서 부모합숙의 내용을 보호자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소년에 대해서는 합숙의 성과를 원내 생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조언 등을 실시한다.

원외위촉직업보도란 직업보도의 일환으로 원외의 민간의 복지시설 및 사업소 등에 소년을 위탁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실시방법은 보호자에게 위탁 또는 적당한 감독자에게 위탁하여 통근하는 방법과 소년원에서 교육장소로 통근하도록 하는 방법 등이 채용된다.

먼저, 보호자에게 위탁되어 원외위촉직업보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에서의 보호환

경이 일정 정도 정비되어 있을 것과 협력적인 고용주가 있을 것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보호환경과 협력적인 고용주가 있는 경우에는 소년원 측이 사전에 보호자와 보호사를 연계하고, 고용주와 절충하여 조정을 도모한다. 소년에게는 사전에 도입교육을 실시하여 매일의 행동계획표를 작성하게 한다. 행동계획표는 일과를 세밀하게 규정하며 기상시간 및 취침시간은 원내에서의 생활에 준하도록 하고, 오전 7시와 오후 8시에 소년원에 전화를 하며, 야간에는 과제작문의 작성과 일기의 기입 등을 하도록 한다. 또한 일반준수사항(법령위반의 금지, 행동계획표의 준수 등) 및 특별준수사항(각 소년의 개별적인 문제에 따른 내용)을 규정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보호자에 대해서도 소년에게 준수사항을 지키게 할 것, 원외위촉직업보도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것, 소년원과의 연락 등에 대해 규정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위촉기간은 개별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약 1~2주정도로 이루어지며 원외 위촉직업보도의 종료 후에는 소년에 대해서 그 성과를 원내생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한다.⁶¹⁾

有明高原에서는 통근에 의한 원외위촉직업보도의 사업장으로 특별노인 홈을 이용하고 있다. 실시기간은 입원으로부터 6주간 전후의 2주간으로 실시전의 도입교육에서는 담당자에 의한 지도와 과거에 다른 대상자가 작성한 자료 등이 활용된다. 통근방법은 단독통근으로 담당자가 동반하지 않으며, 업무내용으로는 노인의 거실, 화장실 등의 청소, 식사준비, 목욕의 도움 등 다양하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로, 이 기간 중 소년원에서는 소년에게 매일 과제작문을 쓰도록 하여 일과 중의 반성과 문제점 등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위촉종료일에는 1일에 1,500엔의 상여금이 지급된다.⁶²⁾

61) 이러한 원외위촉직업보도에 대해서는 가족에게 종래와는 다른 소년을 보도록 하여 소년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즉, 부모에게는 변화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으며, 소년에게는 출원 후에도 지속적인 고용이 가능하다는 안심감을 갖고 소년원에 복귀하는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다.

62) 소년원에서는 이러한 노인홈에서의 원외위촉직업보도에 대해서 소년들이 이러한 경험에 따라 커다란 자신감을 갖고 갱생의욕을 높여 그 후의 생활태도에 변화를 가져와 책임 있는 행동으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大江章, 前掲論文, 8면).

라) 출원준비교육단계(제10주~11주)

이 시기의 지도의 중점은 사회생활에서의 올바른 마음가짐과 전망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최초의 2일간을 단독실에서 생활하게 하여 최상급생으로서의 도입교육이 이루어진다. 여기에서는 가족과 보호사, 그리고 고용주에게 출원 후의 결의 등을 편지로 쓰게 한다. 그 후 다시 통상의 일과에 따라 원내지도가 이루어지는데, 생활지도 면에서는 원내생활을 총괄하도록 함과 동시에 출원 후 예상되는 문제점의 대응에 대해서 면접 등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지도한다. 가퇴원일에는 보호자가 참석하여 다른 특수단기처우생들이 준비한 졸업식이 실시된다. 특수단기처우생들이 준비하는 졸업식은 자치회의에 있어서 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자치회의에 의해 사전에 특수단기처우생 가운데 사회 진행역, 축사 낭독역, 기념품의 증정 등을 하는 역 등의 역할분담이 정해진다.⁶³⁾

63) 한편, 소년에 대한 성적평가는 매주 1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담당자회의와 성적조정회의에서 검토가 이루어져, 처우심사회에서 정식으로 결정된다. 담당자회의는 특수단기처우의 경우 특수단기담당자 전원이 출석하여 각 소년의 성적평가 및 이후의 지도방침 등에 대해서 토의한다. 각 소년의 개별담당자가 먼저 성적을 평가하고 문제점과 이후의 과제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후 전원이 검토하여 담당자의 평가를 수정하게 된다. 그리고 진급상당의 소년에 대해서는 다음의 성적조정회의로 이전되어 성적조정회의에서 각 담당관과 분류보호담당자가 참석하여 진급상당의 소년에 대해서 성적평가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평가의 타당성을 위한 조정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처우심사회에서 정식으로 결정된다.

그림 4-1 有名高原療 특수단기처우의 교육 개요

교육과정	신입시 교육	중 간 기 교 육									출원준비교육
표준기간	1주간	8주간									2주간
처우단계	2급 하	2급 상	1급 하								1급 상
기간	제1주	2	3	4	5	6	7	8	9		

입	*자기의 문제점 확인 *규칙적인 생활습관의 습득 *진로에 대한 마음가짐 확립	*자기의 문제점의 개선 *사회의 규칙을 존중하는 태도의 육성 *진로를 결정하고 구체적 활동의 개시	*규범준수의 생활파렴 *사회생활에의 다짐과 전망의 확립	출
	*오리엔테이션 *리성검사 *학력테스트 *건강진단 *체력측정	중간기 도입교육 부도합숙 귀성에 의한 원외위촉교육 소년원에서 통근하는 원외위촉교육	출원준비도입교육	
	*진로상담 *환경비화활동 *윤리개운수업	*사회봉사활동 *외부인과의 교류 *문제성별 교육 *교통안전교육 *진로상담	*자유로운 활동 허가 *체육관에서 자주적 운동	
	*직업지도(워드, 농경) *기초교과지도 *자기계획학습 *자치활동(위원회활동 등) *캠프훈련, 등산훈련, 스키훈련 *원내봉사활동	*출원후의 문제점의 대응 (개별면회) *생활의 습관 문제개선의 지도 등 (관문, 면담)		

폐	개	*행사참가 *ふれあい통신(전화) *원칙 부일회 면회 *사회도덕교육 *사회실무강화
---	---	--

자료 : 大江章, 「少年事件における処遇選択の在り方-少年院における特修短期処遇の実情を通して-」, 『研究紀要』第63号, 1994年, 27면

나. 豊ヶ岡学園과 愛光女子学園의 특수단기처우

기본적 처우계획이란 처우시기별로 처우내용의 특색과 교육목표, 교육기간별 교육목표와 교육내용, 방법 등을 하나로 정리한 것으로, 이러한 것을 기본으로 소년 개개인에 대한 개별적 처우계획이 작성된다.

豊ヶ岡学園의 기본적 처우계획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방적 환경에서 자주성과 자율성, 그리고 책임감과 협조성을 습득하는 교육, ② 원외위촉교육의 적극적 실시로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자각과 근로정신 또는 기초학력을 높이는 교육, ③ 초기부터 출원 후의 진로를 목표로 하여 보호환경의 개선과 생활설계를 확립시키는 교

육 등이다.

표준적 기본교육은 신입시의 교육과정을 약 1주간, 중간기교육과정을 약 6주간, 출원준비교육과정을 약 4주간으로 하는 총11주의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목표의 하나인 『소년 스스로가 개선향상에 노력하도록 하여 가정, 직장, 학교에서 건전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신입교육과정에서는 종래까지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도록 하며, 중간기교육과정에서는 종래까지의 그릇된 행동과 사고를 반성하도록 하여 이러한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며, 출원준비교육과정에서는 원외위축교육의 실시를 통하여 학교와 직장, 가정에 정착하기 위한 자신감을 습득하도록 하여 각 단계를 거쳐 달성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교육내용 및 방법의 특징으로서는 중간기교육과정에 있어서 죄책감을 각성시켜 사회의식의 함양을 도모하는 지도로서 비행경력의 작성, 역할연기(roleplaying), 과제작문, 면접 등의 방법을 반복 실시하며, 豊ヶ岡学園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심신성장 노트』를 사용하여 중간기교육과정에서 출원준비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각종지도의 기록, 평가의 기록 등 개별담당자와의 정신적 교류와 자신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4-2 豊岡学園의 기본처우계획(특수단기처우)

대상자		종별	연령	대 상 자	
		초등 중등	14~19	비행의 경향은 일반단기처우의 대상자보다 진행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조기개선의 가능성이 크고, 단기간의 계속적, 집중력이 지도와 훈련에 의해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대할 수 있는자로 개별처우에 적합한 자	
처우내용의 목적		개방적인 환경에서 자주성과 자율성 및 책임감, 협조성을 습득하는 교육 원외위축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자각과 근로정신 또는 기초학력을 높이는 교육 조기부터 출원 후의 진로를 목적으로 보호환경의 개선과 생활습관을 확립시키는 교육			

교 육 과 내 용 및 방 면	교육목표		*스스로 개선의욕에 노력하도록 하여 가정 및 직장, 학교에서의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습관을 확립하여 책임감과 협조성을 육성한다.				
	교육과정		신입시 교육	중간기 교육	출원준비교육		
	교육기간		약 1주간		약 6주간	약 4주간	
	교육과정별 교육목표		중대까지의 생활을 다시 생각하여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원내생활을 이해하도록 하고 원내생활에의 마음가짐을 갖게 한다. 중대까지의 행동과 생각 등을 반성하도록 하여 이러한 것들이 해시키고, 일반상식과 건전한 생활에 대해 학습시킨다. 또한 사회인으로서의 자각과 책임감을 습득하게 한다.				
	교 육 주 요 내 容 및 방 면	생활지도	*중대까지의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가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시 되돌아 보게 하는 교육 *집단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행동 등을 습득 *보호자료(보호자와의 대화 등)		*비행과 관계되는 문제성에 대한 지도(문제행동별학습) *죄악감을 생각하도록 하여 사회의식의 함양을 도모하는 지도 등(역할연기, 면접 등) *기본적인 생활습관의 습득지도(생활훈련) *진로지도강좌 *출원 후의 문제점의 해소를 위한 구체적 개선방법습득지도(자문, 면접 등) *출원 후의 위기장면에서의 대처방법습득(사회적응훈련)		*원외위축교육실시간 중의 생활태도 점검지도(면접, 집단토의) *원외위축교육의 경험을 살려 사회복귀 후의 문제점 등을 정리지도(심성성장노트, 자문, 면접) *보호조정과 일체된 진로지도(숙박면회, 출원면회)
		직업보도	*원외위축직업보도의 실시를 위한 사전학습(보호자 및 고용주와의 연락회)		*생활환경의 미화, 정리정돈의 중요성을 습득하기 위한 지도(원내미화실습)		*원내교육의 성과를 직장에서 검증하기 위한 지도(원외위축직업보도)
		교과교육	*원외위축교과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사전지도(보호자 및 교사와의 연락회)		*학습지도요령에 기초한 교과지도(교과수업) *재학학교의 결손수업의 보충과 교사와의 신뢰관계의 회복(방문수업)		*원내교육의 성과를 학교에서 검증시키는 지도(원외위축교과지도)
		보건, 체육	*자기의 건강상태 및 체력의 정도를 인식시키는 지도(체육, 건강진단)		*체력의 함양을 도모하고 강한 마음을 육성하는 지도 *자신 스스로 자기의 건강에 관심을 갖도록 지도(건강상담, 의료상담)		
		특별활동			*봉사정신과 사회참여지도(사회봉사활동, 원내야외활동, 클럽활동, 레크레이션, 지역축제참가, 등산, 사회봉사)		
		생활지도	*중대까지의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가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시 되돌아 보게 하는 교육		*집단토의(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교육) *심성성장노트, 일기, 과제자문, 면접(자신의 문제점의 발견과 개선을 위한 방법을 생각하도록 하는 교육)		
특별활동				*역할과 책임을 자각하고 협력하는 생활의 중요성을 습득하는 지도(역할활동)			

자료 : 中田幹夫, 「処遇の社会化」に向けた制度発足10年の軌跡と展望, 『家庭裁判月報』第54巻 第10号, 2002年, 35면

한편, 愛光女子学園의 기본적 처우내용의 특색으로는 다음과 같다. 즉, ① 개방적인 환경에서 자주성과 자율성을 신장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자각을 촉진시키는 교육, ② 시설의 입지조건을 활용하여 풍부한 사회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원외위축 교육의 실시, ③ 비행에 이르게 된 자신의 문제성의 개선을 도모하는 교육 등이다.

표준적인 교육기간은 신입교육과정을 약 1주간, 중간기교육과정을 약 5주간, 출원준비교육과정을 약 5주간으로 책정하여 총 11주간이다.

愛光女子学園에서는 교육목표의 하나인 『사회 및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인격적 자립』을 위해서 신입교육과정에서는 시설생활의 의의를 이해시키고, 중간기교육과정에서는 사회 및 가족 가운데 자신의 입장과 역할을 생각하도록 하여 협조성을 함양하며, 출원준비교육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하고자 하는 자세를 습득하도록 하여, 이러한 각 단계를 거쳐 사회 및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인격적 자립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愛光女子学園의 교육내용의 특징으로서는 신입시교육과정에서 기본적인 생활에 관한 지도, 중간기교육과정에서의 자율적 생활태도에 관한 지도 및 출원준비교육과정에서 풍부한 정서함양을 위한 방법으로 예절강좌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원외교육과 함께 사회성의 함양을 위한 지도로 사회견학, 사회봉사활동의 충실 등을 도모하고 있다.⁶⁴⁾

표 4-2 일본의 소년원처우 일람표

	일반단기처우	특수단기처우	장기처우
대상자	단기간의 지속적, 집중적인 지도와 훈련에 의해 교정과 사회복귀가 기대되는 자로 대략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비행이 상습화되어 있지 않고 2. 시설수용경력이 없고 (특수단기처우를 제외) 3. 반사회적집단에 가입하고 있지 않고 4. 현저한 성격의 편향 및 심신의 장애가 없고 5. 그 외 단기처우에 적합하지 않은 요인이 없는 자	단기간의 지속적, 집중적인 지도와 훈련에 의해 교정과 사회복귀가 기대되는 자로 대략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비행이 상습화되어 있지 않고, 2. 시설수용경력이 없고, 3. 반사회적집단에 가입경력이 없고 또한 깊은 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며, 4. 현저한 성격의 편중 및 심신의 장애가 없고, 5. 개방처우에 적합하며, 6. 보호환경에 관한 커다란 문제가 없으며, 7. 그 외 단기처우에 적합하지 않은 요인이 없는 자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 가운데 단기처우에 적합하지 않은 자
수용기간	6개월 이내(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4~5개월 정도로 구성)	4개월 이내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11주로 편성)	2년 이내로 가능한 한 조기의 가퇴원 또는

64) 中井幹夫, 『処遇の社会化に向けた制度発足10年の軌跡と展望』, 『家庭裁判月報』 第54巻 第10号, 2002年, 31-34면

	일반단기처우	특수단기처우	장기처우
	수용연장가능(6개월 한도)	수용연장불가	퇴원을 도모. 수용 연장가능(1년 한도)
처우방침	반개방처우 및 개방처우를 조합하여 밝은 환경에서 규율 있는 집단생활 중에서 건전한 규범의식을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처우를 실시	입원 후 신속하게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개방처우를 하도록 하며, 밝은 환경에서 규율 있는 생활에서 건전한 규범의식을 습득하도록 하여, 자주성과 자율성을 신장시킴으로써 원활한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처우를 실시. 개방처우로서 특히 원외위촉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	밝은 환경과 규율 있는 생활에서 건전한 규범의식과 생활 습관을 습득하도록 하여 원활한 사회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처우를 실시.
처우과정	교과교육과정 직업지도과정 진로지도과정	—	생활훈련과정 직업능력개발과정 교과교육과정 특수교육과정 의료조치과정
가퇴원 후 보호관찰 목표기간	가퇴원 후 대략 6개월	가퇴원 후 대략 6개월	가퇴원 후 대략 1년

자료 : 東京家庭裁判所, 「特修短期処遇の対象者の適正選択について」, 『家庭裁判月報』 第48巻 第3号, 1996年, 127면

7. 특수단기처우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1992년부터 2009년까지의 특수단기처우제도의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2년에서 1999년까지는 거의 300명 전후의 소년에 대해 특수단기처우가 실시되었으나,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2년의 경우에는 334명으로 전체 소년원수용인원의 7.7%를 차지하였으나, 2005년의 경우에는 76명으로 그 비율은 1.6%로 감소하였고, 2009년에는 12명이고 그 비율은 0.3%로 활용도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표 4-3 특수단기처우 수용인원의 추이

	소년원수용인원 총수(전체)	특수단기	남자	여자	비율(%)
1992	4,356	334	322	12	7.7
1993	4,229	341	327	14	8.1
1994	4,000	325	309	16	8.1
1995	3,828	331	311	20	8.6
1996	4,208	350	332	18	8.3
1997	4,989	305	297	8	6.1
1998	5,388	349	331	18	6.5
1999	5,538	346	336	10	6.2
2000	6,052	233	228	5	3.8
2001	6,008	191	172	19	3.2
2002	5,962	190	184	6	3.2
2003	5,823	152	145	7	2.6
2004	5,300	84	81	3	1.6
2005	4,878	76	70	6	1.6
2006	4,060	28	24	4	0.7
2007	3,709	22	20	2	0.6
2008	3,642	13	13	0	0.4
2009	3,702	12	12	0	0.3

자료 : 각 統計年報, 少年矯正保護統計

한편, 이러한 특수단기처우 대상자 중에 15세 이하의 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2년의 5.4%에서 2005년에는 21%로 약 4배 정도 증가하였고, 이러한 15세 이하의 저연령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17세~18세 소년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졌다.

표 4-4 특수단기처우대상자 연령

연령(%)	연도	1992년	2001년	2005년
14세		6(1.8)	5(2.6)	2(2.6)
15세		12(3.6)	21(11.0)	14(18.4)
16세		33(9.9)	30(15.7)	13(17.1)
17세		95(28.4)	62(35.5)	16(21.1)
18세		114(34.1)	45(23.6)	16(21.1)
19세		74(22.2)	28(14.7)	15(19.7)
20세 이상		0(0.0)	0(0.0)	0(0.0)
계		334	191	76

특수단기처우대상자의 비행유형별로는 도로교통법위반이 1992년 41.0%에서 2005년에는 17.9%까지 감소하였고, 이를 대신하여 절도가 1992년 23.4%에서 2005년에는 31.3%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갈 및 강도치사상의 비율도 증가하였다.

표 4-5 특수단기처우대상자 비행내용

	1992년		2001년		2005년	
	일반단기	특수단기	일반단기	특수단기	일반단기	특수단기
형법범	987	167	1,485	137	1,115	53
주거침입	8(0.5)	1(0.3)	10(0.5)	0(0.0)	4(0.3)	0(0.0)
강제추행, 동치사상	7(0.5)	1(0.3)	15(0.8)	1(0.5)	11(0.8)	3(4.5)
강간, 동치사상	48(3.2)	8(2.40)	28(1.4)	6(3.1)	19(1.3)	1(1.5)
상해	169(11.3)	25(7.5)	329(16.5)	37(19.4)	171(12.1)	6(9.0)
상해치사	10(0.70)	0(0.0)	3(0.2)	1(0.5)	1(0.1)	0(0.0)
폭행	5(0.3)	2(0.6)	12(0.6)	1(0.5)	7(0.5)	0(0.0)
업무상 과실치사상	37(2.5)	21(6.3)	32(1.6)	3(1.6)	24(1.7)	3(4.5)
절도	530(35.5)	78(23.4)	606(30.4)	43(22.5)	584(41.4)	21(31.3)
강도	10(0.7)	3(0.9)	40(2.0)	4(2.1)	29(2.1)	2(3.0)
강도치사상	28(1.9)	10(3.0)	152(7.6)	23(12.0)	97(6.9)	6(9.0)
사기	4(0.3)	0(0.0)	7(0.4)	1(0.5)	22(1.6)	1(1.5)
공갈	91(6.1)	2(0.6)	201(10.1)	10(5.2)	105(7.4)	7(10.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1(2.1)	14(4.2)	26(1.3)	3(1.6)	20(1.4)	1(1.5)
그 외	9(0.6)	2(0.6)	24(1.2)	4(2.1)	21(1.5)	2(3.0)
특별범	443	163	478	53	276	13
각성제단속법 위반	85(5.7)	9(2.7)	79(4.0)	2(1.0)	29(2.1)	1(1.5)
도로교통법	230(15.4)	137(41.0)	328(16.4)	48(25.1)	199(14.1)	12(17.9)
독물 및 극물단속법	117(7.8)	12(3.6)	55(2.8)	2(1.0)	27(1.9)	0(0.0)
그 외	11(0.7)	5(1.5)	16(0.8)	1(0.5)	21(1.5)	0(0.0)
우범소년	64(4.3)	4(1.2)	33(1.7)	1(0.5)	20(1.4)	1(1.5)
계	1,494	334	1,996	191	1,411	67

자료 : 각 統計年報, 少年矯正保護統計

그 외로 특수단기처우대상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학생 이외의 무직자의 비율이 일반단기처우와 비교하여 낮아 학생소년의 증가가 높아졌고, 대부분이 중학졸업 이후 고교에 진학하지 않은 소년과 고교에 진학하였어도 중도에 이탈한 자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4-6 특수단기처우대상자 교육정도

		1992년		2001년		2005년	
초등학교	졸업	0	0.0%	0	0.0%	0	0.0%
	그외	0	0.0%	0	0.0%	0	0.0%
중학교	재학	13	3.9%	20	10.5%	8	10.5%
	졸업	117	35.0%	44	23.0%	12	15.8%
	그외	0	0.0%	0	0.0%	0	0.0%
	불상	0	0.0%	0	0.0%	0	0.0%
고교	재학	23	6.9%	43	22.5%	20	26.3%
	중퇴	169	50.6%	74	38.7%	26	34.2%
	졸업	11	3.3%	8	4.2%	8	10.5%
	불상	0	0.0%	0	0.0%	0	0.0%
고전	재학	0	0.0%	0	0.0%	0	0.0%
	중퇴	1	0.3%	0	0.0%	0	0.0%
단대	재학	0	0.0%	2	1.0%	0	0.0%
	중퇴	0	0.0%	0	0.0%	0	0.0%
대학	재학	0	0.0%	0	0.0%	2	2.6%
	중퇴	0	0.0%	0	0.0%	0	0.0%
불상		0	0.0%	0	0.0%	0	0.0%
계		334	100%	191	100%	76	100%

자료 : 각 統計年報, 少年矯正保護統計

이와 같이 일본의 특수단기처우제도의 활용도는 지속적으로 낮아졌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대상자요건의 구체성의 결여이다. 즉, 비행이 상습화되어 있지 않을 것, 현저한 성격의 편중 및 심신의 장애가 없을 것, 개방처우에 적합할 것, 보호환경에 관한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이 매우 불명확하며, 일반단기처우 대상자와도 유사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각 특수단기처우시설에서 실시되는 교육프로그램이 송치되는 대상소년이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원외위촉교

육을 중심으로 하는 특수단기처우에서는 그 중심에 원외위축직업보도교육 등이 있으나 현재의 비행소년의 특징은 학생소년의 증가로 더 이상 원외위축직업보도교육으로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소년비행에 대한 엄벌화 경향과 소년법의 개정 등의 다양한 요인과 특수단기처우에서 지향하는 개방처우와 사회내처우와의 경계에 대한 인식의 결여, 그리고 표준적인 교육기간과 교육프로그램의 결여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종래까지 특수단기처우제도의 표준적인 교육기간에 대해서는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의 범위에서 각 시설이 임의로 설정하고 있었고, 프로그램 또한 각 시설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등 표준적인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⁶⁵⁾

이러한 것과 함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보다 특수단기처우를 위한 개별적인 시설의 미비라고 할 수 있다. 즉, 특수단기처우제도의 시행초기부터 지속적으로 특수단기처우만을 위한 개별적인 시설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⁶⁶⁾ 개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도 제도의 활용도가 낮아진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7년 5월 1일에 특수단기처우실시시설을 5개 시설(남자 3개 시설, 여자 2개 시설)로 지정함과 동시에 교육내용의 중점화와 표준화 등을 도모하였다⁶⁷⁾. 즉, 개방처우를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하는 특수단기처우실시시설의 입지조건과 관련하여 종래까지 원외위축교육의 적극적인 실시라는 관점에서 도시부근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야외훈련이 실시를 위하여 자연적인 환경이 정비되어 있는 지역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러한 여러 조건 등을 검토한 결과 사회자원과 자연적인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남자소년을 수용하는 시설로 有明高嶽(長野県), 美保学園(鳥取県), 佐世保学園(長崎県)의 3곳으로 하고, 여자소년의 수용하는 시설로 愛光女子学園(東京都) 및 丸亀少女の家(香川県)의 전체 5개소로 집약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처우의 중점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생활훈련과 원외처우를 강화하고, 보호관계조정을 강화하며,⁶⁸⁾ 표준적인 교육기간과 교

65) 林和治, 前掲論文, 20-35면

66) 西岡清一郎, 「特例少年院処遇の実施によせて」, 『刑政』 第102卷 第10号, 1991年, 32면

67) 法務省矯正局少年矯正課, 「少年院における新しい短期処遇について」, 『刑政』 第118卷 第5号, 2007年, 47면

68) 특수단기처우에서는 보호환경에 관한 커다란 문제가 없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보호자와의 관

육내용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특수단기처우에서는 한정된 단기간의 수용기간에 집중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다른 처우와 비교하여 적극적인 교육처우가 요청된다. 그러므로 소규모집단에 있어서의 생활훈련을 통하여 협조성 등을 신장시키며 지역의 사회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사회봉사활동, 야외활동, 원외 위촉교육 등을 중심으로 전개할 것을 규정하였다. 즉, 교육내용과 관련해서는 비행 유형별지도, SST(Social Skills Training), 역할연기(role playing) 등을 표준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책정하여 모든 시설에서 공통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외 각 시설에서는 이러한 표준적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시설독자의 교육내용을 정비하도록 하여 종전까지 각 시설에 따라 상이하였던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일정 정도 표준화하였다.⁶⁹⁾ 예를 들어 佐世保学園(長崎県)에서는 전술한 표준프로그램 외에 종래까지 협력성의 향상을 위한 보트훈련을 실시하여 왔는데, 여기에 보다 교육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보트조종에 관한 지식과 해양관련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도록 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이해와 타인과의 협력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편하였다.

한편, 교육기간과 관련해서는 전체시설 공통적으로 11주간을 표준적인 교육기간으로 하고, 이를 기본으로 하여 각 시설이 교육프로그램을 설정하도록 하였다.⁷⁰⁾

제2절 미국의 단기구금

미국은 쇼크구금처럼 시설내처우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으나 오래전부터 중간처우 또는 중간제재 형태의 단기구금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유형이 병영캠프와 농장 및 야영캠프이다.

계조정 또한 중요한 사항에 포함되므로 적극적인 면회와 통신, 숙박면회 및 특별면회 등의 계획적인 실시와 함께 보호자에 대해서 종래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소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 등을 통하여 재원 중의 보호관계조정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실시시설의 집약화하는 것의 대응책의 하나로 소년과 보호자의 전화에 의한 통신을 모든 특수단기처우시설에서 실시하도록 하였다(法務省矯正局少年矯正課, 前掲論文, 48면).

69) 法務省矯正局少年矯正課, 前掲論文, 48면.

70) 林和台, 前掲論文, 35면.

1. 쇼크구금

쇼크구금은 보호관찰 실시 전에 일시적인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금함으로써 교도소에서의 고통스런 구금의 경험에 미래 범죄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할 것을 가정한 처벌형태로 쇼크를 준다는 의미에서 보통 1~4개월 정도의 단기간 동안 교도소 내에 구금한 후 보호관찰 조건부로 석방한다. 쇼크구금은 다양한 이름과 형태로 존재하는데 쇼크보호관찰(Shock Probation), 쇼크가석방(Shock Parole), 간헐구금(Intermittent Incarceration), 병영캠프(Boot Camp) 등이 이에 해당하며, 각 프로그램의 공통적인 목적은 교도소에 구금경력이 없는 젊은 층의 범죄자를 대상으로 교도소 수용기간을 줄이고 사회복귀 지원과 가족관계를 유지시켜 주며 교도소 수용인원과 비용절감을 위해 도입된 것이다.⁷¹⁾

그러나 8호처분은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의 한 종류로서 단독처분이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병합하기 때문에 교도소 구금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전제로 한 쇼크구금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본다. 또한 쇼크구금이 교정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8호처분은 대상소년의 특성에 맞는 처분을 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 근본취지가 다르고, 교육프로그램도 개방적 인성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어 구금을 목적으로 하는 쇼크구금과는 다르다.⁷²⁾

2. 병영캠프

가. 병영캠프의 의의

병영캠프(Boot Camp)란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해병대에서 이루어지는 신병훈련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군대경험이 없는 신병에 대해서 단기간 집중적인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즉, 집단관리적인 환경에서 심리적·육체적으로 강한 압박을 가하여 종래까지의 자아를 모두 제거하여 한 명의

71) 이백철, 중간처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참조

72) 성우제, 앞의 논문, 7면

필요한 병사로서 변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훈련이다. 1983년 조지아주 교정국에서 구금의 대안프로그램으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주로 구금의 경험이 없으면서 덜 심각한 비폭력범죄로 기소되어 구금될 만한 범죄를 저지른 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훈련대상자 선발과정은 주에 따라 다른데, 20개주에서는 법관의 선고나 교정당국의 명령으로 시행하고 4개주에서는 보호관찰기관에서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군대에서 이루어지는 병영캠프는 통상 8주간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1) 처우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명확하며, 점차적으로 프로그램의 목표가 높아지는 것과 같은 단계적인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 (2) 신병은 병사로서 선서하고, 제복, 부대, 지도관과 일체감을 가져야 하며, 지도관 및 사관 등은 신병에게 있어서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표본이 되어야 한다.
- (3) 지휘관은 병사의 규율을 유지하도록 한다. 병영캠프의 입소시부터 캠프의 간부가 병사의 행동을 완전히 통제하여야 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신병에게 타인 및 자신에 대한 책임을 학습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기회에 있어서 협력과 협조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 (4) 지도의 근본은 신병을 압박하여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갖게 하여 자신을 신장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교정에 있어서의 병영캠프는 군대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러한 병영캠프방식의 훈련법을 그대로 교정처우에 응용하여 범죄자의 심신 모두를 단련시켜 개선하려고 하는 발상으로부터 실시되었다. 이러한 발상은 군대경험을 가진 교정실무가와 정치가들에 의해 강력한 지지를 얻어 1990년대에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나. 병영캠프처우의 발전 경위

군대식훈련과 노동을 수형자처우에 활용한 교정처우의 시초는 1876년에 뉴욕 주에 개설된 Elmira교도소라고 할 수 있다. Elmira교도소⁷³⁾는 Brockway Zebulon에 설립된 교도소로 교정처우에 있어서 개선갱생의 모델의 선구적인 교도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군대식의 규율 아래 행형성적에 의한 누진처우제가 채용되었고, 교과교육 및 직업훈련 등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처우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본래 Elmira교도소는 초범자를 처우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이와 달리 법원으로부터 초범자가 아닌 재범자들이 송치됨에 따라 과잉수용과 갇생의욕이 낮은 수형자가 증가하여 기대하던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또한 Elmira교도소의 수형자는 부정기형이 선고된 자로부터 선발되었기 때문에 수용기간도 행형성적에 따라 상이하여 현재의 병영캠프처우와 같은 단기집중처우가 이루어지지 않는 못하였다.

현재와 같은 단기집중적인 형태의 병영캠프처우가 실시된 것은 1983년부터 Georgia 주와 Oklahoma 주에서 각각 최초의 교정병영캠프가 실시되었다. 당시의 병영캠프는 해병대식의 병영캠프를 그대로 도입한 것으로 군대식이 강하게 남아 있었고 처우내용도 엄격한 육체노동과 체력훈련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개선갱생이라고 하는 교정의 목적과 관련된 관점에서 볼 경우, 반드시 범죄자의 요청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었고, 재범을 등에 있어서도 기대하는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또한 충분한 훈련을 이루어지지 않은 직원이 채용되어 수형자에 대한 학대문제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강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정병영캠프는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그 결과 1984년까지 설치된 시설은 4곳에 불과하였다. 이 시기가 제1기라고 불리는 교정병영캠프이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약간의 상이함이 있으나, 현재까지의 병영캠프를 크게 구분하면, 1983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제1기 병영캠프, 1980년 후반부터 1990년대 전반에 걸친 제2기 병영캠프, 그리고 1990년 중반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한 제3기 병영캠프 등 3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병영캠프는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수정하면서 범죄자처우에 적합한 병영캠프처우의 형태로 발전하여 왔다.

한편, 제2기 병영캠프는 군대식의 분위기를 낮추고 약물관련처우와 교과교육을 프로그램에 도입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3기는 제2기를 더욱 발전시켜 병영캠프라고 하는 시설내처우만이 아니라 시설내처우의 종료 후에 특별한 사후처우를 가미하여 시설내처우와 일체화시킨 프로그램의 실시로 변모해 가고 있다.

73) Elmira교도소는 군대식의 훈련과 엄격한 작업을 기본으로 한 미국교정처우에 있어서 개선갱생모델의 선구적인 존재로 알려져 있다.

또한 최근에는 병영캠프라고 하는 군대로부터 채용한 처우프로그램으로부터 탈피하여 독자적인 범죄자처우방식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 등이 실시되기도 하는데, 이것을 제4기(신세대)병영캠프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표 4-7 교정병영캠프에 있어서 진화과정

	시 기	내 용
제1세대	1983년~1980년대 후반	군대식병영캠프의 복사판
제2세대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전반	약물처우 및 교과교육을 처우에 가미
제3세대	1990년대 중반	시설내의 개선갱생을 위한 처우만이 아니라, 사후처우의 충실을 도모
제4세대	1990년대 후반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일체화를 도모하면서 군대식처우로부터 탈피를 도모

〈표 4-8〉은 1990년대 이후의 병영캠프시설의 증가를 나타낸 것으로 1991년부터 1995년에 걸쳐서 시설 수가 약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정처우 중에서 병영캠프처우가 주목을 받게 된 배경에는 미국의 범죄의 증가와 이에 따른 교정시설의 과잉수용을 들 수 있다.⁷⁴⁾

표 4-8 교정병영캠프시설 수(연방·주)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시설수	26	39	43	50	75	55	54

주 : 1) The Corrections Yearbook 1997.

2) 시설 수는 행형시설만을 포함하며, 보호관찰기관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제외.

74) 이러한 수치는 미국의 형사사법연구소가 각 교정기관에 질문지를 배포하여 조사한 추정치이다. 1996년 이후 시설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불충분한 준비상태에서 유행에 따라 교정병영캠프를 개설하여 충분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도태된 결과이다. 또한 이러한 수치에는 주 단위의 수행자를 처우하는 시설을 나타내고 있다. 1997년 1월 1일 현재 주의 병영캠프가 54개 시설, 연내개설예정인 2개 시설, 군 단위의 병영캠프가 17개 시설, 연내 개설예정인 14개 시설, 보호관찰관제기관의 병영캠프가 17개 시설, 연내개설예정인 8개 시설의 총 112개 시설이다. 한편, 여기에는 소년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범죄가 증가하는 등 범죄대책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Martinson이 “교정처우는 어떠한 효과도 없다 (Nothing Works)⁷⁵⁾”를 발표하여, 종래까지의 개선갱생모델에 따른 교정처우를 근본부터 부정하였고, 또한 도시를 중심으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시민도 범죄자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게 되었다.

한편, 당시의 대통령선거에서도 범죄대책이 경제문제와 더불어 중요한 정치현안으로 부각되었는데, 1980년대의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한 가장 큰 이유는 민주당의 후보인 듀카키스 후보가 Massachusetts 주지사 시절에 실시한 수형자처우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도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하고 있다.

레이건정권 이후 공화당정권은 범죄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엄벌주의를 강조함에 따라 1990년대에 들어서는 미국 전체의 교도소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새롭게 과잉수용이라는 문제가 부각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 병영캠프는 범죄자에게 보다 엄격한 처우를 한다는 이유에서 정치가와 시민으로부터의 강력한 지지를 얻게 되었다. 즉, 종래의 교도소에서 실시되던 교정처우에서는 무엇보다 수형자의 인권존중을 강조하여 수형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담배를 피거나 자동판매기 등에서 음료를 구입할 수 있었고, 또한 스포츠 시설에서 운동을 하는 등 형벌이라고 할 수 없는 처우가 실시되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교정캠프처우는 엄격한 규율 하에서 수형자에게 노동을 과하는 등, 일종의 범죄행위에 대한 응보적인 처우를 하는 것으로, 범죄자에게 엄격한 처우를 하는 것으로 이것이 범죄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처우하여야 한다는 풍조에서 정치가만이 아니라 시민으로부터도 강력한 지지를 얻게 된 이유이다. 즉, 병영캠프의 군대식행동훈련 등의 시각적인 이미지가 시민감정과 합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병영캠프에서는 장기형에 대한 대체형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목을 받게 되었다. 대부분의 병영캠프는 형기가 10년을 넘는 경우라고 하여도 병영캠프를 무시히 종료하면 반년 이내에 석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형기를 단축시키는 것으로 과잉구금의 완화를 가능케 함으로써 교정당국만이 아니라 재정관계부

75) Martinson, R., "What Works? Questions and Answers about Prison Reform", Public Interest 35, 1974, pp.22-54.

서로부터도 많은 지지를 받게 되었다.

다. 시설내처우로서의 병영캠프

지금까지 병영캠프의 발전의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였는데, 병영캠프는 그 형태를 지속적으로 변화하였으며 또한 다양화되었다. 현재의 병영캠프는 크게 제3기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 정치적인 압력으로부터 형벌적인 측면을 전면에서 둔 제1기의 처우 형태를 실시하고 있는 병영캠프가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은 아니다. 또한 최근에는 각 주에 따라 처우유형에 독자성을 띠고 있으며, 종래의 병영캠프와의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병영캠프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Mackenzie and Hebert는 병영캠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⁷⁶⁾

- (1) 처우프로그램 중에 군대식의 집단행동훈련이 포함되어 있다.
- (2) 일반의 수형자와는 분리하여 처우가 이루어진다.
- (3) 교도소에서의 처우와는 상이한 처우로서 위치하고 있다.
- (4) 엄격한 훈련 및 작업을 포함한 엄격한 일과에의 참가가 의무화되어 있다.

한편, 병영캠프는 대략 30세 이하의 젊은 층, 범죄성이 진행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많으며, 수용기간은 반년 이하의 단기집중적인 처우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병영캠프는 장기형의 대체형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이 많으며, 3~10년의 형이 선고된 자를 대상으로 병영캠프처우의 종료를 조건으로 조기에 가석방으로 이행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프로그램의 실시 도중에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훈련에 따르지 못하고 탈락한 경우에는 일반의 교도소에서 잔형기를 보내게 된다.

병영캠프처우의 기본은 엄격한 규율 아래에서의 집단관리적인 처우이다. 내용으로서는 제1기 병영캠프에서 실시되고 있는 집단행동훈련, 체육훈련, 노동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노동부분에도 사회복귀적인 요소를 가미시키기 위해서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사회봉사활동을 가미한 프로그램 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2기·제3기의 병영캠프에서는 제1기보다 치료와 교육적인 처우가 증가하였는데,

76) MacKenzie and Herbert, "Preface", in MacKenzie, D.L. and Herbert, E. (eds), "Correctional Boot Camp : A Tough Intermediate Sanction",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1995, pp. vii-xii

그 중에서도 특히 교과교육, 약물문제처우, 생활기능훈련(사회적응훈련)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교과교육에서는 고등학교졸업자격에 상당하는 GED시험대책 외에, 기초학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약물문제처우에서는 약물교육을 중심으로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의존정도에 따른 치료적 처우를 실시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생활기능훈련에서는 사회복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필요한 취업활동, 가계관리, 건강관리 등에 관한 기능훈련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사회보험의 등록방법 및 운전면허증의 관리 등의 가석방 후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중심적인 프로그램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외에 수형자 가운데 10대에 부모가 된 자가 많기 때문에 부모교실 등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설에 따라서는 사회봉사활동 및 피해자와의 화해를 프로그램에 가미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Vermont 주에서는 교정서비스의 시민에 대한 행정책임(Accountability)을 높이기 위하여 “어떠한 교정처우가 요구되는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가미된 병영캠프의 구축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판명된 것은 시민은 반드시 범죄자에 대해서 엄벌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룬 후에 개선갱생을 하는 것을 요망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⁷⁷⁾ 즉, 시민은 범죄자가 그들이 발생시킨 피해의 실태를 인식하고 피해회복에 노력할 것, 구체적으로는 사회봉사활동 및 교정처우에 피해자 및 지역사회가 참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Vermont 주에서는 체육훈련 및 집단행동훈련의 시간을 줄이고 사회봉사활동을 중시하는 병영캠프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 또한 이러한 병영캠프에서는 정기적으로 피해자지원그룹의 대표자와 수형자와의 집단토의를 실시하거나 수형자에게 범죄피해를 이해시켜 피해자와 수형자와의 화해조정 등을 프로그램에 가미시킨 처우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병영캠프라고 하여도 단기집중적인 처우를 하는 것, 집단처우가 기본이 되어 있는 것, 엄격한 규율에 따라 규칙적인 생활이 요구되고 있는 것 등이 공통된

77) Bazemore, Gordon and Quinn, Thomas J., "Boot Camp, Work Camp and Community Needs : A Restorative Justice Perspective on Correctional Objectives", in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eds), *Juvenile and Adult Boot Camps*,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1996, pp.219-232.

것으로, 이것을 제외하면 처우내용은 개별적으로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라. 사후처우

제3기 병영캠프의 최대의 특징은 사후처우를 병영캠프프로그램에 가미하여 시설 내처우와 일체화시킨 프로그램의 실시를 목표로 한 것이다. 종래의 제2기의 병영캠프와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는 병영캠프처우에서의 사후처우의 중요성이 지적되었다. 또한 병영캠프의 종료직전에 이루어진 수형자에 대한 인터뷰 조사 및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병영캠프처우에 의하여 자신감과 자율심 등을 습득하는 등 강한 달성감과 갱생의욕의 향상이 인정되었으나 이후의 재범조사 등에서는 그 효과가 장시간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았다. 즉, 군대의 병영캠프와는 달리 교정병영캠프의 경우 범죄자는 엄격한 규율 하에 실시되는 시설내처우에서 이후에는 아무런 규율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에 복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재범율에 있어서는 별다른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정병영캠프에서는 시설내처우로부터 사후처우에 연결되는 처우가 불가결하게 되었다.

병영캠프프로그램에 있어서 사후처우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의 가석방에 대한 보호관찰보다 처우의 정도가 높은 형태가 대부분이다. 다만, 처우정도가 높다고 하여도 그 목표는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사후처우에는 크게 2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는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적 기능과 개선갱생을 위한 보도원호적 기능 등이 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이러한 2가지의 기능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 달라지는데, 지도감독적인 처우로는 빈번하게 실시되는 약물사용검사 및 전자감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보도원호적인 처우로는 시설내처우의 단계에서 실시되는 약물관련처우, 학과교육 및 사회적응훈련(생활기능훈련)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시설내처우와의 일관성이 중시되어 이러한 각종의 처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프로그램에 의한 지속적 처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취업원조를 중심으로 사후처우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처우프로그램은 사후처우를 담당하는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민간기관에 위탁되어 실시되기도 한다. 이와 함께 병영캠프수료자에 의한 지원그룹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심리요법적인 그룹카운슬링을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종래의 연구에서는 접촉빈도의 증가에 의한 재범율의 감소가 일정 정도의 단계까지만에 효과가 없다고 하는 연구보고⁷⁸⁾가 있는 반면, 지도감독에 원조적인 프로그램을 가미하는 것에 의해 재범율이 저하되었다는 보고⁷⁹⁾도 있어 사후처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Castellano와 Plant는 병영캠프에서의 사후처우를 다음의 4가지의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⁸⁰⁾

- (1) 통상의 보호관찰과 동일한 처우로, 이러한 유형의 처우에서는 보호관찰관은 사회 자원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지만 시설내처우와의 연결은 희박해진다.
- (2) 소위 집중감독방식의 처우로, (1)의 보호관찰과 더불어 통상의 보호관찰의 밀도를 높이는 처우로 접촉횟수를 증가시키거나 야간외출을 금지하거나 약물사용 검사를 빈번하게 실시하는 등의 유형이다.
- (3) (2)와 함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약물문제처우 등을 실시하는 처우로, 병영캠프 수료자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을 임명함으로써 시설내처우와의 연계에 따른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된다.
- (4) 시설내처우와의 일체화된 처우를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처우프로그램도 약물문제처우만이 아니라 교과교육, 생활기능훈련(사회적응훈련), 그룹카운슬링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 시설내처우와 사후처우가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실시되기 위하여 시설내처우 직원과의 의사소통도 빈번하게 이루어져 실무만이 아니라 연수 등에서도 상호교류가 이루어진다.

78) Brame, R. and MacKenzie, D.L., "Shock Incarceration and Positive Adjustment During Community Supervision : A Multisite Evaluation", in MacKenzie, D.L. and Hebert, E.(eds), Correctional Boot Camp : A Tough Intermediate Sanction,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1995, pp.275-286.

79) Petersilia, J., and Turner, S., "Evaluating Intensive Supervision Probation/Parole : Results of a Nationwide Experiment", Research in Brief. Washington, D.C. :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1993.

80) Castellano, T.C. and Plant, M.S., "Boot Camp Aftercare Programming : Current Limits and Suggested Remedies", in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eds), Juvenile and Adult Boot Camps.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1996, pp.233-256.

제3기라고 불리는 병영캠프는 이러한 가운데 적어도 (3)으로 분류되는 사후처우의 조건을 충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치정세 및 예산의 관계에서 (1) 혹은 (2)로 분류되는 사후처우의 조건밖에 충족하지 못하는 프로그램도 적지 않다.

마. 대상자의 선정

병영캠프의 대상자선정은 각 주에 따라 상이하다. 그 중 하나의 유형은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된 자 가운데 교정당국이 직접 병영캠프대상자를 선정하는 유형이다. 병영캠프가 과잉수용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와 소위 사법제도의 확대⁸¹⁾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이 요청되지만, 병영캠프에서는 법원이 결정한 형기를 사실상 단축한다고 하는 행정에 의한 사법결정의 변경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선정에 법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주도 적지 않다. Georgia 주에서는 이들 양자를 병용하고 있으며, 보호관찰병영캠프(Probation Boot Camp)의 경우에는 재판관이 보호관찰처분의 특별준수사항(Special Condition)의 하나로 병영캠프에의 수용을 결정한다.⁸²⁾

한편, 가장 많이 채용되고 있는 병영캠프프로그램은 Illinois 주의 병영캠프시스템이다. Illinois 주의 경우에는 판결에 있어서 재판관이 병영캠프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교정국이 그 후보자의 적성에 대한 충분한 분류조사를 하여 병영캠프에 수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⁸³⁾

이와 같이 병영캠프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주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젊은 층으로서 흉악범이 아니며 시설수용경력이 없을 것을 그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

81) 병영캠프와 같은 새로운 시설내처우의 선택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종래까지라면 보호관찰 등의 사회내 처우를 받는 범죄자에 대해서 법원이 시설수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는 등 사법개입의 정도가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82) Keenan, John P., "Programming in Georgia's Boot Camp", in MacKenzie, D.L. and Hebert, E. (eds), Correctional Boot Camp : A Tough Intermediate Sanction,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1995, pp.93-106.

83) Karr, Steven P. and Jones, Robert J.,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Illinois's Incarceration Program", in MacKenzie, D.L. and Hebert, E. (eds), Correctional Boot Camp : A Tough Intermediate Sanction,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1995, pp.69-92.

다. Illinois 주의 경우에는 연령은 17~35세로, 형기가 5년 미만, 심신 모두 건강하며, 병영캠프에 수용된 경력이 없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폭력사건을 범하거나, 정신장애경력이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방의 경우에는 형기가 12~30개월로, 시설수용경력이 없고 보안상의 문제 및 의료상의 제한이 없으며, 병영캠프수용에 동의한 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⁸⁴⁾

바. 직원의 채용과 직원연수

(1) 직원의 채용

미국의 경우, 뉴욕 주 등의 일부를 제외하고 교정직원의 보수가 다른 직종과 비교하여 그다지 높지가 않으며, 또한 수형자의 폭동 등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교정직원의 정착율이 매우 낮다. 따라서 양질의 교정직원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병영캠프에서는 군대식의 분위기에서 직원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직원의 수용자에 대한 학대의 위험성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병영캠프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직원을 확보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대부분의 병영캠프에서는 직원의 채용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Zachariah는 병영캠프의 직원채용최저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⁸⁵⁾

- (1) 과거에 학대를 한 경력이 없을 것.
- (2) 현재 이혼·채무·정신질환 등의 문제가 없을 것.
- (3) 마약 및 알코올의존의 경향이 없을 것.
- (4) 과거의 직력에서 문제를 일으켜 당국에 책임을 전가한 적이 없을 것 등이다.

84) Klein-Saffran, Jody, "Bureau of Prison : Expanding inter,ediate sanctions though intensive confinement centers", in MacKenzie, D.L. and Hebert, E. (eds), Correctional Boot Camp : A Tough Intermediate Sanction,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1995, pp.107-118.

85) Zachariah, J.K., "An Overview of Boot Camp Goals, Components, and Results", in MacKenzie, D.L. and Hebert, E. (eds), Correctional Boot Camp : A Tough Intermediate Sanction,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1995, pp.17-38.

초기의 교정병영캠프의 경우에는 군대식의 훈련방법을 그대로 도입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직원의 채용에 있어서 군대경험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하지만 병영캠프가 교정처우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직원에게 필요로 하는 능력도 군대경험으로부터 대인관계능력, 즉 수형자와 적절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변화되었다. 현재에서는 병영캠프의 직원의 대부분은 교정직원 중의 희망자에서 선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병영캠프의 직원의 대부분은 교정직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연수를 수료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직원연수

병영캠프직원의 연수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교정직원연수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종래의 교정처우와 다른 병영캠프처우에 초점을 맞추어 병영캠프처우에 관계되는 직원전용의 연수를 중심으로 개관하고자 한다.

병영캠프용의 직원연수로서는 각 법역(Jurisdiction)별로 독자의 연수제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Fort McClellan Alabama의 병영캠프교관양성 코스(Rehabilitation Instructor's Course)⁸⁶⁾를 중심으로 그 연수의 방법, 목표, 내용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병영캠프직원에 대한 연수는 교정병영캠프의 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대부분은 직접 범죄자의 처우에 관여하는 훈련교관(Drill Instructor)⁸⁷⁾에 대한 코스가 중심이 되고 있다. 코스의 기간은 2~4주간으로, 병영캠프의 수형자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규율과 일과표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종래와는 상이한 교정처우인 병영캠프를 직접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교관 스스로가 병영캠프훈련의 효과를 체험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수에서는 먼저 교관이 수형자의 통솔자가 되어 직접 수형자를 지도

86) 본 코스는 미국육군에 소속하는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교정직원을 위한 연수코스이다. 연방정부의 약물대책용의 기금으로 운영되며 각 법역의 병영캠프로부터 파견된 직원의 연수를 무상으로 실시한다.

87) 생활지도 및 집단행동훈련 등을 담당하는 병영캠프 특유의 교정직원이며, 생활상의 모든 면에서 범죄자의 표본이 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미국에 있어서 다른 교정직원과는 달리 보안만이 아니라 다양한 면에서 수용자와 관계되는 부분이 많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교사이며 상담자일 것 등이 요구되며, 우리의 소년원의 교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는 것의 필요성 등이 강조된다. 즉, 교관은 수행자에 있어서 표본이 될 것 등이 강조된다. 연수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관과 연수생 간의 신뢰관계이며 연수전체가 연수생에게 달성감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연수생은 10명 단위로 반을 편성하여 반별로 지도교관이 책임으로서 부담하는데, 여기에서는 협동심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수에서 지도교관에게 요구되는 지도원칙으로서의 다음과 같은 항목이 설정되어 있다.⁸⁸⁾

- (1) 자신을 알고 항상 스스로를 발전시킨다.
- (2) 전문기능과 지식을 습득한다.
- (3)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 (4) 시기에 적합하고 적절한 판단을 한다.
- (5) 연수생의 표본이 된다.
- (6) 연수생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 (7) 연수생의 심신의 상태 및 능력을 정확히 파악한다.
- (8) 연수생에 대해 책임을 진다.
- (9) 연수생에게 연수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해시켜 과제를 달성하도록 지도한다.
- (10) 연수생의 능력에 따른 연수를 실시한다.
- (11) 상기의 원칙에 적합한 반 편성을 목적으로 한다.

(3) 연수과목

다음으로 병영캠프의 직원용 연수에서 사용되는 연수과목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술과 같이 연수기간은 2주간으로 총 9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수과목은 대략 다음의 6가지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88) Wertz, John F. and Griffith, Ronald D., "Staff Training : Foundation for success", in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eds), Juvenile and Adult Boot Camps,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1996, pp.257-266.

(1) 체육훈련지도(30시간)

체육훈련을 실습하면서 각종의 체육훈련의 지도방법을 연수한다.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체력훈련, 에어로빅, 체력검사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집단행동훈련(26시간)

군대에 있어서 기본적인 집단행동훈련, 호령, 그 외 점검의식 등을 연수한다.

(3) 리더십 훈련(12시간)

교관으로서 필요한 리더십, 수형자의 평가방법 등을 연수한다.

(4) 약물문제처우 및 스트레스 대책(7시간)

약물문제처우의 수강, 수형자의 심정에 대한 감수성훈련, 스트레스대책, 위기개입, 자살방지 등을 연수한다.

(5) 카운슬링(14시간)

카운슬링의 기본적인 기법,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방법 등을 연수한다.

(6) 교수법(9시간)

강의의 기법, 반 운영, 동기부여의 기법, 목표의 설정방법 등 기본적인 교수법을 연수한다.

이것이 병영캠프직원, 특히 훈련교관용의 기본연수프로그램이다. 이와 같은 기본 연수프로그램 이외에도 각 범역별로 독자의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도 많으며, 상기와 같은 과목과 더불어 보안사고발생시의 실행행사, 수형자의 권리의무관계, 구급법 등의 연수 등을 실시하기도 한다.

한편, 병영캠프 직원만이 아니라 미국의 교정시설에서의 근무는 세심한 주의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반면, 대우가 낮거나 상하의 의사소통이 불충분하여 적절하게 평가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직원의 사기를 유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 특히 병영캠프의 경우에는 수형자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일과표에 따라 생활하고 또한

솔선수범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보다 유능한 직원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직장 내의 의사소통, 연수기회의 확충 등의 중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3. 소년교정에 있어서 병영캠프의 처우

가. 소년병영캠프의 발전경위

지금까지 개관한 교정병영캠프처우는 주로 성인수형자를 대상으로 전개된 것으로 소년교정으로서의 병영캠프는 1990년 이전에 겨우 1개 시설이 Texas 주에 설치되어 있는 등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 소년병영캠프는 급속히 소년교정의 분야에 도입되었다. 1995년의 MacKenzie와 Rosay의 조사에 의하면⁸⁹⁾ 전미에 38개시설의 소년병영캠프가 있으며, 연간 약 10,500명의 소년이 병영캠프에서 처우되었다.

소년병영캠프프로그램(Juvenile Boot Camp Program)의 처우의 내용은 성인의 처우와 커다란 상이점이 없으나, 병영캠프에의 수용이 반드시 임의적인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또한 당연한 것이지만 처우프로그램도 대부분이 교육과 치료적인 것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적으로 1일 3.5시간의 집단 행동훈련과 체육훈련, 7시간 정도의 교육과 치료적인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시설에 따라서는 직업훈련도 이루어지고 있다.

병영캠프의 처우가 소년교정분야에 채용된 배경에는 성인병영캠프와 마찬가지로 과잉구금을 그 이유로 하고 있다. 1984년부터 1990년에 걸쳐서 미국의 소년교정시설의 수용자 수는 40만 명에서 57만 명으로 증가하는 등, 과잉수용에 따라 비행성에 따른 분류처우가 곤란해졌고, 결과적으로 비행성이 진행된 소년과 그렇지 않은 소년이 동일한 시설에 수용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비교적 비행성이 진행되지 않은 소년을 분리하여 소년의 비행성의 정도

89) MacKenzie, D.L. and Rosay, A.B., "Correctional Boot Camp for Juveniles", in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eds), *Juvenile and Adult Boot Camps*,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1996, pp.93-118.

에 따른 처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각 주가 적극적으로 소년병영캠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나. 초기의 소년병영캠프

1991년에 연방정부의 소년사법 및 비행방지대책본부(th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의 보조금을 받아 3곳의 시설에서 소년병영캠프가 개시되었다. 이것은 연방정부가 종래까지 성인을 대상을 진행한 병영캠프의 처우를 소년교정에까지 확대하고자 실험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3개의 시설은 Ohio 주, Alabama 주, Colorado 주에 설치되었는데, 각각의 시설은 郡 법원이 민간연구기관에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었고, 실험적인 시설이었기 때문에 수용 인원은 모두 50명 이하의 소규모의 형태였다.

수용기간은 90일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는 사정기간, 중간기에 해당하는 훈련기간, 석방준비기간, 그리고 6~9개월에 해당하는 보호관찰(임시퇴원)기간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시설에 수용되는 소년은 살인, 강도, 성범죄 등의 중대한 사건을 범하지 않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병영캠프처우를 실시할 수 있는 소년 중에서 선정되었다. 연령은 13세 이상 18세 이하로, 평균적으로는 15~16세 정도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본이 되는 것은 90일간의 시설내의 훈련으로, 군대식의 규율 아래, 집단행동훈련, 체육훈련, 교과교육, 카운슬링, 생활기능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처우가 실시된다. 또한 제복을 착용하며 집단행동을 중시하고 반체제로 편성되며, 반별로 상벌제도를 실시하며, 규율위반에 대해서는 단독실에서의 반성 등의 징벌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90일간의 시설내처우가 종료하면 6개월 정도의 집중보호관찰이 실시되고, 그 사이에는 보호관찰기관이 운영하는 일일센터 등의 시설에 통학하는 형태로 교과교육 및 카운슬링 등이 실시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설까지의 교통수단 및 시설에서의 식사는 시설로부터 제공된다.⁹⁰⁾

90) Felker, D.B. and Bourque, B.B., "The Development of Boot Camps in the Juvenile System : Implementation of the Three Demonstration Programs", in MacKenzie, D.L. and Hebert, E. (eds), Correctional Boot Camp : A Tough Intermediate Sanction,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1995, pp.143-158.

다. 병영캠프처우에 대한 비판과 효과측정

병영캠프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군대식의 혹독한 훈련을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의미에서 응보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범죄자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거나 개성을 무시한 집단관리적인 처우를 실시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일반시민 등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한편, 인권을 중시하는 자들로부터는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병영캠프에 대한 주요한 비판은 다음과 같다.

- (1) 병영캠프에서는 수형자가 절대복종할 것이 요구되며, 직원은 수형자를 질책하는 등의 지도방법 등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식은 결과적으로 수형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인 학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 (2) 병영캠프처우는 본래의 목적인 장기형의 대체형으로 기능하지 않고, 오히려 본래라면 보호관찰처분이 필요한 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은 사법관여의 확대로 연결될 위험성이 있다.
- (3) 병영캠프처우는 군인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방법이기 때문에 범죄자를 시민으로서 사회에 복귀시키는 방법으로는 부적절하며, 범죄자의 개선갱생에 효과가 없다.
- (4) 병영캠프의 효과는 단기적인 것으로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특별에 방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재범의 방지로는 연결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비판은 교정처우로서 병영캠프처우가 극복하여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병영캠프는 이러한 비판에 따라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전술한 바와 같이 제1기에서 제3기로 점차적으로 발전하였다. 예를 들어 비판 (1)에 대해서는 군대식을 운영을 경감하고 교육적이고 치료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한편, 개별적 카운슬링 및 직원연수를 활발히 실시하는 것으로 그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비판 (2)에 대해서는 병영캠프대상자를 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진 수형자 중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비판 (3)과 (4)는 병영캠프가 제2기에서 제3기로 발전함에 따라 중요한 요소에 포함되었다.

병영캠프는 엄격하게 관리된 환경 아래에서 범죄자의 심신 모두를 장악하여 자아

방위기능을 떨어트려 종래까지 갖고 있던 부정적인 자기이미지 및 행동유형을 버리고, 새롭게 군대에서 요구되는 자기이미지 및 행동유형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처우방법이다. 군대의 경우, 병영캠프수로 후에도 병영캠프와 마찬가지로의 환경에서 실무와 계속적인 훈련이 실시되지만 교정병영캠프의 경우에는 엄격히 관리된 상태에서 어떠한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에 무방비상태로 보내지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병영캠프에서 자아방위만이 제거되어 종래까지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부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3과 (4는 매우 적절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군대생활에서의 지속적인 훈련과정에 의미가 있는 병영 캠프처우가 이후의 지속성이 없이 일부만을 도출하여 응용하여도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하는 비판이 여기에 있다. 병영캠프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나타내지 않았던 이유의 대부분이 여기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병영캠프처우와 일체화된 지속적인 사후처우의 개발이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실시되고 있다.

병영캠프처우를 평가하는 경우, 다양한 자료가 활용되지만 특별예방적인 견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재범율(재입소율, 재체포율, 가석방취소율 등)이다. 이러한 연구 중에서 가장 타당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연구 중의 하나로 MacKenzie 등의 연구가 있다.⁹¹⁾ 이 연구는 전미의 병영캠프 프로그램 중에서 Florida, Georgia, Illinois, Oklahoma, Louisiana, New York, South Carolina, Texas 등의 8개의 주의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각각의 병영캠프수료자와 그들과 같은 조건을 가진 다른 일반의 교도소가석방자(대조군)의 예후를 비교한 것이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재범율에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다만 3가지의 프로그램에 있어서 병영캠프수료자의 재범률이 대조군과 비교하여 낮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3가지의 프로그램은 Illinois, Louisiana, New York 주의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3개주에 공통되는 내용은 비교적 처우기간이 길고, 개선갱생적인 프로그램이 충실하며, 그리고 보다 잘 정비된 사후처우가 존재하며, 시설내처우와 사후처우와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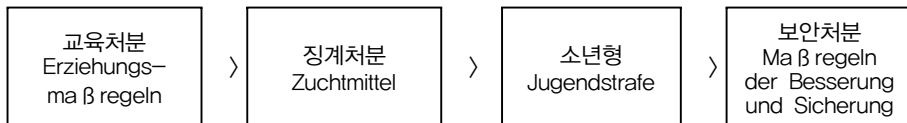
91) MacKenzie, D.L. and Rosay, A.B., "Correctional Boot Camp for Juveniles", in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eds), *Juvenile and Adult Boot Camps*,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1996, pp.93-118.

술한 비판 (3과 (4)를 실증적으로 밝힌 것이며 병영캠프처우에 있어서 지속적인 사후 처우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절 독일의 소년구금처분

1. 개관

독일 소년형법⁹²⁾의 소년구금처분(Jugendarrest)은 최저 2일에서 최고 4주간에 달하는 단기 자유박탈처분으로 경고처분(Verwarnung), 부담부과처분(Auflage)과 함께 징계처분(Zuchtmittel)의 카테고리에 속한다. 징계처분은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일 소년형법 제재체계상 교육처분과 소년(자유)형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⁹³⁾ 징계처분은 소년형의 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년이 범한 불법을 엄중히 직시시킬 필요가 있는 때에 적용된다(독일소년법원법 제13조 제1항).



중장기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소년형과 달리 소년구금은 단기개입을 통하여 범행소년에게 자기각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가 처했던 범행 촉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처분을 지향하고 있다(독일소년법원법 제90조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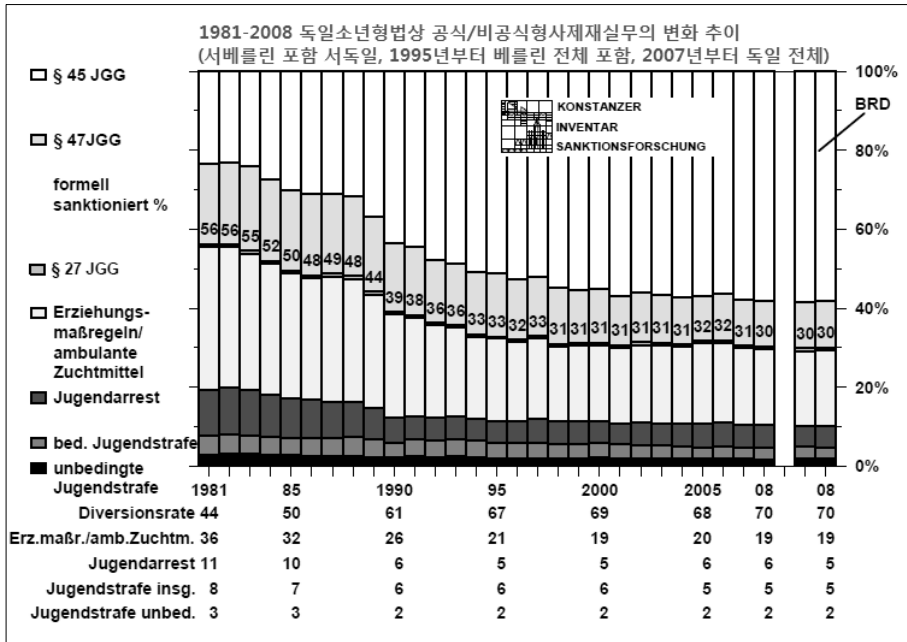
소년구금이 독일소년형법상 공식·비공식제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대까지 약 10~11%에 달하다가 1990년대 이래 약 5~6%에 머물고 있다.⁹⁴⁾

92) 독일 청소년법원법은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뿐 아니라 18세 이상 21세 미만의 청년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형법 및 청소년법원법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지만 여기서는 우리 법률 용어에 준하여 “청소년” 대신 “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93) 이에 대해 상세한 소년형사제재체계 도식은 Meier/Rössner/Schöch, Jugendstrafrecht, S. 116.

94) Wolfgang Heinz, Das strafrechtliche Sanktionensystem und die Sanktionspraxis in Deutschland 1882-2008, 2010, S. 105.

그림 4-3 독일 소년형법상 공식·비공식 형사제재 실무의 변화추이



2. 소년구금처분의 도입

독일의 소년구금처분은, 일반적으로 독일소년형법으로 일컬어지는 소년법원법⁹⁵⁾과는 별도로 1940년 10월 4일 제국국방위원회의 법규명령인 소년형법보완령⁹⁶⁾을 통하여 소년형법 실무에 보충적으로 도입되었다. 당시까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제도로서, 나치시대인 당시 제국청소년위원장의 훈령으로 이른바 “히틀러 유겐트”(Hitler-Jugend)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었던 “소년영창”(Jugenddienstarrest)을 그 효시로 보기도 한다.⁹⁷⁾ 이 때문에 그 유래와 관련하여 독일 소년구금이 “나치이데올로기”의 산물이라는 혐의가 제기되며, “Zuchtmittel”(훈육·징계수단), “Arrest”(구금, 영창)와 같

95) Jugendgerichtsgesetz(약칭 JGG) : 1923년 제정.

96) Verordnung zur Ergänzung des Jugendstrafrechts v. 4.10.1940, RGBl. I, S. 1336.

97) Eisenberg, JGG, § 13 Rn. 3.

은 권위주의적 용어에 당시의 시대정신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⁹⁸⁾

하지만 소년구금처분에 관한 발상은 실제로는 독일 소년형법인 소년법원법이 제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며, 샤프슈타인(Schaffstein)에 따르면 이는 철학자 요 사회교육학자인 뢰르스터(Friedrich Wilhelm Förster)가 스위스 일부 카논(주)의 사례를 참조하여 구상하였다. 뢰르스터는 1912년 제3회 독일소년법원대회(Jugendgerichtstag) 대표발제문에서 단기자유형에 대한 여러 대안들 가운데 하나로 소년구금처분을 제안하여 호응을 받았으며, 1917년 제4회 소년법원대회에서도 지지를 얻었다. 그리고 1923년 소년법원법 제정 당시에도 “각성구금”(Besinnungshaft)의 형태로 도입하자는 의견이 활발히 제기되었지만 소년구금처분의 입법화가 실현되지는 못하였다.⁹⁹⁾

하지만 1923년 소년법원법의 결함들이 지적되며 소년구금제도는 지속적으로 소년형법 개혁관련 논의의 소재가 되었다. 특히 단기자유형의 폐해, 집행유예 선고의 자의성과 집행유예형의 전과기록이 남는 문제, 소년에 대한 벌금형선고의 문제, 보호교육처분의 미흡한 적용과 효과 등의 문제가 지적되며, 아직 ‘비행소년이 아닌 소년(nicht verwahrloste Jugendliche)’으로서 경미·중간범죄 영역의 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대안제재 모색은 소년구금이라는 결론에 귀착되었다.¹⁰⁰⁾ 소년구금의 도입은 결국 나치이념에 기초한 소년법원법의 개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단 1940년 법규명령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나중에 1943년 개정 소년법원법에 통합·규정되었다. 이렇게 도입된 소년구금이 나치정권에 의해 도구화된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는 교육(Erziehung)과 처벌(Strafe)의 관계에 대한 소년형법적 고려에서 비롯된 점에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후 새 소년형법에서도 그 자리를 잡게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⁰¹⁾

애당초 소년구금은 주말구금(1-4주말)과 지속구금(1-4주)의 두 가지 형태로 도입되었으며, 나중에 주중, 즉 평일에도 집행될 수 있는 시간구금(24시간-48시간)이 추가되었다.¹⁰²⁾ 1943년 개정 소년법원법에서 현행과 같은 휴일구금(Freizeitarrrest), 단기구

98) Schaffstein, FS-Kaufmann 1986, S. 395.

99) Feltes, NSTZ 1993, S. 106.

100) 소년구금의 도입 역사에 대해 자세한 것은 Sieverts, 1961, S. 151 ff.

101) Schaffstein, FS-Kaufmann 1986, S. 394 f.

금(Kurzarrest), 장기구금(Dauerarrest)¹⁰³⁾의 형태로 명칭과 체계가 정비되었다. 아울러 지시사항(Weisung)이나 부담처분(Auflage) 불이행에 대한 백업처분 성격의 “불복구금”(Ungehorsamsarrest)이 1944년 1월 1일부로 추가적으로 도입되었다.¹⁰⁴⁾

3. 소년구금처분의 발전

가. 도입 초기 및 나치시대 소년구금

소년구금처분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는 소년법원법의 소년구금집행(Vollzug)에 관한 규정이 담고 있는데, 1943년 소년법원법 제66조 제1항¹⁰⁵⁾과 현행 1990년 소년법원법 제90조 제1항¹⁰⁶⁾이 각각 이에 해당한다. 현행 제90조 제1항 제1문의 내용은 약간 표현이 순화되었을 뿐 1943년 소년법원법 제66조 제1항과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소년구금의 집행은 소년의 명예심을 일깨우고, 자신이 범한 불법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함을 엄중히 각성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1940년에 소년구금 도입을 주도한, 당시 제국차관 프라이슬러(Freisler) 박사의 “충격구금”(쇼크구금) 이념이 여전히 배어있는 것으로 평가된다.¹⁰⁷⁾

소년구금의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그 법적 토대로서 소년법원법 제정과 더불어 법

102) Peters, ZStW 1941, S. 551 ff.

103) 지속구금(Dauerarrest)은 소년구금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장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구금과의 구별을 위하여 이를 “장기구금”이라 칭하기로 한다.

104) “불복구금”과 구별하여 원래의 소년구금처분들을 “선고구금”(Urteilsarrest)이라 칭하기도 한다. 예컨대 Feltes, NSZ 1993, S. 105 ff.

105) 1943년 제국소년법원법 제66조 제1항 : Der Vollzug des JA soll den Jugendlichen in seinem Ehrgefühl aufrütteln und ihm eindringlich zu Bewußtsein bringen, daß er für das von ihm begangene Unrecht einzustehen hat.

106) 현행 1990년 소년법원법 제90조 제1항 : Der Vollzug des Jugendarrestes soll das Ehrgefühl des Jugendlichen wecken und ihm eindringlich zum Bewußtsein bringen, daß er für das von ihm begangene Unrecht einzustehen hat. Der Vollzug des Jugendarrestes soll erzieherisch gestaltet werden. Er soll dem Jugendlichen helfen, die Schwierigkeiten zu bewältigen, die zur Begehung der Straftat beigetragen haben.

107) Sieverts, 1961, S. 156.

무부의 “소년법원법 적용지침”(Richtlinien zum RJGG), “소년구금집행령”(Jugendarrestvollzugsordnung), “소년구금업무규칙”(Jugendarrest- vollzugsordnung) 등 일련의 규칙과 지침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규정들에 기초하여 소년에게 “위화(위협)와 각성”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매우 엄격한 소년구금 집행방식을 취하였다. 각성의 필수조건으로서 우선 철저히 각방수용을 고수하였으며, 매4일마다 “물과 빵”만의 절식, 딱딱한 침대, 운동·독서금지 등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고행일”(strenge Tage)을 실시하였다. 또한 매일 매우 엄격한 기강과 스케줄을 유지하여, 예컨대 소년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교관에게 복종하며,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와 언행을 보여야 하였다. 소음유발이나 휘파람불기와 같은 행동은 금지되었다. 이러한 기강질서를 어기는 경우 서적반입금지, 감방소 등, 추가고행일 부과 등 각종 징계가 부과되었다.

작업(노동)과 소년구금소 소장과와의 면담은 소년구금의 “교육” 효과를 거두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하루 8시간의 작업은 양적·시간적으로 보아 소년구금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나,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작업도 독방에서 혼자 하는 작업이 부과되었다.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것은 구금시설 소장의 역할로, 소장이 모든 소년을 1:1로 면담하고 감독하며 모든 심사·결정권을 행사하였다.

나. 전후 소년구금의 발전과 대법원 소년구금판결(BGHSt 18, 207)

전후 1953년 소년법원법에서도 소년구금제도는 일부 나치이데올로기 냄새가 나는 용어를 순화한 것을 제외하면 1943년 소년법원법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단지 집행강도만 1966년 개정된 소년구금집행령을 통해 다소 완화되었으나 큰 변화는 없었다. 이러한 소년구금의 이해와 실무를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래에 소개하는 1963년 1월 9일 연방대법원판결(BGHSt 18, 207)이라 할 수 있다. 겔더른(Geldern) 소년참심법원이 소년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동시에 소년구금을 선고한 사안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겔더른 법원의 판결이 소년형에 대하여 지시사항과 부담처분만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 소년법원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였음을 선언하면서 소년형과 구별되는 소년구금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대법원의 기본입장을 밝히고 있다.

BGHSt 18, 207 (209) : 소년구금은 그 본질상 독창적 성격의 징계수단이다. 소년구금은 형벌의 요소와 교육처분의 요소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즉 (응보)속죄적 및 교육적 성격의 단기자유박탈인 것이다. 형벌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상 소년구금은 행한 불법에 대한 응대이어야 하되, 소년에 영향을 미쳐 개선에도 기여해야 하며, 나아가 그 엄격한 집행에 기초하여 위화(위협)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범죄자를 속죄시켜 사회에 복귀시켜야 하는 소년형으로부터 소년구금을 차별화하는 것은 소년구금은 “엄중한 경고이긴 하지만 원칙상 행한 불법에 대한 완전한 속죄는 아닌, 보다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엄한 질책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소년구금의 목적설정은 소년형과 상이하며, 특히 덜 광범위하다 할 것이다. 교육의 목표가 초점인 이상 이 목표는 명예심을 일깨우고 미래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의미하는 단기적이고 강한 개입을 통하여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년구금은 형벌과는 반대로 포괄적인 교육과정의 실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회성과 단기성을 통하여 작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엄중하고 폐부에 닿는 질서회복에의 호소를 통하여 소년이 일회적으로 내디딘 잘못된 길을 계속 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다. 1976년 소년구금집행령 및 1990년 개정소년법원법에 따른 현행 소년구금처분

독일연방법무부의 용역으로 이루어진 “소년구금의 형사정책적 및 형사교육적 목적 부합성에 관한 연구”(1974년)에서 아이젠하르트(Eisenhardt)는 나치시대 소년구금집행령과 다를 바 없는 1966년 소년구금집행령을 신랄하게 비판하였으며, 그 결과 1976년 소년구금집행령의 전면개정이 이루어졌다. 새 소년구금집행령은 기존의 “고립과 엄격의 집행”과 반대로 소년구금의 교육지향적 및 교육지원적 집행과 상호소통을 지향하고 있다. 피구금소년들은 단지 야간에만 독방 수용되며 주간에는 작업, 수강, 여가 등의 활동에 있어서 공동생활을 한다. “고행일”은 폐지되었으며, 소장과의 1:1면담은 개별적인 사회복지적 지원, 그룹활동, 전문인력을 통한 수업에 의해 대체되었다. 작업과 더불어 수업,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여가활용수련 등 구금기간을 활용하는 방안이 다양하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1976년 개정 소년구금집행령은 이전보다 더 심각한 문제그룹에까지 확대된 소년구금대상자들의 사회적 위험상황을 고려

한 측면이 있다.¹⁰⁸⁾

하지만 소년구금, 특히 휴일구금 및 단기구금의 실제 구금현실을 살펴보면, 여전히 “short-sharp-shock”의 요소들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단순구금, 공동수감이나 여가활동으로부터의 배제, 소장과의 면담기회 미부여 등이 그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며, 장기구금의 경우 외부접촉기회를 극히 제한적으로 부여하였다. 그 결과 소년구금은 “컨셉이 없는 억압적 도구”라는 비판이 가해지기도 하였다.¹⁰⁹⁾

1976년 개정 소년구금집행령을 통해 시작된 소년구금의 “교육처분화” 작업은 1990년 제1차 소년법원법개정법률¹¹⁰⁾을 통해 내용적으로 진전을 이루었는데, 구체적으로 1990년 소년법원법 제90조 제1항에 소년구금의 집행과 관련하여 제2-3문이 추가되었다.

(소년법원법 제90조 제1항)

제1문 : 소년구금의 집행은 소년의 명예심을 일깨우고, 자신이 범한 불법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함을 엄중히 각성시켜야 한다(기존의 제1항 본문 전체).

제2문 : 소년구금의 집행은 교육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3문 : 소년구금의 집행은 범행에 빠지게 만든 곤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소년을 지원하여야 한다.

새롭게 추가된 제2-3문만을 놓고 본다면 소년구금의 목표설정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해에 기초하여 예컨대 존넨(Sonnen) 교수는 소년구금집행이 이제 교육지향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면 소년구금에 더 이상 “short-sharp-shock”의 요소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년구금의 집행에 관한 소년법원법 제90조는 변경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조문에 단지 제2-3문이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이로써 연방대법원판결(BGHSt 18, 207)의 입장을 소년법원법의 규정에 담아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단기의 위협·충격구금의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소년구금집행의 교육지향성을 규정함으로써 불

108) Möller, 2002, S. 26.

109) 이에 대한 일부 실증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은 Möller, 2002, S. 27 ff.

110) 1. JGGÄndG vom 30. 8. 1990 (BGBl. I S. 1835 ff.)

명확한 법률적 상황을 초래하였다.¹¹¹⁾ 그리고 이는 소년구금집행실무에 그대로 반영되어 독일 내 소년구금집행이 통일적이지 못하고 각양각색의 모습을 보이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즉, 일부지역의 소년구금시설에서는 사회교육적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위협·충격구금의 수준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¹¹²⁾

소년구금의 이론과 실무 모든 면에서 소년구금제재의 목적으로 규정된 위협·충격, 각성, 교육 목적 사이의 모순이 노정된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이 목적들이 소년구금을 통하여 모두 동시에 실현될 수는 없으며,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방식의 양자택일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지향적 소년구금에서는 위협·충격을 위한 억압적 집행 또는 각성을 위한 고립집행요소 등을 배척하게 되며, 그 역 또한 성립한다.¹¹³⁾

4. 현행 소년법원법의 소년구금제도

가. 개요

독일소년법원법 제16조 제1항은 세 가지 유형의 소년구금(휴일구금, 단기구금, 장기구금)을 규정하고 있다. 소년구금 가운데 각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림 4-4〉에서와 같다.¹¹⁴⁾ 휴일구금과 단기구금은 대체로 과실로 인한 경죄(Vergehen)와 비교적 책임이 가볍고 경미한 고의의 경죄에 대하여 부과되는 반면, 장기구금은 중간 정도의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¹¹⁵⁾

111) 펠테스는 소년구금의 위협, 각성, 교육의 목적을 둘러싼 모순이 더 심화되었다고 평가한다(Feltes, 1993, S.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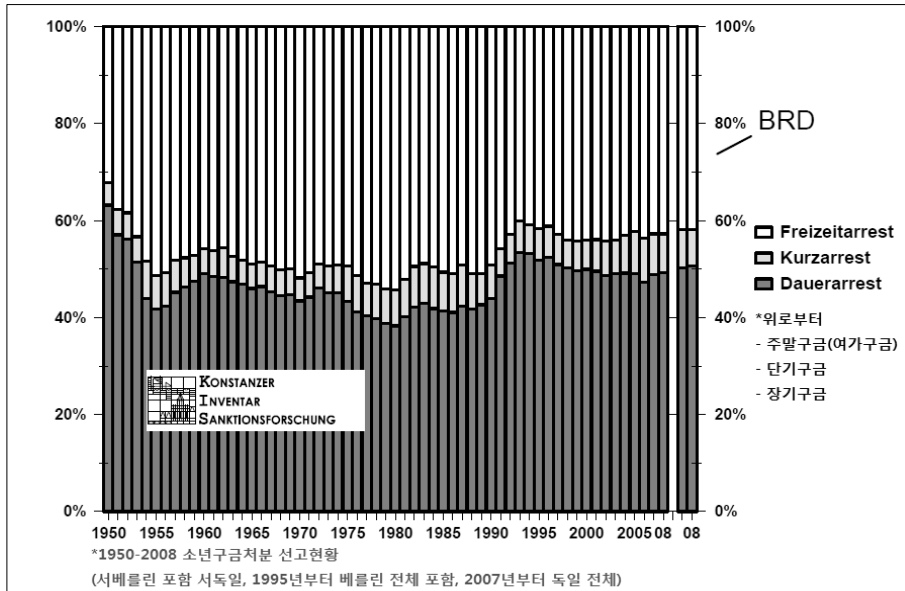
112)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Möller, 2002, S. 30 ff.

113)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Möller, 2002, S. 36 ff.

114) Heinz, 2010, S. 118.

115) Eisenberg, 2010, § 16 Rn. 30.

그림 4-4 소년구금처분 선고현황



장기구금과 이를 초과하는 단기구금은 소년구금소(Jugendarrest- anstalten)에서 집행되어야 하며, 휴일구금과 이를 이하의 단기구금은 휴일구금공간(Freizeitarresträume)에서 집행된다. 또 남녀구별 구금하며, 소년구금소는 10명 이상 60명 이하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다(소년구금집행령 제1조). 소년구금처분에 대한 확정판결이 난 후 원칙적으로 즉시 집행하여야 한다(소년구금집행령 제4조). 집행이 지체될 경우 소년에게 자신이 행한 범죄와 형사제재와의 관련성을 분명히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년구금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소년형 법적 신속성원칙의 준수이다.¹¹⁶⁾

나. 휴일구금(Freizeitarrest)

휴일구금(Freizeitarrest)은 소년의 매주 휴일에 대해 선고되며, 1회 또는 2회(즉, 한 주간 또는 두 주간)의 휴일에 대해 부과될 수 있다(독일소년법원법 제16조 제2

116) Müller-Piepenkötter/Kubink, 2008, S. 179.

항). 동법 제16조 제3항 제2문의 해석상 매주 휴일, 즉 1회 휴일은 최장 만 이틀, 즉 48시간에 달할 수 있다. 소년구금집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휴일구금은 통상 토요일 8시에 시작되고 월요일 7시에 종료된다. 소년이 토요일 오전에 수업이 있거나 출근해야 하는 경우 오후 3시에 시작되고, 월요일에 학교출석 또는 직장출근에 지장이 있는 경우 일요일 저녁에 조기종료할 수 있다. 휴일구금의 취지는 피구금소년에게 구금으로 인한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곤경을 덜고자 하는 것이다. 근무시간이나 학교수업시간을 빠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 단기구금(Kurzarrest)

단기구금(Kurzarrest)은 독자적인 구금형태가 아니며 휴일구금에 대한 대체구금으로서, 교육적인 이유에서 휴일구금이 합목적적이지 못하거나 부과되기 힘든 사례에 적용된다. 휴일구금의 단기구금 전환은 이로 인해 직장이나 (직업)교육이 방해받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독일소년법원법 제16조 제3항). 단기구금은 휴가나 방학 또는 실업상태의 기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실제로 대부분의 단기구금은 실업상태의 청소년에게 부과된다.¹¹⁷⁾ 2회 휴일구금에 상응하는 4일이 단기구금의 상한에 해당한다.

라. 장기구금(Dauerarrest)

장기구금(Dauerarrest)은 최저 1주일에서 최고 4주일에 달하며 날짜(일) 및 주일 단위로 부과된다(독일소년법원법 제16조 제4항). 구금기간은 범죄행위와 책임의 경중, 나아가 소년의 기존 “범죄경력” 유무에 따라 좌우된다. 구금이 길수록 더 효과적인 것은 아니며, 여러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2주 이상의 소년구금은 부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그러한 장기구금의 경우 일정기간 소년구금 집행 후 집행면제가 바람직할 수 있다고 한다.¹¹⁸⁾

117) Meier/Rössner/Schöch, 2007, S. 212.

118)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Meier/Rössner/Schöch, 2007, S. 212.

마. 소년구금의 집행 현황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0년 개정 소년법원법 제90조 제1항에 기초하여 소년구금의 목표설정이 규범적으로는 충격구금으로부터 교육처분으로 중심이동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여 개정 소년구금집행령 또한 제10조 “교육과제”와 관련하여, 제2항에서 특히 2일 이상의 단기구금 및 장기구금의 경우 구금소장의 훈시와 더불어 개별적 사회적응지원, 그룹작업, 수업 등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소년구금집행령 제26조는 공영 또는 민영 청소년지원단체와 연계하여 퇴소한 소년들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규범적 프로그램과 요청은 실무에서 아직 원만하게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¹¹⁹⁾

소년구금 종료 4~5년 후에 조사되는 재범률은 전체적으로 약 60~70%에 달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애당초 소년구금에 부적절한 대상자의 경우 소년구금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던 소년들에 비해 10~20%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¹²⁰⁾ 이러한 비교적 실망스런 목표실현과 제기되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소년구금은 독일 소년형사사법실무에서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소년법원 판사들의 판단은 다이버전, 지시사항(Weisungen) 및 부담명령(Auflagen) 부과 등을 거친 후 마지막으로 제재의 피라미드가 소년형에 도달하기 전 또 하나의 중간 기점으로 소년구금처분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¹²¹⁾

5. 소년구금처분을 둘러싼 논란과 논의

소년구금은 독일에서 지난 30여년 이상 청소년형사정책적 논란의 초점이 되어 왔다. 그 가운데 실무계의 입장은, 법관들의 소년구금에 대한 판단재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 연방대법원도 확인한 바와 같이 현행법에 따라서는 금지되어 있는 - 소년

119) Streng, 2008, S. 201.

120) Streng, 2008, S. 202.

121) Meier/Rössner/Schöch, 2007, S. 211.

형과 결부된 이른바 “경고(충격)구금”(Warnschussarrest, E-instiegsarrest)을 도입하자는 견해로¹²²⁾, 이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법안이 제출된 바 있다.¹²³⁾ 그 논거로 주장되는 것은 소년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되는 소년구금은 소년형의 집행유예를 엄중히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적으로 의미 있고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년구금과정에서 비로소 피구금소년에 대한 범죄예측과 관련한 긍정적 판단이 가능하여 애당초 집행유예가 고려되지 않았던 사안에서도 소년구금으로 인해 소년형 집행유예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소년형 집행유예를 엄중히 수용하도록 하는 데는 이미 충분히 광범위한 지시사항과 부담명령의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있으며, 경고구금이 도입될 경우 소년법원들이 기존에는 소년구금 없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소년형)집행유예형만을 선고하여 성공적이었던 사안에 대해 집행유예형과 소년구금을 병과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척점에 선 다른 견해에 따르면, 소년구금은 득보다 실이 더 많으며, 일반형법에서도 1개월 미만의 단기자유형 폐지가 전혀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을 논거로 하여 소년구금의 전격적 폐지를 주장한다.¹²⁴⁾ 2002년 제64회 독일법률가대회(DJT)에서 독일소년형법을 주제로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알브레히트(H.-J. Albrecht) 교수 역시 감시와 보호를 위한 사회내처우적 제재들의 확대를 전제로 자유박탈이 없는 제재와 자유형인 소년형과의 제재간극을 메우기 위한 목적으로 소년구금이 존재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¹²⁵⁾

독일소년사법지원협회(DVJJ)의 제2차 소년형법개정위원회(2. Jugends- trafrechtsreformkommission)는 휴일구금과 단기구금만 폐지하고, 장기구금은 최장 2주간으로 하되 “이를 교육처분이라고 과대평가하지는 말고” 기존보다 더 교육적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불복구금은 “대체구금”(Ersatzarrest)으로 개칭

122) 최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법무부장관 뮐러-피펜코터(Müller-Piepenkötter)는 쿠빈크(Kubink) 교수의 공동발표한 논문에서 이러한 견해를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 : Müller-Piepenkötter/Kubink, 2008, S. 176 ff.

123) 자세한 것은 Meier/Rössner/Schöch, 2007, S. 217.

124) DVJJ-Kommission, DVJJ-Journal 1992, 4 ff., 34; Albrecht, § 27 IV 2 b).

125) 하지만 이른바 “불복구금”(Ungehorsamsarrest, Erzwingungsarrest)은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자유박탈이 없는 제재의 경우 불복구금마저 없으면 이 제재들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Albrecht, H.-J., 2002, 148).

하여 구금을 통해 본래의 제재를 충족시켰음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¹²⁶⁾ 그러나 2002년 제64회 독일법률가대회(DJT)는 기존의 세 가지 유형의 소년 구금제도의 유지를 지지하고, 불복구금의 대체구금 개칭을 찬성하였다.¹²⁷⁾

반면 독일소년사법지원협회(DVJJ)의 “소년구금/시설내사회훈련 전문위원회”(Fachkommission Jugendarrest/Stationäres soziales Training)는 - 소년구금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의는 일단 뒤로 하고 - 2009년 2월 의결한 “소년구금집행 최소기준”(Mindeststandards zum Jugendarrestvollzug)¹²⁸⁾에서 나치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소년 구금(Arrest)이란 명칭 대신에 “시설내 사회훈련”(Stationäres soziales Training)으로 개칭할 것을 제안하며, 소년구금에 대한 “보충성원칙” 등 20개항으로 된 소년구금집행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2010년 9월 11~14일 개최된 제28회 독일소년법원대회(28. Deutschen Jugendgerichtstag)는 이 “소년구금집행 최소기준”을 지지하였으며, 소년구금과 관련하여 추가 의견으로 징벌적인 구금집행을 피하고 사회훈련코스의 시행과 같은 충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년구금집행의 “교육” 과제를 강화하도록 권고하였다. 마약중독자, 언어곤란자, 성인이 다된 청년을 대상으로 소년구금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 입장을 피력하고, 정부의 “경고·충격구금” 도입 입장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¹²⁹⁾

126) DVJJ-Journal, 2002, S. 227 ff., 252 ff.

127) DJT-Beschlüsse, NJW 2002, 3078.

128) DVJJ, 2009, S. 275 ff.

129) DVJJ: 28. Deutscher Jugendgerichtstag, Ergebnisse der Beratungen in den Arbeitskreisen (<http://www.dvjj.de/download.php?id=1360>: 검색일: 2010년10월5일).

6. 베를린소년구금소의 소년구금집행 사례

가. 베를린소년구금소 시설 및 운용 개요

베를린소년구금소(Jugendarrestanstalt Berlin)¹³⁰⁾ 소장은 베를린 티어가르텐 구법원(Amtsgericht Tiergarten) 소년법원판사가 담당하며, 소장은 소년구금집행과 관련하여 총책임을 진다. 베를린소년구금소의 종사인력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4-9 종사인력 현황(2009년 9월 1일 기준)

직책	인원(명)
소년구금소장	1
사무국장	1
교정관	19 (남/여:11/8)
보조교정관	3 (남/여:2/1)
사회복지사	2 (남/여:1/1)
교사	1 (여교사)
행정업무담당	2 (남/여:1/1)
관리기술자	1
총계	30

베를린주의 집행계획에 따르면 베를린소년구금소에는 소년구금 선고를 받은 21세 미만의 남녀 청소년들이 수용된다. 단기구금 및 장기구금의 입소는 월요일 오전 9-11시 사이에 이루어지며, 휴일구금의 경우 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입소가 이루어진다. 학생이나 직업 청소년의 경우에도 휴일구금과 마찬가지로 금요일에 입소가 이루어지며, 외출의 형태로 수업이나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

피구금소년들은 원칙적으로 각방에 개별 수용되며, 규칙적인 외출을 하는 소년들의 경우 제1구금소에, 그렇지 않은 소년들은 제2구금소에 수용된다. 여자청소년들은 구분 없이 모두 제1구금소 내에 있는 소녀구금실(Mädchenstation)에 수용된다.

130) 이하의 내용은 베를린소년구금소의 웹사이트에 소개된 내용에 바탕을 둔 것이어서 정보가 다소 제한적이다(<http://www.berlin.de/sen/justiz/justizvollzug/jaa/>).

나. 소년구금 처우프로그램

사회복지서비스의 보호·교육

사회복지서비스(Sozialdienst)에 기초한 소년구금소에서의 보호·교육 작업의 법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년법원법 제90조이다. 이에 기초하여 베를린소년구금소는 교육지향적인 소년구금을 집행하고, 피구금소년의 개인적 및 사회적 성숙을 촉진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교육목적을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제공되는데, 그 가운데 「상담」은 제한적인 소년구금기간을 활용하여 소년이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을 풀어헤쳐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들이 제대로 개관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스스로가 처한 상황들에 대하여 대화가 이루어지며, 적절한 상담시설에 대해서도 얘기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년구금소는 관할 소년사법지원(Jugendgerichtshilfe), 소년보호관찰(Jugendbewährungshilfe)를 비롯하여 “사회봉사” 담당기관, 학교, 직업훈련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다른 한편 소년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소년의 범행과 범행경력과 관련하여 각성과 반성의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러한 면담을 통하여 가능하면 소년구금기간부터 부과된 지시사항이나 부담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상담 및 동기부여 면담을 통하여, 여가작업이 이행될 수 있는지, 폭력극복세미나 자리가 비는지, 보호관찰사와의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소년구금의 회피를 위한 대안 모색

사회봉사명령을 불이행하거나 범칙금을 미납하여 이른바 “불복구금”으로 소년구금에 처해진 소년을 위해서는 미리 사회복지사와의 접촉이 이루어져 진정성을 가지고 뒤늦게라도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경우 소년구금을 회피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관할 소년사법지원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구금생활에 대한 “단계모델”의 적용

베를린소년구금소는 보호·동기부여 모델로서 이른바 “단계모델”을 적용하고 있는

데 광범위한 카탈로그를 만들어 각 피구금소년의 구금기간 동안의 행태를 기록하고 평점을 부여한 후 소년과 함께 이에 대해 함께 논평한다. 소년은 예컨대 규칙을 지키고 질서와 청결에 유의하며 동료들과의 무난한 생활을 하는 등 구금목적의 실현에 기여할 경우 구금기간 동안 차별화된 자유시간 등 여러 혜택이 부여되는 3단계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피구금소년은 자신의 노력으로 외출허가, 심지어 조기출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된다. 반대로 잘못하여 벌점을 받을 경우 단계가 내려갈 수도 있다.

여가활동

여가시간에 피구금소년들은 감독 하에 비교적 자유롭게 자기 숙소에서 움직이거나 날씨가 좋을 경우 구금소 내 바깥에서 움직일 수 있으며, 여가시간은 각자 스스로 알아서 활용할 수 있다.

구금소 내에는 탁구대, 손축구게임기, 텔레비전이 비치되어 있으며, 피구금소년들은 종종 카드놀이나 서양장기놀이를 하기도 한다. 구금소 운동장에서는 배구, 농구, 미니축구를 할 수 있으며, 테니스장도 있다.

그룹활동

소년구금기간 동안 소년들에게는 구금 이후에도 의미 있게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베를린소년구금소는 이러한 취지에서 여러 그룹활동을 장려하며 일부는 교정관들에 의해 제공된다. 체육활동, 피트니스활동은 자격증을 가진 4명의 직원이 지원하며, 긴급구조교육자격증을 가진 1명의 직원은 소년들에게 긴급구조법을 교육한다.

베를린소년구금소의 중요한 그룹활동 중 하나는 4일간의 사회(적응)훈련코스(Sozialtrainingskurs)이다. 사회훈련코스를 통해서 소년들이 첫 번째 구금인 것을 전제로 하여 소년들을 범죄에 빠지게 한 원인과 이유에 대해 숙고·각성하고 생각을 바꾸도록 하는 훈련이 이루어진다.

추가적으로 외부전문인력(예컨대 미술교사를 통한 회화코스, 교통협회를 통한 교통교육코스 등)을 투입하여 코스를 갖기도 하며,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룹체

협활동으로 박물관, 역사관, 스포츠관람 등도 가능하다.

작업과 직업훈련 : 모듈화된 역량강화훈련

“모듈화된 역량강화훈련”(MKT : Modulares Kompetenztraining)은 피구금소년들로 하여금 단계적으로 소년구금에 적응하며 자신의 삶과 범죄를 통해 나타난 결함을 숙고·각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각 단계별로 하나의 작업과 테마 모듈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동기를 부여받게 되며 사회적으로 요청되는 역량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욕을 갖게 된다.

이를 위해 베를린소년구금소는 이른바 “노동치료작업실”(BTW : Beschäftigungs-therapeutisches Werkstatt)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7명의 소년이 작업할 수 있다. 기초적으로는 목재 및 유리를 다루는 기술을 전수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수공예기술도 가르친다. 수작업 기술의 전수와 더불어 “관계와 접촉 작업”을 통하여 교사와 소년들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요청되는 규범과 가치들이 전달되도록 한다.

베를린소년구금소의 노동치료작업실은 2명의 교정관에 의해 공동책임하에 운영된다. 이들은 필요한 기술과 교육을 소지하여야 하며, 전문교육 등을 통하여 이를 업그레이드한다. 노동치료작업실에는 최소한 5일 이상 소년구금에 처해진 소년들이 받아들여지며, 이는 베를린구금소의 “단계모델”과 연계되어 평가가 반영된다.

제4절 8호처분과의 차이점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일본의 특수단기처우제도, 미국의 병영캠프, 독일의 소년단기구금제도에 대해서 개관하였다. 세 국가의 제도 모두 청소년으로서 비행이 상습화되어 있지 않은 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특수단기처우는 개방적 처우를 근간으로 입원초기에는 폐쇄적 처우를 하지만 이후에는 모든 대상자에 대해서 개방처우를 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도 일반적인 소년원에서 실시하는 원내교육과 원외위촉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대상자의 자주성과 자율성에 근거한 처우프로그램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의 병영캠프는 군대식의 집단행동훈련을 기초로 엄격한 규율이 요구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병영캠프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집단행동훈련, 체육훈련, 교과교육, 카운슬링, 생활기능훈련 등으로 타율적인 방식에 의한 처우프로그램이 그 중심에 있다. 독일의 소년구금제도도 소년형과 교육처분의 중간단계의 처우로서 비행이 상습화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 구금을 통해 충격구금의 효과를 누리하고자 하면서 개별적 사회적응훈련, 그룹작업, 수업활동 등을 통해 교육효과도 함께 얻고자 한다.

일본, 미국, 독일의 단기구금 제도는 비행이 상습화되지 않은 자에 대한 재비행의 억제라는 공통적인 목적으로 갖고 있으나 그 접근방식에는 커다란 상이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의 특수단기처우제도는 비행성이 진행되지 않은 소년을 일정기간 소년원에 수용하거나 보호자의 보호 아래에서 통근하게 함으로써 소년의 비행기회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따라 소년 스스로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소년의 비행성을 경감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와 달리 미국의 병영캠프는 엄격하게 관리된 환경 아래에서 비행소년의 심신 모두를 장악하여 자기방위기능을 저하시켜 종래까지 갖고 있던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와 행동유형을 버리고, 새롭게 요구되는 자기이미지 및 행동유형을 습득하도록 하는 처우방법으로 소위 구금 및 훈련 등의 충격에 의한 재비행의 억제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독일의 단기구금은 단기개입을 통해 범죄소년에게 자기 각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가 처했던 범죄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8호처분은 비행성이 그다지 진행되지 않은 소년의 비행성의 경감 및 재비행의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본과 미국, 독일의 제도와 동일하다. 하지만 시설에의 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프로그램에는 개방적인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본과 미국, 독일의 제도와는 다른 독자적인 형태의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수용경험이 없는 대상소년에게 단기간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비행행위의 심각성(충격)을 느끼게 하며, 이와 함께 단기 집중식 교육을 통하여 자기개선의 의지를 높임으로써 재비행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고자 한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각국의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일본의 경우 1991년 제도 시행 이후 그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 요건의 구체성의 결여이다. 비행이 상습화되어 있지 않을 것, 현저한 성격의 편중 및 심신의 장애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이 매우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대상자의 선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교육프로그램의 전문성의 결여이다. 원외위축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특수단기처우에서는 그 중심에 원외위축직업보도교육이 있으나 현재의 비행소년의 특징은 학생소년의 증가로 더 이상 원외위축직업보도교육으로는 그 실효성의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특수단기처우를 위한 개별적인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특수단기처우제도의 시행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도 제도의 전문성과 활용도가 낮아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병영캠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병영캠프에서는 대상자의 절대복종이 요구되며, 직원은 대상자를 질책하는 등의 지도방식이 일반적이어서 이러한 방식은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인 확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타율적인 지도에 따른 효과는 단기적인 것으로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개선갱생의 효과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독일의 소년구금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첫째, 독일의 소년구금에 대하여 쇼크구금적 성격에서 탈피하여 교육적 성격의 구금으로 변화하고자 하나, 실제 구금의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쇼크구금의 성격을 버리지 못한 측면이 많다. 둘째, 소년구금집행령에서 공영 또는 민영 청소년단지원단체와 연계하여 퇴원한 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프로그램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본, 미국, 독일 등 외국의 단기구금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8호처분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8호처분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8호처분은 초기 비행청소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소년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8호처분의 대상선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¹³¹⁾ 8호처분의 목적이 쇼크구금을 통한 집중적인 비행예방프로

131) 현재 8호 처분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법무부의 분류심사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즉, (1)수용경

그램의 실시라고 한다면 일본의 특수단기처우제도의 문제점에서 지적되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에 적합한 구체적인 대상소년을 일정 정도 명확히 하여야 한다.¹³²⁾

둘째, 현재 8호처분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대덕·청주소년원의 경우 9호·10호 처분을 받은 소년과 함께 수용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8호 처분자에 대한 대외적 인식과 처우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기의 교육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전문기관으로의 운영이 요청된다. 현재와 같은 9호·10호 처분의 소년들과 동일한 장소에서의 수용과 교육의 실시는 8호처분의 소년들에 대한 악풍감염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8호·9호처분 소년들에 대해서는 처분의 상이함에 따른 심리적인 박탈감을 안겨줄 가능성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8호처분 대상자만을 위한 개방적 시설의 설치가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8호처분은 종래의 소년원 송치처분과 비교하여 교육적인 기능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8호처분 대상소년에 대해 실시되는 교육프로그램이 과연 제정 당시에 의도한 교육적 기능에 충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독일과 일본에서도 단기구금에 대하여 다양한 교육적 프로그램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시설내처우라는 한계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예를 볼 수 있다. 8호처분의 목적은 쇼크구금을 통하여 집중적인 비행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단기간에 비행억제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종래의 수감 명령 내지 소년원에서 일반적으로 실시되고 있었던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중에 약물 등의 치료강의, 준법운전강의, 성비행, 심리치료 등은 수감명령대상자에 대해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과 유사하며¹³³⁾, 또한 심리치료,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미술치료, 작업요법,

함(심사원 제외)이 없는 자 중, ①비행력은 없으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LSI-R 종합점수 : 6~20), ② 위험성은 낮으나 기소유예 또는 보호처분(사회내처우) 등 비행력이 2~3회 있는 경우, (2)사회내처우와 시설내처우 간 연계를 통해 경각심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4)상당 조사시 교육태도가 매우 불량한 경우, (5)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경미한 비행을 반복하는 경우 등이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개정소년법에 따른 분류심사 기준(안), 2008, 24-25면).

132) 강경래, 소년원 처우의 실효성 확보방안-8호 처분과 일본의 특수단기처우와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14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0, 56면

체험활동 등은 현재 일반적으로 소년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기본교육으로서의 인성교육(심리치료, 종교지도, 가족관계회복훈련/국토순례, 병영체험, 보이스카우트 훈련), 특수교육(작업요법, 미술요법, 사회기술훈련), 생활지도(레크레이션, 소풍, 유적지 답사, 집단게임)와 상이함을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독창성의 미비는 결과적으로 대상자의 선정과 관련된 기준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것과도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처분대상에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촉법·우범소년 모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등 다양한 대상자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비행내용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연령에 따른 개별적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8호처분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실시를 현재와 같이 반드시 소년원에 수용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대부분의 교육프로그램이 강의 위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특정의 소년들에 대해서 일본의 특수단기처우의 실시에서와 같이 대상자가 자택에서 생활하면서 집중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개월간의 소년원송치에 적합하지 않은 소년(시설수용에 문제가 있는 등)들에 대한 특별한 처우로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8호처분의 효과로 구금에 의한 비행억지력도 중요한 요소에 포함되므로 이를 위하여 일본의 귀성위촉이나 독일의 주말구금과 같이 주말을 이용하여 소년원에 수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8호처분은 보호처분의 내용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도 중의 하나로 실효성과 관련하여 기대가 높은 반면 우려 또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8호처분의 효과와 관련된 조사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즉, 2008년도의 8호처분자 204명에 대한 재비행 조사에 따르면 단지 17명(8.3%)이 재비행을 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율 12.2%보다 낮은 수치이며, 또한 2007년도 소년범 중 6개월 이내의 재범율 9.6%와 비교하여도 낮은 수치로¹³⁴⁾ 현재로서는 8호처분의 재비행억지 효과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133) 수감명령 강의 내용의 일반적 유형으로서는 (1)약물·마약·알코올 치료강의, (2)준법운전강의, (3)정신·심리치료강의, (4)성폭력치료강의 등이다. 법원공보, 제1033호, 234면.

134)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9; 법무부, 보호관찰통계연보, 2009.

실시기간이 짧고 재범자의 사례 수 또한 적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곤란하며, 또한 다른 보호처분대상자와는 달리 초범자 등이 주로 8호처분의 대상자가 되고 있다는 점 등도 감안하여야 한다.

8호처분은 외국의 단기구금제도와는 달리 독자성을 가진 제도이다. 시설내처우의 측면을 가지면서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통해 사회내처우의 요소들을 가미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특수단기처우나 미국의 쇼크구금, 독일의 단기구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 독일의 단기구금제도의 비판에서 알 수 있듯이 8호처분이 의도한 효과를 지속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구체화와 독립된 처우시설의 설치, 또한 대상자의 자율성의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축과 퇴원 후의 사후조치 등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본 제도가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제5장

8호처분의 개선방안

8호처분의 개선방안

제1절 8호처분의 성격 규명

8호처분은 소년법 개정 당시 쇼크구금이라는 성격에서 벗어나고자 개방처우, 중간처우 등의 다양한 표현을 통해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8호처분의 기본적 성격이 시설내처우라는 점을 외면할 수는 없다. 다만 시설내처우가 갖는 부정적 측면을 제거하기 위해 다양하고 개방적인 시설 및 환경 조성 과 개방적 프로그램 운영이 뒷받침되었다는 것이 외국의 단기구금형태와 달리 8호처분이 갖는 고유한 특성이라고 할 것이다.

8호처분의 성격을 나타내면서 개방처우나 중간처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일반교정에서 사용하는 개방처우라는 개념은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중간개념으로서 시설내처우가 아님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8호처분을 개방처우라고 말할 수 없다. 또한 8호처분을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중간제재 또는 중간처우라고도 보고 있는데, 중간처우로 보게 될 경우 보호관찰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8호처분이 남용될 우려가 높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내처우와 시설내처우는 그 대상자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바 8호처분이 중간처우라는 이유로 대상자를 포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8호처분은 단기간의 시설내처우의 필요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그 처우의 방식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개방성을 가미하여 시설내처우의 문제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금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그러므로 8호처분은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혼합형태라고 보는 것이 보다 명확할 것이다.

제2절 대상자 선정의 명확화

1. 8호처분 대상자의 선정 기준

8호처분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은 8호처분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8호처분과 같은 단기구금제도가 실패한 원인이 대상자 선정이 구체화되지 않음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8호처분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을 살펴보면 비행경력이 많거나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소년들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들은 비행경력이 많아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의 수용경험이 많기 때문에 8호처분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8호처분 교육을 잘 받고 퇴원한다 하더라도 가정이 아닌 비행의 장소를 다시 배회하게 될 것이고 자연히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악순환 상태에 놓일 것이다.

따라서 8호처분의 대상자는 이전에 소년원에 수용된 경험이 없는 초기비행자이어야 하고 부모의 보호력이 전제되는 상황에 있는 소년이어야 하며, 인성교육을 통해 개선의 가능성이 높은 자가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저연령소년의 범위나 보호관찰 위반자를 8호처분의 대상자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좀더 진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가. 초기비행자

8호처분의 대상자는 초기비행자이어야 한다. 이미 비행경력이 있으면서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의 입소 경험이 있는 자의 경우 8호처분에서 추구하는 쇼크구금의 효과를 충분히 살릴 수 없게 되므로 초기의 경미비행자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8호처분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초기비행자의 경우 재비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많은바, 범죄의 흉포화, 비행성 감염 정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호처분 대상으로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육체적·정신적 성숙도, 의식수준, 문화양상, 사회적 감정 등을 종합하여 8호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8호처분의 대상자는 강력범죄자나 누범자 등 교정이 극히 곤란한 소년들이 아니라 조기에 교육·개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비행의 위험성을 지닌 채 이전의 환경 속으로 되돌려 보내지는 다수의 비행소년들이다. 강력범죄자나 누범자에 대한 8호처분 조치는 이들의 수용으로 인해 소년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소년원에서 보호·교정해야 할 다수의 소년을 이미 교육에 실패한 가정이나 사회로 되돌려 보내 재범의 유혹에 빠질 수 있도록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¹³⁵⁾ 따라서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자가 8호처분을 받는 경우를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 부모의 보호력이 있는 자

8호처분은 반드시 보호자의 보호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8호처분 대상자의 경우 대부분 초기 경미비행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자의 보호·감독이 잘 이루어진다면 다시 비행에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호자가 없는 무의탁소년이나 보호자의 보호력이 미약한 소년의 경우 비행예방교육보다는 가정의 울타리를 만들어주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필요가 있다. 실제로 8호처분자의 사례 가운데는 ① 적절한 보호자가 없어 쉼터, 보호관찰소 직원 등에 인계한 사례, ② 보호자가 없는 소년에게 입원일을 지정하지 않은 8호처분을 내려 퇴원시 새로운 보호자 또는 거처를 알선해주는 사례, ③ 보호자가 생업에 바빠다거나 차비가 없다는 이유로 퇴원일에 오지 않아 직원이 소년을 집까지 데려다 준 사례, ④ 보호자가 건강 및 생업 등을 이유로 동행하지 않은 사례, ⑤ 부모가 이혼 또는 별거하여 책임을 서로 미루는 사례 등이 있었다.¹³⁶⁾

1개월이라는 짧은 수용기간을 가진 8호처분에서 보호자의 보호력이 확보되지 않

135) 정해룡, “21세기 소년보호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발전전략”, 보호 통권 제14호, 법무부, 2002, 44면

136) 성우제, 앞의 논문, 40면

는다면 제대로 된 비행예방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소년부 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보호자가 없는 소년이나 보호자의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소년의 경우에는 부모교육명령 등을 함께 부과함으로써 부모와의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8호처분 전담직원에 대한 심층면접에서도 8호처분은 부모의 보호력이 교육효과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소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므로 부모의 보호력이 전제되지 않는 소년의 경우에는 1개월 소년원 송치처분보다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6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본다.

다. 소년원 수용경험이 없는 자

8호처분으로 수용된 자들의 과거 경력을 보면, 이미 소년원 수용 경험이 있는 자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8호처분대상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과거 보호처분을 받은 경험 특히 소년원에 수용된 경험이 있는 자의 비율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8호처분의 대상자는 기존의 소년원송치처분과 달리 단기간 동안 집중적인 비행예방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비행성을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이미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서의 수용경험이 있는 자들에겐 8호처분의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8호처분의 대상자는 소년원 수용경험이 없는 자들로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오히려 수용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9호나 10호처분 또는 소년교도소 수형이 교정효과의 측면에서는 효과적이라 할 것이다.

라. 인성교육을 통해 비행력이 줄어들 수 있는 자

8호처분 대상자는 인성교육을 통해 비행력이 줄어들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소년부판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8호처분에 적합한 교육은 상담 및 심리치료 또는 체험활동 등을 통해 인성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실제로 8호처분 대상자에 대한 교육 만족도에 관한 설문에서도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보다는 다양한 체험교육이나 인성교육 등을 통해 자아감을 형성

해가는 프로그램이 대상자의 만족도가 높았고 이를 통해 변화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성교육을 통해 비행력이 줄어들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8호처분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것이다.

마. 저연령 소년에 대한 자제

8호처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8호처분의 대상으로 14세 미만 저연령 소년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저연령 소년에 대한 소년원 수용은 가급적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경우 거주 시설에 어린 비행소년과 10대 중후반 청소년이 함께 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¹³⁷⁾ 그리고 아동에 대한 시설내수용이 30일 이상 계속될 경우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한 문헌도 있다.¹³⁸⁾

현재 8호처분기관에 수용된 소년의 비율을 보면 14세 미만의 자의 비율은 높지 않다. 소년부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8호처분이 적합한 대상은 14-15세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판사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소년부판사들도 14세 미만의 아동에게까지 시설내처우를 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도 중고등학생이 프로그램에 빠르게 적응하고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소년보호기관이 주로 중고등학생 위주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운영해온 상태에서 아동을 수용하기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14세 미만의 저연령 소년에게 가급적 소년원 수용을 자제하고, 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14세 이상의 청소년과 아동이 서로 다름에 대한 특성 이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고 아동에 맞는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이 충분히 마련된 다음에 검토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137) H. N. Snyder, R. C. Espiritu, D. Huizinga, R. Loeber and D. Petechuk, "Prevalence and Development of Child Delinquency", OJJDP Child Delinquency Bulletin Series, 2003, p.6.

138) B. J. Burns, J. C. Howell, J. K. Wiig, L. K. Welsh, R. Loeber and D. Petechuk, "Treatment, Services, and Intervention Programs for Child Delinquents", OJJDP Child Delinquency Bulletin Series, 2003, p.6.

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제외

법원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8호처분자 중 보호관찰 위반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가 2008년 6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800명으로 전체인원 2,762명 가운데 29.0%를 차지하고 있다. 8호처분 대상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대상자의 25.8%가 보호관찰 위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8호처분 대상자의 약 30%정도가 보호관찰 위반자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8호처분이 보호관찰에 대한 누진적 제재, 즉 보호관찰처분의 집행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보호관찰 미준수자의 경우 8호처분으로 다루기 보다는 다른 행정적 제재를 통해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 마련

현재 8호처분은 초기비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소년관련 법률 어디에서도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분류심사기준에서 ① 수용경험이 없는 자 중에서 비행력은 없으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나 위험성은 낮으나 기소유예 또는 보호처분 등 비행력이 2-3회 있는 경우, ② 사회내처우나 시설내처우 간 연계를 통해 경각심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④ 상담조사시 교육태도가 매우 불량한 경우, ⑤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경미한 비행을 반복하는 경우를 8호처분 대상자로 삼고 있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대상자 선정에 대한 기준 마련은 8호처분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분류심사기준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일본의 특수단기처우가 실패했다고 보는 원인 중의 하나도 특수단기처우의 대상자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한 것에 두고 있다. 따라서 8호처분의 대상자는 비행력이 없고 소년원 수용 경험도 없는 초기비행자를 대상으로 하되, 부모의 보호력이 전제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소년이어야 하지만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나 지나치게 저연령의 아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에 대상자 선정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특

히 소년원 수용의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인 만큼 대상자 선정기준이 법에 명시될 필요성이 더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9호처분이나 10호처분의 경우에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어, 9호와 10호처분과 달리 당장 8호처분의 경우에만 대상자 선정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법률 개정과정을 통해 8호처분뿐만 아니라 9호처분과 10호처분의 경우에도 대상자 선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8호처분의 경우 법률에 명시해야 할 대상자 선정기준으로서 최소한 수용경험이 없을 것, 그리고 부모의 보호능력이 있을 것 등을 제시해 두어야 한다.

3. 법원과의 긴밀한 협조 필요

8호처분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법원과의 긴밀한 협조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리라 본다. 법무부 내에서 8호처분 대상자를 어느 범위로 한정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법원 내부에서 판사가 다른 대상군에 대하여 8호처분을 부과하게 된다면 법무부의 의도와는 다른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실제로 법무부에서는 8호처분의 대상자를 저연령 초기비행자라고 하고 있으나 법원 판사들은 14세 미만 저연령 소년에게 시설내처우를 내리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14세 미만자에 대하여 8호처분을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법무부에서는 초기 비행자에 대하여 8호처분을 부과해 주기를 원하나, 법원에서는 당해 비행 사실에 기초하여 소년원 수용경험이 있거나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경험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도 8호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다.

법무부와 법원간의 8호처분 대상자 기준을 놓고 통일된 기준이 제시되어야 적절한 대상자가 8호처분 담당기관으로 인계되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 법무부에서도 8호처분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국법원 판사들을 대상으로 8호처분에 관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소년법원 판사들과의 간담회 과정을 통해 8호처분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발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원과 법무부 간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8호처분 대상군 선별에 있어서 통일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3절 8호처분 관련 규정의 법적기반 마련

1. 8호처분 운영지침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의 편입

8호처분의 교육과정과 운영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은 8호처분 운영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소년원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소년법」에서 대상에 대한 기본규정만을 두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8호처분 운영에 관련된 사항만은 동법률에서 그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8호처분 운영지침에서 구체적인 사항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8호처분도 소년원 교정교육에 관한 사항이므로 운영지침의 내용들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편입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8호처분의 운영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규율하지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소년원 교육 전반에 대한 부분은 9호나 10호처분이 내용상 같이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함께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운영에 있어서 8호처분은 9·10호처분과는 차별화되고 개방적인 인성교육 중심의 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8호처분자의 급양·지급품·보건 등 기본적 처우는 9·10호처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하되, 8호처분자의 생활시설,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은 7·9·10호처분자와 분리하도록 한다. 8호처분자의 수용기간은 4주 이내로 한다는 것도 명시하여야 한다.

둘째, 입원에 관하여 법원소년부판사가 입원일자를 특정일로 지정한 경우와 지정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그 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송 방식에 대한 규정도 두되, 입원일을 지정받은 대상자가 입원일에 입원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에 관하여도 법률에서 9·10호처분의 교정교육에 대하여 상세히 규

정한 것과 같이 8호처분의 경우에도 신입자 및 퇴원자 교육방식과 시간에 관한 규정은 물론이고, 비행유형별 전문교육, 심성훈련을 위한 집단상담,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들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넷째, 퇴원에 관하여도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나 8호처분과 5호처분이 병과된 경우의 신병인도 방식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그밖에도 8호처분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사항도 구체적인 규정으로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외출시 대상자 선정 및 시행과 관련된 문제, 사회봉사활동이나 외부체험활동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호 및 감호장비의 사용 문제, 이탈 문제 등의 처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특히나 8호처분의 경우 시설이나 환경의 개방성으로 인해 이탈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4·8호처분 병합관련 규정 신설

8호처분의 경우 단기간의 구금으로 교육효과를 충분히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대상소년을 관찰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때문에 8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2항 제5호에서 5호 장기보호 관찰 처분과 병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보호관찰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8호처분의 경우 일률적으로 5호 장기 보호관찰 처분과 병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8호처분 과정을 마친 소년 가운데 교육효과에 따라 2년이라는 장기보호관찰이 필요하지 않은 대상자가 있을 수도 있고, 2년보다 단기의 보호관찰을 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행소년의 상황에 따라 4호 단기보호관찰이나 5호 장기보호관찰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되고 이를 위해서는 「소년법」 제32조 제2항에 4호처분과 8호처분을 병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3. 부가명령 관련 규정 마련

8호처분은 4주 동안 비행예방전문교육이나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교육을 경험한 대상소년에게 사회 복귀 이후 또다시 유사한 형태의 대안교육을 받게 하거나 외출제한명령을 받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가명령이 소년원송치 처분을 내릴 당시에 결정되기 때문에 1개월의 교육 이후 교육효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처음부터 여러 가지의 부가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1개월 동안 소년원에서의 수용을 경험한 소년에게 또다시 야간외출 제한 등의 부가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8호처분자에 대한 부가명령은 비행소년의 재사회화 여부, 환경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최소한 정도로만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제4절 시설 및 환경의 개방화

1. 8호처분의 독립기관화

가. 8호처분 기관의 독립시설화

현재 8호처분이 실시되고 있는 대덕소년원의 경우 의료소년원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 외에 청주소년원이나 제주소년원의 경우 9호 또는 10호처분을 담당했던 기관에서 그대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는 8호처분 소년 등에 대한 악몽감염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9·10호처분 소년들에 대하여는 처분의 상이함에 따른 심리적 박탈감을 안겨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¹³⁹⁾ 특히 청주소년원의 경우 9호처분자와 8호처분자가 한 건물에서 같이 생활함으로써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 1개월 이내의 단기소년원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방식이나 대상자 선정, 프로그램 실행장소 등에 있어 기존의 소년원 운영체계와는 다른 접근방식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므로¹⁴⁰⁾, 8호처분 대상자만을 위한 개방형시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139) 이영호, 앞의 논문, 55면

나. 8호처분 기관의 권역별 소규모화

제주소년원의 경우 지역적 특성 때문에 8호처분자를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덕과 청주 두 지역만이 8호처분 전담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역적 불균형과 장거리 이송·이동에 따른 부담을 주고 있다. 이는 8호처분 대상소년과 부모에게는 이동으로 인한 과도한 불편을 주고 있고, 판사의 처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최소한 권역별(서울권, 수도권, 강원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등)로 개방적이고 독립적인 8호처분 전담시설이 신설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8호처분 전담기관은 소규모화되어야 한다. 9·10호 기관에서보다는 단기간에 수용소년 개개인의 특성을 빨리 파악하여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하고,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아질 경우 인력면이나 시설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9·10호처분과 달리 1개월 단위로 대상소년이 순환되는 형태이라 전담기관이 대형화될 경우 교육에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따라서 8호처분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지역별로 독립적인 시설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소규모화될 필요가 있다.

2. 8호처분 전담인력의 총원 및 전문화

8호처분 전담직원은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자이기도 하고, 지식의 전달자이자 학생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더욱이 가정과 사회에서 실패를 경험한 비행청소년의 경우 직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고, 직원의 질과 수는 대상소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하지만 현행 8호처분 운영은 대덕의 경우 10명, 청주의 경우 3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절대적으로 전담직원이 부족한데다가 운영해야 할 프로그램도 24개로 너무 많다. 이 때문에 직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외부강사를 활용하고 있긴 하지만 부족한 인력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성격상 전담직원이 맡고 있는 교과목이나 체험 및 상담활동 프로그램이 고도의 전문성과 역량을

140) 김성언, “소년보호처분의 실효성 확보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2호, 2008, 40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다. 더욱이 8호처분의 성격상 사회에서 가족문제나 학교문제 등으로 심리적·정신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비행청소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교육을 담당해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질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선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8호처분만을 전담하여 교육하는 전문직원이 증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은 비행예방이 중점인바, 전담직원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자신의 전문분야를 지속적으로 유지·개발할 수 있도록 전담직원의 연구여건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직원의 전문화에 있어서 한 가지 보강되어야 할 것은 직원의 인권의식 함양이다. 실제로 8호처분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8호처분 대상소년들의 57%가 교사의 전문성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고 선생님의 생활지도 방식에 대하여 59.5%가 만족하고 있으나, 소년원 수용생활과정에서 선생님이 생활 지도를 함에 있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부분들 중의 하나가 선생님이 거친 언어를 사용한다거나(31.1%), 폭력을 사용한다거나(15.5%), 선생님이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보인다(15.5%)고 답변하였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도 처우의 기본원칙으로서 보호소년의 인권보호를 중요한 가치로 선언하고 있고, 보호소년의 인권감수성 향상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타인에게 의식적·무의식적으로 가하는 인권침해적 행동이나 언어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¹⁴¹⁾ 따라서 직원의 직무교육에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대상소년들의 인권감수성을 진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생활환경 및 처우의 개방화

8호처분자의 경우 생활공간에 있어서 제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심리적 외상, 즉 정서적 트라우마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시설에 수용되었던 사실 자체만으로 사회로부터 낙인이 될 수 있음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8호처분 대상자가 시설 내 처우로 인해 경험하게 될 수 있는 부정적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생활환경이나

141) 윤옥경, “소년원법 개정과 소년보호정책의 방향”, 소년보호연구 제10호, 2007, 33-34면.

처우에 있어서 개방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처우를 할 때 주말가정학습을 한다거나 외출 등을 실시할 때 9·10호처분보다는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병확보를 위한 철격자 등 물적 감호장비에 대한 규정을 완화될 필요가 있다. 높은 외벽이나 쇠창살, 자물쇠 등 물리적 시설을 완화하고 시설구조를 기숙사 형태로 바꾸어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적 시설을 개방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부도 개방형 시설로의 전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9년부터 시설 개선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호처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노력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인다.

또한 수용생활 과정에서 대상소년 스스로가 수용사회의 질서에 적응해갈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용질서 위반에 대하여 성인의 시각이나 교사의 시각에서 질서를 강요하기보다는 대상소년들 스스로 자율적인 규칙에 따라 그들이 스스로 규칙문화를 조성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소년원 내에 청소년자치법정과 같은 자율규제시스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한다. 청소년자치법정은 범 죄나 문제행동에 가담한 청소년들이 동료청소년들에 의해 여러 가지 형태의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그들의 범죄행동에 책임감을 심어주는 프로그램으로, 미국 등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청소년 스스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다양한 처분을 제시함으로써 회복적 사법을 익히고 긍정적인 청소년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생활시설이나 환경의 개방화는 8호처분이 원래 의도했던 단기간 수용의 취지와 상충되지 않도록 적절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개방에 중점을 두게 되어 시설내 수용이라는 측면을 상쇄시키지 않도록 두 측면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방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4. 입원소년에 대한 두발 자유화

8호처분의 경우 다른 소년원송치처분과 달리 수용기간도 짧고, 외부로의 체험학습 등이 많은 관계로 사회와의 접촉 기회가 빨라진다. 이러한 소년들에게 9·10호처분과 같이 입원시 삭발을 하도록 하는 조치는 타당하지 않은 듯하다. 실제로 8호처분

대상자 설문조사에서도 대상소년들의 28%는 식발이 규칙에 따르도록 유도하는 것이 되어 좋다는 의견이 있긴 하였으나 반면 자유를 구속하는 느낌이 들어 싫다는 의견이 31%, 퇴원 후 학교에 갔을 때 다른 학생들과 차이가 나서 싫다는 의견이 23.2%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심층면접에서는 직원들은 대상소년의 경우 심각한 염색이나 장발 등으로 두발정리의 필요성이 있고, 머리를 정돈하는 과정을 통해 조직생활에 적응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므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8호처분의 경우 9·10호처분과 달리 장기간의 수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거니와 교육을 위한 외출이 잦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상소년들이 두발의 제한으로 인해 느끼는 사회와의 단절감은 최소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보인다. 지나치게 염색을 하여 다른 학생들에 혐오감을 준다거나 너무 긴 머리여서 위생상 보기 좋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다면 두발에 있어서만큼은 소년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특수단기처우 대상자들에 대하여는 두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8호처분 대상자의 경우 1개월 송치기간이 끝난 후에 사회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두발을 자유화할 필요가 있다.

제5절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의 전문화

1. 9·10호처분 교육과의 차별화

9·10호 소년원 송치처분은 청소년의 비행 그 자체보다는 비행을 유발한 환경과 인격 등을 고려하여 어떻게 하면 교화·개선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긴 하지만, 8호처분은 수용 자체만으로 범죄의 극복과 비행의 단절을 통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내처우의 단점을 최대한 극복할 수 있는 개방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현행 8호처분 교육과정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대부분이 수강명령 프로그램이나 9·10호 교육과정의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약물예방교육이나 준법운전강의, 성비행예방교육, 심리치료 등은 기존의 수강명령 프로그램과 유

사하고, 심리치료,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미술치료, 체험활동 등은 기존 소년원에서의 9·10호 교육과정과 유사하다. 어떻게 보면 8호처분의 교육과정 프로그램들은 다른 보호처분절차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총망라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물론 다른 처분과정에서 실시하여 성공적인 것으로 증명된 것이라서 8호처분에 도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1개월이라는 시간동안 교육을 받는 소년에게 지나치게 잡다하게 열거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은 교육의 질이나 내용면에서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상 소년에게도 충분히 교육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존의 소년원 교육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본교육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8호처분만의 특성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인다.

2. 비행유형별·연령별·성별 프로그램 개발

8호처분으로 수용된 소년들의 경우 비행경력이나 비행원인이 다양하고 이러한 비행요소들을 조기에 파악하여 적절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바, 대상소년 별로 프로그램이 차별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8호처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이 비행을 저지른 유형자별로 개별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교육시간 동안 일률적으로 교육하고 있어 대상자들이 프로그램에 충분히 만족하거나 흥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비행예방과 관련된 전문교육의 경우 과거 비행전력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별로 개별적인 프로그램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상담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도 집단으로 운영되어야 할 프로그램과 개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영화치료의 경우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공격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로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에게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다¹⁴²⁾는 과거 연구

142) 윤대희 외, “영화치료프로그램이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증진과 공격성 조절에 미치는 효과연구”, 소년보호논집 제10집, 2009, 341면 이하.

결과들이 있으므로, 폭력범죄를 저지른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1개월 소년원송치대상은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이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단순한 비행유형뿐만 아니라 연령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이전의 소년원 수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대상이었고 저연령 소년의 경우 구금으로 인한 영향이 크다는 과거 연구들도 있는바 이들에 대한 접근방식을 달리하여 별도의 연령별 프로그램 개발할 필요가 있다.

남자소년과 여자소년은 개별 프로그램에 있어서 만족도와 관심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실제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주로 남자소년들은 활동적인 프로그램에서 교육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여자소년은 정적인 프로그램에서 교육효과가 높게 나타난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재 남자소년을 수용하고 있는 대덕소년원과 여자소년을 수용하고 있는 청주소년원의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현재 청주소년원에서는 여자소년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자비행청소년의 경우 실용적인 교육보다는 관계적 측면을 강조하는 인성교육이 더 필요하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구체적인 지식을 얻게 되는 것보다 친밀한 관계, 지지적인 분위기 등에 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자청소년의 경우 관계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¹⁴³⁾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8호처분의 교육프로그램은 비행유형별, 연령별, 성별로 프로그램을 다양화·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3. 교육프로그램 내용의 개방화

8호처분자의 경우 교육과정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줄 필요가 있다. 비행청소년의 욕구와 관심을 존중하고 기존 틀에서 벗어나 개방성과 자율성을

143) 전영실, 여자비행청소년의 교정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132면.

특징으로 하는 열린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비행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가정의 기능적·구조적 결손, 학교 부적응, 교사의 무관심, 불량교육, 개인의 충동성·공격성 등을 완화시켜 주고 가족적응력, 정서적 지지, 성취경험, 건전한 놀이문화, 문제해결능력, 준법의식, 자기통제력 등 비행의 보호요인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¹⁴⁴⁾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교육이 필요하다.

첫째, 8호처분자의 부적응 문제는 청소년의 환경조건의 개선뿐만 아니라 청소년 내면적 문제를 진단하고 치유하는 교육이 필요하다.¹⁴⁵⁾ 실제로 8호처분 기간 중 수용생활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들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 소년원 수용에 있어 시설 또는 환경적인 요인보다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동료와의 인간관계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8호처분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대상소년의 내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일정한 규제 안에서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이러한 자아개념을 바탕으로 공동체 생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자율성을 기반으로 자신의 선택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4. 외부전문인력의 활용

현재 8호처분 교육기관은 대부분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법무부 내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나, 전문인력 양성까지는 시간적 한계가 있으므로 당장 늘어나는 8호처분 대상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수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강사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144) 성우제, “8호처분의 운영성과 분석”, 소년보호연구 제14호, 2010.6, 39면

145) 강지원, 청소년 인성지도의 실천적 방향, 법무부, 1994, 22-24면

현재 대덕소년원과 청주소년원에서 내부직원 대 외부강사의 활용 비율을 보면 6:4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외부강사의 대부분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자일 뿐 비행소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가진 전문인력이 아니므로 교육에 있어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소년원에서는 전문강사를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나 검증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행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한 강사의 교육으로 인해 대상소년들이 부정적인 자아감을 형성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인력난 해결을 위해 외부강사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비행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로 구성을 하고, 그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법무부 내부에서 스스로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상시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일 것이다.

5. 지역사회와의 참여 유도

8호처분 대상자들은 단기간의 구금 이후에 사회복귀를 해야 하는 이들이어서 교육과정 중에도 사회와 접촉하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8호처분 교육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무관심이 크다. 현재 대덕소년원, 청주소년원 모두 Cap 프로그램, 노동청 직업교육 프로그램 이외에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하는 예가 거의 없다. 외국의 경우 비행청소년의 교육을 위해 가정,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운영되는 교육프로그램이 많은 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8호처분 담당기관의 역할로만 받아들이고 있어 대상소년들이 사회로 나아갔을 때 사회로부터 배제되거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쉽게 좌절하여 비행으로 빠져들 위험도 크다.

8호처분의 운영에 있어서 대상소년, 부모, 담당직원의 노력만으로는 대상소년의 재비행을 예방하기 어렵다. 사회적 지원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8호처분 교육을 잘 받고 보호관찰 기간을 무사히 마친다 하더라도 이후 다시 기존의 무관심한 환경으로 돌아가게 되고 대상소년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없다면 소년은 다시 비행의 길에 빠지는 악순환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상소년들이 가정이나 지역사회로 돌아갔을 때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물적·인적 자원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여러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 하는 등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야 한다.

6. 부모의 교육 참여기회 확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지지적 관계, 긍정적인 훈육방식, 밀착된 지도와 감독,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옹호, 필요한 정보를 부모가 찾아나서는 것 등 부모들의 행동은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완충역할을 한다.¹⁴⁶⁾ 비행소년의 나이가 어릴수록 가족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연구가 있다.¹⁴⁷⁾ 특히, 초범이고 저연령 소년의 경우 가족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소년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부모도 교육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소년의 인성이 바뀌고 안정적인 생활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내 환경이 여전히 비행을 부추기고 있다면 쉽게 재비행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퇴원 후에 비행에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모의 감독과 보호가 절실하다.

146) 부모의 역할과 청소년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문헌으로는 강동구/안병경, “소년법에 대한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연계성 강화방안”, 소년보호논집 제7집,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07, 280면 양중국, 비행청소년의 비행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재비행간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35면, 유성경 외, 청소년 탈비행과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학연구, 2000, 77-78면, 유희정, 비행청소년 및 부모의 소통유형과 행동특성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54-56면 참조

147) R. Spoth, T. Neppl, C. G. Lillehoj, T.Jung and S. R. Mikler, "Gender-Related Quality of Parent-Child Interactions and Early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Family Issues 27, 2006, p.828; Bernd Holthusen and Heiner Schaefer, "Strategies and Organisation of Youth Crime Prevention in Germany. The Importance of the Education Approach", Prevention of Youth Crime in Germany : Education Strategies, Centre for the Prevention of Youth Crime, 2004, p.15.

그러나 비행청소년의 생활환경을 보면 대부분 가정환경이 열악하거나 부모가 보호 감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모에게 일정기간 보호명령 등을 통해 교육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문제청소년의 정상적 가족 기능 강화를 통해 가정환경을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¹⁴⁸⁾ 예를 들어 미국의 OJJDP의 가족개입프로그램 등과 같이 비행청소년의 가족이나 부모를 상대로 사회복지적 개입을 하는 가족강화프로그램,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148) 김지선, 법원의 부모교육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148-149면.

제6장 결론

8호처분은 2007년 소년법 개정 과정에서 기존의 소년원 송치처분이 폐쇄적이고 대형화되어 있어 소년의 특성에 맞는 개별처우를 하기에 곤란하고 처우내용도 단순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호처분의 다양화 방안으로서 도입되었다. 동 처분은 비행초기 단계에 있는 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1개월이내의 단기 집중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비행성을 조기에 개선하고 재비행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는 시설 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중간 또는 혼합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8호처분은 일정 기간 동안 소년원에 수용된다는 점에서 시설내처우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고,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혼합으로 인해 8호처분이 당초 목표한 고유의 성격을 살리지 못하는 문제점을 수반하게 되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8호처분 시설도 청주와 대덕 두 곳에 편중되어 있고 전담직원 10여명으로 25개 정도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인력면이나 시설면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다. 따라서 8호처분의 성격 규명 및 8호처분의 내용 및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8호처분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8호처분이 시설내처우이자 사회내처우라는 특징 때문에 8호처분 자체의 성격이 불명확해져 있다. 둘째, 8호처분의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거나 분류심사기준에 의하더라도 초기비행자, 저연령자, 부모의 보호력이 있는 자가 그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수용경험이 다수 있는 자, 재비행력이 높은 자,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등 8호처분으로 교정목적을 살리기

부적합한 자가 포함되어 있어 문제이다. 셋째, 9호나 10호처분의 경우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나 8호처분의 경우 「8호처분 운영지침」이라는 법무부 내규에 의해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가 된다. 넷째, 8호처분을 보호관찰과 병합함으로써 인한 집행상의 문제나 일률적인 장기보호관찰과의 병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부가명령을 확장하여 적용함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섯째, 8호처분 운영을 개방처우로 한다고 하나 9·10호처분 업무와 병행으로 인해 개방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고, 두발제한 등의 문제는 개방성을 제한하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여섯째, 8호처분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25개 프로그램을 1개월 이내 소화하다 보니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영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에서도 비행이 상습화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단기구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미국, 일본, 독일의 경우 프로그램에 있어서 개방적인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시설내 처우를 전제로 하여 단기 집중식 교육을 통해 재비행 예방효과를 얻고자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 8호처분의 운영실태 및 설문조사 결과와 외국의 단기구금 형태에 대한 검토를 종합하여 8호처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8호처분의 성격은 개방처우, 중간처우 등이 아니라 단기간의 시설내 처우의 필요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그 처우방식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개방성을 가미하여 시설내처우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혼합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8호처분의 대상자는 이전에 소년원에 수용된 경험이 없는 초기비행자이어야 하고 부모의 보호력이 전제되는 상황에 있는 소년이어야 하며, 인성교육을 통해 개선의 가능성이 높은 자가 되어야 한다. 다만, 지나치게 저연령 소년의 경우 시설내 수용이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자제할 필요가 있고, 보호관찰 준수 사항 위반자의 경우에도 보호관찰에 대한 집행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8호처분이 활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다른 행정적 제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8호처분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제재인바 그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법률에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나, 현재 9호나 10호처분의 경우에도 법률에도 그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는바 법률개정 작업단계에서 8, 9, 10호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법무부와 법원 판사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통일된 기준 하에 적정한 대상군이 선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8호처분 관련 규정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8호처분 운영지침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 대부분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편입되어 구체화되어야 하고, 이외에도 외부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감호 및 감호장비 사용의 문제, 이탈의 처리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8호처분을 일률적으로 장기보호관찰 처분과 병합할 것이 아니라 소년의 특성이나 교육효과 등을 고려하여 단기보호관찰과도 병합할 수 있도록 하고, 부가명령도 비행소년의 재사회화 여부, 환경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으로만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시설 및 환경의 개방화를 위해 8호처분 대상자만을 위한 개방형시설이 마련되어야 하고, 최소한 권역별로 소규모의 독립시설이 신설되어야 한다. 그리고 8호처분만을 전담하여 교육하는 전문인력이 증원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해당 인력이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연구할 수 있도록 전문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8호처분의 경우 시설내처우이기 때문에 시설 수용만으로 폐쇄성을 갖기에 충분하므로 건물외벽이나 물리적 시설환경을 개방적으로 바꾸고, 대상소년 스스로 수용질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여야만 한다. 입원소년에 대한 두 발 자유화를 통해 1개월 교육 이후에 느끼는 사회로부터의 단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이 전문화되어야 한다. 기존의 소년원 교육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본교육프로그램과 차별화된 특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수용소년의 비행경력이나 비행원인 등을 파악하여 비행유형별·연령별·성별로 개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서도 개방성이 있어야 하는바, 8호처분 대상소년의 내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모색 뿐만 아니라 일정한 규제 안에서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도록 한다. 현재 부족한 8호처분 교육전문가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강사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들 강사선발에 있어서도 비행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진 자로 구성하고 강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8호처분 대상자가 가정이나 지역사회로 돌아갔을 때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물적·인적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비행청소년의 가정은 대부분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으므로, 부모에게 단순히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명령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족기능 강화를 통해 가정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1. 국내문헌

- 강경래, “소년원 처우의 실효성 확보방안 : 8호처분과 일본의 특수단기처우와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2010년 한국소년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0.]
- 강경래, “한·일 개정소년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년범죄방지 한·일 국제 학술대회 자료집, 2008.
- 강동구·안병경, “소년법에 대한 시설내처우 및 사회내처우의 연계성 강화방안”, 소년보호논집 제7집, 2007.
- 강지원, 청소년 인성지도의 실천적 방향, 법무부, 1994.
- 법무부 소년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개정법률안 공청회자료집, 2007.
- 김선남, 청소년 비행관련 변인간의 인과적 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4.
- 김성언, “소년보호처분의 실효적 실천방안”, 개정소년법과 소년사법, 2008년 춘계형사정책. 세미나 자료집, 형사정책연구원, 2008.
- 김용우, “수형자의 개방처우론”, 교정 제139호, 1987.
- 김은경/김지선/이승현 외,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 김지선, 법원의 부모교육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 김화수, “준개방처우제도의 실시”, 교정 144호, 1988.
- 박미숙, 소년법의 중간처우제도 도입에 관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개정소년법에 따른 분류심사기준, 2008.
- 법무부, 8호처분 운영기본계획, 2008.

- 법무부, 비행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집중교육, 2008.
- 법무부 보호국 소년보호과, 법원 판사 방문 설문조사 결과보고자료, 2008.
- 성우제, “8호처분의 운영성과분석”, 소년보호연구 제14호, 2010.
- 윤대회 외, “영화치료프로그램이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증진과 공격성 조절에 미치는 효과연구”, 소년보호논집 제10집, 2009.
- 윤옥경, “소년원법 개정과 소년보호정책의 방향”, 소년보호연구 제10호, 2007.
- 원혜옥, “법무부 소년법 개정안의 개요”, 소년법 개정법률안 공청회 자료집, 2007.
- 이백철, 중간처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 이보영, “천안개방교도소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사회과학논문집 제15집, 1996.
- 이영호, 소년법의 사회복지적 실효성 연구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처분(8호)을 중심으로,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이윤호, “개정소년법 시행에 따른 신설제도의 성과분석”, 2009 소년보호정책용역 논집,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09.
- 이정국, “개방처우의 내용 및 개선방안”, 고시연구 통권 제374호, 2005.
- 이진국, “형사제재체계 내에서의 사회내처우제도”, 형사법연구 제22호 특집호, 2004.
- 전영실/기광도, 저연령 소년의 비행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 정해룡, “21세기 소년보호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발전전략”, 보호 통권 제14호, 법무부, 2002.
- 최인섭/이순래, 청소년 재범예방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 최종식, “일본 소년법 개정의 최근동향(Ⅲ)”, 강원법학 제25권, 2008.
- 한국소년법학회, 소년법, 세창출판사, 2006.
- 한영선, “개정소년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 1개월 이내 소년원송치(8호)처분을 중심으로, 시민과 생활법률 제2호, 한국사법교육원, 2009.

2. 일본문헌

- 關力編, 非行少年はこう扱われる-發見・調査・審判・處遇の實態-, 有信堂, 1998.
- 橋本牧子譯, 非行・犯罪に對する矯正ブートキャンプの效果, 法務省 矯正局, 2005.
- 吉田秀司, 「少年院における短期處遇の新しい動向」, 『罪と罰』, 1995.
- 藤本哲也, 「少年院における特修短期處遇について」, 『戸籍時報』 第456号, 1996.
- 大江章, 「少年事件における處遇選擇の在り方」, 『研究紀要』 第63号, 1994.
- 末永清, 「特修短期處遇の現状と展望」, 『ケース研究』 第233号, 1992.
- 法務省矯正局少年矯正課, 「少年院における新しい短期處遇について」, 『刑政』 第118卷 第5号, 2007.
- 西岡清一郎, 「特修短期處遇の實施に寄せて」, 『刑政』 第102卷 第10号, 1991.
- 林和治, 「少年院における新しい短期處遇について-一般短期處遇の處遇課程の改編と特集短期處遇施設の集約化-」, 『家庭裁判月報』 第59卷 第6号, 2007.
- 中村幹夫, 「『處遇の社會化』に向けた制度發足10年の軌跡と展望」, 『家庭裁判月報』 第54卷 第10号, 2002.
- 中田幹夫, 「特修短期處遇-『處遇の社會化』に向けた制度發足10年の軌跡と展望-」, 『家庭裁判月報』 第54卷 第10号, 2002.
- 中村正則, 「少年院短期處遇の再出發」, 『刑政』 第102卷 第10号, 1991.
- 中村正則, 「新しい少年院短期處遇について」, 『家庭裁判月報』 第43卷 第11号, 1991.
- 中村正則, 「特修短期處遇の實施狀況の概觀-制度創設とその後-安定的な發展を祈って-」, 『家庭裁判月報』 第45卷 第6号, 1993.
- 澤登俊雄, 少年法入門, 有斐閣ブックス, 2005.
- 關哲夫, 少年法の解説, 一橋出版, 2009.
- 大江章, 「少年事件における處遇選擇の在り方-少年院における特修短期處遇の實情を通して」, 『研究紀要』 第63号, 1994.
- 東京家庭裁判所, 「特修短期處遇の對象者の適正選擇について」, 『家庭裁判月報』 第48卷 第3号, 1996.

3. 영미문헌

- B. J. Burns, J. C. Howell, J. K. Wiig, L. K. Welsh, R. Loeber and D. Petechuk, "Treatment, Services, and Intervention Programs for Child Delinquents", OJJDP Child Delinquency Bulletin Series, 2003.
- B. Krisberg, Guide for Implementing the Comprehensive Strategy for Serious, Violent, and Chronic Juvenile Offenders,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1995.
- Barry C. Feld, "Violent Youth and Public Policy : A Case Study of Juvenile Justice Law Reform", Minnesota Law Review 79, 1995.
- Bernd Holthusen and Heiner Schaefer, "Strategies and Organisation of Youth Crime Prevention in Germany. The Importance of the Education Approach", Prevention of Youth Crime in Germany : Education Strategies, Centre for the Prevention of Youth Crime, 2004.
- Carol Ann Nix, Boot Camp/Shock Incarceration-An Alternative to Prison for Young, Non-Violent Offenders in the United States, Prosector, National District Attorneys Association, 1994.
- D. B. Felker and B. B. Bourque, "The Development of Boot Camps in the Juvenile System : Implementation of the Three Demonstration Programs", in MacKenzie, D.L. and Hebert, E. (eds), Correctional Boot Camp : A Tough Intermediate Sanction,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1995.
- D. L. MacKenzie and E. Herbert, "Preface", in MacKenzie, D.L. and Herbert, E. (eds), "Correctional Boot Camp : A Tough Intermediate Sanction",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1995.
- D. L. MacKenzie and A. B. Rosay, "Correctional Boot Camp for Juveniles", in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eds), Juvenile and Adult Boot Camps,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1996.

- David M. Altschuler and Troy L. Armstrong, *Intensive Aftercare for High-Risk Juvenile*, U.S. Office of Juvenile and Delinquency Prevention, 1994.
- Dean J. Champio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 Delinquency, Processing, and the Law*, Prentice-Hall, 2001.
- Faith E. Lutze, "Are Shock Incarceration Programs More Rehabilitative than Traditional Prisons?," *A Survey of Inmates*, *Justice Quarterly*, Vol. 15 No.3, 1998.
- Gordon Bazemore and Thomas J. Quinn, "Boot Camp, Work Camp and Community Needs : A Restorative Justice Perspective on Correctional Objectives", in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eds), *Juvenile and Adult Boot Camps*,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1996.
- Gus Martin, *Juvenile Justice-process and systems*, Sage Publications, 2004.
- H. N. Snyder, R. C. Espiritu, D. Huizinga, R. Loeber and D. Petechuk, "Prevalence and Development of Child Delinquency", *OJJDP Child Delinquency Bulletin Series*, 2003.
- J. Petersilia and S. Turner, "Evaluating Intensive Supervision Probation/Parole : Results of a Nationwide Experiment", *Research in Brief*. Washington, D.C. :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1993.
- J. K. Zachariah, "An Overview of Boot Camp Goals, Components, and Results", in D. L. MacKenzie and Hebert, E. (eds), *Correctional Boot Camp : A Tough Intermediate Sanction*,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1995.
- J. P. Hanlon, Sean Hecker and David Gopstein, *Expanding Zones-A Modest Proposal to Increase the Use of Alternatives to Incarceration in Federal Sentencing-*, *Criminal Justice*, American Bar Association, 2010.
- Jaime E. Muscar, "Advocating the End of Juvenile Boot Camps : Why the

- Military Model Does Not Belong 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U.C. Davis Journal Law & Policy,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2008.
- James B. Wells, Kevin I. Minor, Earl Angel and Kelli D. Stearman, "A Quasi-Experimental Evaluation of a Shock Incarceration and Aftercare Program for Juvenile Offenders,"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Vol.4 No.3, 2006.
- Jeanne B. Stinchcomb and W. Clinton Terry, "Predicting the Likelihood of Rearrest among Shock Incarceration Graduates : Moving Beyond Another Nail in the Boot Camp Coffin," Crime & Delinquency, Vol.47 No. 2, 2001.
- Jeremy Travis, Researchers Evaluate Eight Shock Incarceration Programs,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Update, Department of Justice, 1994.
- Jody Klein-Saffran, "Bureau of Prison : Expanding intermediate sanctions through intensive confinement centers", in D.L. MacKenzie and Hebert, E. (eds), Correctional Boot Camp : A Tough Intermediate Sanction,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1995.
- John F. Wertz and Ronald D. Griffith, "Staff Training : Foundation for success", in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eds), Juvenile and Adult Boot Camps,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1996.
- John P. Keenan, "Programming in Georgia's Boot Camp", in MacKenzie, D.L. and Hebert, E. (eds), Correctional Boot Camp : A Tough Intermediate Sanction,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1995.
- R. Brame and D. L. MacKenzie, "Shock Incarceration and Positive Adjustment During Community Supervision : A Multisite Evaluation", in MacKenzie, D.L. and Hebert, E. (eds), Correctional Boot Camp : A Tough Intermediate Sanction,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1995.
- R. Martison, "What Works? Questions and Answers about Prison Reform",

- Public Interest 35, 1974.
- R. Spoth, T. Neppl, C. G. Lillehoj, T.Jung and S. R. Mikler, "Gender-Related Quality of Parent-Child Interactions and Early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Family Issues 27, 2006.
- Richard Lawrence and Craig Hemmens, Juvenile Justice-A Text/Reader-, Sage, 2008.
- Richard Lawrence and Mario Hesse, Juvenile Justice, Sage, 2009.
- Steven M. Cox, Jennifer M. Allen, Robert D. Hanser and John J. Conrad, Juvenile Justice-A Guide to Theory, Policy, and Practice, Sage Publications, 2008.
- Steven P. Karr and Robert J. Jones,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Illinois's Incarceration Program", in MacKenzie, D.L. and Hebert, E. (eds), Correctional Boot Camp : A Tough Intermediate Sanction,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1995.
- Stott Henggeler, Home-Based Services for Serious and Violent Juvenile Offenders, Center for the Study of Youth Policy,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4.
- T. C. Castellano and M. S. Plant, "Boot Camp Aftercare Programming : Current Limits and Suggested Remedies", in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eds), Juvenile and Adult Boot Camps,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1996.

4. 독일문헌

- Hans-Jorg Albrecht, Ist das deutsche Jugendstrafrecht noch zeitgemäß ?, Gutachten zum 64. Deutschen Juristentag Berlin, Teil D, München 2002.
- Berne-Dieter Meier/Dieter Roessner, Jugendstrafrecht, Verlag C.H. Beck Muenchen, 2007.

- DVJJ, Mindeststandards zum Jugendarrestvollzug, ZJJ, 2009.
- Eisenberg, Ulrich : Jugendgerichtsgesetz(JGG) Kommentar. 14. Auflage, München 2010.
- Thomas Eisenhardt, Empirische Untersuchungen über die kriminalpolitische und kriminalpädagogische Zweckmäßigkeit und Wirksamkeit des Jugendarrests. 2 Bde. Bonn 1974.
- Thomas Feltes, Der Jugendarrest-Aktuelle Probleme der “kurzen Freiheitsstrafe” im Jugendstrafrecht-, NStZ 1993.
- Franz Streng, Jugendstrafrecht, C.F. Mueller Verlag, 2003.
- Wolfgang Heinz, Das strafrechtliche Sanktionensystem und die Sanktionspraxis in Deutschland 1882 -2008, Stand : Berichtsjahr 2008, Version : 1/2010(<http://www.ki.uni-konstanz.de/kis/>)
- Heribert Ostendorf, Jugendstrafvollzugstrecht, Nomos, 2008.
- Meier/Rössner/Schöch, Jugendstrafrecht, 2. Auflage, München 2007.
- Michael Möller, Die Ausgestaltung des Jugendarrestes in Hamburg und sein Erleben aus Sicht der Arrestanten, Diplomarbeit, Hamburg 2002.
- Müller-Piepenkötter/Kubink, “Warn(schuss)arrest” als neue Sanktion-rationale Perspektiven für eine ewige Kontroverse, ZRP 2008, 176.
- Heribert Ostendorf, Jugendgerichtsgesetz(JGG) Kommentar, 8. Auflage, Baden-Baden, 2009.
- Peter-Alexis Albrecht, Jugendstrafrecht, Verlag C.H. Beck Muenhen, 2000.
- Karl Peters, Die Jugendarrestverordnung, ZStW, 1941.
- Friedrich Schaffstein, Zum Funktionswandel des Jugendarrests. In Gedächtnisschrift für Hilde Kaufmann, Berlin 1986.
- Rudolf Sieverts, Die Erziehungsaufgabe des Jugendarrests, In Thomas Würtenberge(Hrsg.), Kriminologie und Vollzug der Freiheitsstrafe, Stuttgart 1961.
- Franz Streng, Jugendstrafrecht, 2. Auflage, Heidelberg 2008.
- Ulich Eisenberg, Jugendgerichtsgesetz, Verlag C.H. Beck Muenchen, 2009.

Abstract

A Study on the Treatment Measures in the Juvenile Reformatory - Focused on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8 -

LEE Seunghyun, KANG Kyung Rae

In 2007 when the Juvenile Act was revised,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8 was enacted to diversify the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 in accordance with comments that imprisonment in juvenile reformatory was closed and large-sized to be difficult to take care of each young person depending upon their characteristics, and that treatment was simple. The purpose of the protective disposition was the youth at initial stage to improve their personal characters as soon as possible by less than one month education program and to prevent them from doing misdemeanor again. The Ministry of Justice regards the protective disposition as either intermediate treatment in institutional treatment and community treatment or open treatment.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8 makes young people custody at juvenile reformatory during specific period so that it is the institutional treatment. Not only institutional treatment but also community treatment has been mixed not to produce inherent advantages of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8. The juvenile reformatories under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8 are placed at two, that is to say, Cheongju and Daedeok, and no more than ten or more staffs put

education program into practice to be short of manpower and facilities.

Since 2008 when revision of the Juvenile Act was effective and valid, ratio of either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9 or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10 remarkably decreased, while that of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8 rapidly increased. However,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8 is rarely put into practice independently, and it is mostly done together with long-term probation and many kinds of additional dispositions to lose its inherent nature. The 16 to 17 years old young people who are to be given the disposition occupy more than half and the young people who suspend learning at schools occupy more than half. The ones having no previous crime records occupy no more than 19.5%, while the ones having many times misdemeanor records do majority.

No study on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8 was made so far and juvenile reformatory under the protective disposition did not set up operational directions exactly. This study examined nature, operations and contents of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8 to find out problems and to investigate subjects for improvement.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8 has problems:

Firstly, the protective disposition has uncertain nature because of the institutional treatment and the community treatment.

Secondly, no rule and standard have been made to deal with young people under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8. The ones who committed misdemeanor for the first time, or young aged, or had no protection from parents should be taken care under the protective disposition. But, the ones who were inappropriate for purposes of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8, for example the ones were once put into juvenile reformatory, committed misdemeanor repeatedly, violated conditions of probation and so on, were included.

Thirdly,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9 and No.10 regulates management and op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 But,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8 follows internal regulations of

the Ministry of Justice called 『Operating Guidelines of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8』.

Fourthly,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8 don't considered to produce some problems of the merger with long-term probation, and the expansion of the additional order.

Fifthly,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8 should be managed juvenile reformatory openly. But,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8 is a lack of opening factors because of merger with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9 and No.10, and it limits openness by limitation on length of the hair.

Sixthly, as many as 25 programs of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8 are used for one month to be ineffective and to have difficulties at recruitment of experts.

The study suggests reforming way of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8 based on actual condition of operation of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8, findings of the questionnaire survey and investigation into types of short-term custody in foreign countries:

Firstly,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8 shall be used for the ones who need not open treatment and intermediate treatment but short-term institutional treatment. And the program operation shall add openness to overcome problems of institutional treatment and to blend both institutional treatment and community treatment.

Secondly, young people who were not put into juvenile reformatory before shall follow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8, and they shall be given parents' care, and they are much likely to improve personality by education. The custody of too young people in juvenile reformatory is much likely to create negative effects. And,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8 is much likely to be used for the ones who violate conditions of probation. But, the problem shall be solved by another administrative sanction. The young people are imprisoned the physical freedom during a certain period, so that selection of

the young people in target requires definite legal regulations. But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9 and No.10 has same problem as well. So, selection rules of the ones in target of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8, No.9 and No.10 shall be enacted at the stage of revision of laws and regulations. Not only the Ministry of Justice but also the judges of the court shall cooperate actively each other to select group in accordance with uniform standards.

Thirdly, legal base on the regulations of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8 shall be made. Most of regulations of operating Guidelines of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8 have been incorporated into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 so that they need to be clarified in detail. In addition, arrest and its equipment at outdoor activities, and settlement of escape shall require regulations.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8 shall be incorporated not with long-term probation but with short-term probation considering characteristics and educational effects of young people. And, additional order had better be added as less as possible considering return to society, environment and situation.

Fourthly, the juvenile reformatory for young people under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8 shall be set up to open facilities and environment, and small-sized independent institution shall be opened at the regions as less as possible. Teaching staffs who are in charge of young people in accordance with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8 shall be recruited to let them research and develop education programs by set up of professional system.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8 takes care of young people in juvenile reformatory to be likely to be closed, so that external wall of the buildings and physical facility environment needs to reform and to be opened, and to produce atmosphere to let young people adapt to the order of juvenile reformatory by themselves. The young people in juvenile reformatory shall be permitted to grow hair and to overcome alienation from the society after one month education.

Fifthly, education program of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8 shall be made

specialized. They shall develop a program as soon as possible that can be differentiated from basic education program that juvenile reformatory had already adopted. They shall investigate experience and causes of misdemeanor of young people in juvenile reformatory, and make use of individual program by type of misdemeanor, age and gender. The education program shall be open to find out solution of internal problems of young people and to assure of autonomy under regulations as much as possible and to have affirmative ego idea. At the moment, external lecturer is used to solve shortage of teachers of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8. They shall recruit lecturers who can understand juvenile delinquents to be interested in those young people, and a system shall be set up to monitor lecturers continuously. Not only physical resource but also human resource shall be used to help young people under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8 adapt to home and community when they return and to make use of liaison program with community. The juvenile delinquents often have home under poor and bad environment. In addition to the order that asks parents to be trained some hours, systems and programs shall be developed to improve home environment and support the society by strengthening normal family functions.

* Key words: revision of Juvenile Act,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8, juvenile reformatory, open treatment, institutional treatment, specialization of education programs

〈부록〉 설문지

8호처분의 만족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소속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 범죄 및 비행 실태 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온 기관입니다. 올해 연구원에서는 소년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8호처분(1개월 소년원 송치처분)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소년원 8호처분 프로그램이 청소년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은 소년원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의 실태를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될 것이므로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지의 내용은 오로지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며, 응답 내용은 모두 무기명으로 처리됩니다.

설문 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자에게 질문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 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승현 부연구위원

다음은 소년원에서의 8호처분 결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해 주십시오.

1. 당신은 소년원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___ ① 1주일 ___ ② 2주일 ___ ③ 3주일 ___ ④ 4주일

2. 당신은 소년원 들어올 당시 입원일을 지정받았습니까?

___ ① 예(2-1로 이동) ___ ② 아니오(3으로 이동)

※ 입원일 지정이란 보호처분시 판사가 ○월 ○일에 입원하라고 날짜를 지정해주는 경우를 말한다.

2-1. 당신은 소년원에 들어가는 날을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그저 그렇다	불만족	매우 불만족
			(2-2로 이동)	(2-2로 이동)

2-2. 당신이 소년원에 들어가는 날을 지정받은 것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 ① 판사가 임의로 결정해서
- ___ ② 학업 일정에 지장을 받아서
- ___ ③ 부모와 자유롭게 입원할 수 없어서
- ___ ④ 입원일이 너무 촉박해서
- ___ ⑤ 친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 ___ ⑥ 기타 (_____)

3. 당신은 소년원에 들어오는 것 외에 다른 처분(보호관찰, 보호자교육 명령, 대안교육, 외출제한명령 등)도 함께 명령받았습니까?

___ ① 예(3-1로 이동)

___ ② 아니오(4로 이동)

3-1. 당신은 소년원에 들어오는 것 외에 장기보호관찰처분(5호처분)을 함께 명령받았습니까?

___ ① 예(58호 또는 15-8호처분을 받았음)

___ ② 아니오(8호처분만 받았음)

3-2. 당신은 8호처분 명령을 받을 당시 다른 부가처분도 받았습니까? (모두 고르시오)

___ ① 보호자특별교육명령

___ ③ 대안교육

___ ② 야간외출제한명령

___ ④ 기타(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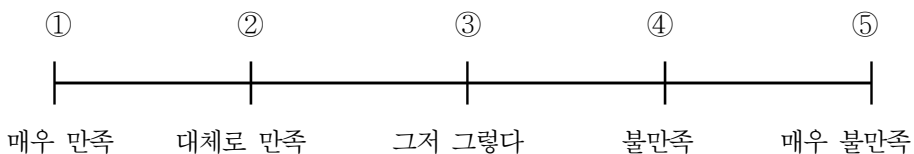
4. 당신은 자신이 받은 처분이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현재 소년원에서의 일상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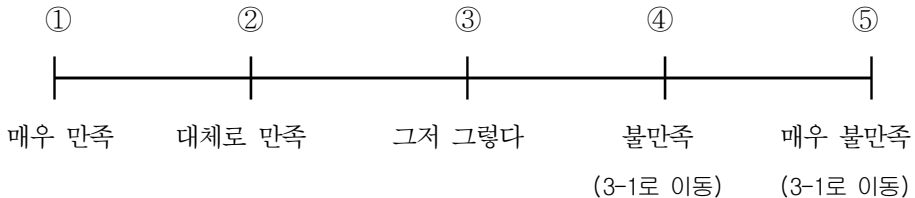
1. 당신은 소년원 생활 전반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2. 소년원에 들어갈 때 머리를 깎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 ① 퇴원 후 학교에 갔을 때 다른 학생들과의 차이가 나서 싫다.
 ___ ② 자유를 구속하는 느낌이 들어 싫다.
 ___ ③ 별 생각이 없다.
 ___ ④ 규칙에 따르도록 유도하는 것이므로 좋다.
 ___ ⑤ 새로운 마음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좋다.
 ___ ⑥ 기타()

3. 당신은 소년원의 생활시설 및 환경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3-1. 소년원의 생활시설 및 환경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모두 고르시오)

- ___ ① 잠자리가 비좁고 불편하다.
 ___ ② 잠금장치, 철창 등이 너무 많다.
 ___ ③ 식사 및 간식이 부실하다.
 ___ ④ 화장실이 불편하다.
 ___ ⑤ 의류침구류가 청결하지 않다.
 ___ ⑥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___ ⑦ 샤워하기에 불편하다.
 ___ ⑧ 냉난방이 잘 안된다.
 ___ ⑨ 세탁하기가 불편하다.
 ___ ⑩ 기타()

4. 당신은 선생님의 일상생활 지도방식에 대하여 만족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그저 그렇다	불만족	매우 불만족
			(4-1로 이동)	(4-1로 이동)

4-1. 선생님의 생활지도방식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고르시오)

- | | |
|---|---|
| ☐ ① 선생님의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 | ☐ ⑤ 과도한 벌주기 |
| ☐ ② 선생님의 무관심 | ☐ ⑥ 잦은 옷 또는 소지품 검사 |
| ☐ ③ 거친 언어 사용 | ☐ ⑦ 선생님의 편애 |
| ☐ ④ 폭력 사용 | ☐ ⑧ 기타() |

5. 당신은 소년원 생활에 있어서 힘든 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고르시오)

- | | |
|-------------------------------------|---------------------------------------|
| ☐ ① 친구들의 괴롭힘 | ☐ ⑤ 선생님의 꾸중과 벌 |
| ☐ ② 구속된 생활 | ☐ ⑥ 가족에 대한 그리움 |
| ☐ ③ 규칙적인 생활 | ☐ ⑦ 금연 및 금주 |
| ☐ ④ 신체훈련 | ☐ ⑧ 많은 수업과정 |
| ☐ ⑨ 기타() | |

다음은 소년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의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해 주십시오.

1. 현재 소년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 ----- ----- ----- -----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그저 그렇다	불만족	매우 불만족
(1-2로 이동)	(1-2로 이동)		(1-3으로 이동)	(1-3으로 이동)

1-2. 당신은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 전반에 대하여 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 ①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 ___ ② 프로그램 자체가 재미있어서
- ___ ③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 ___ ④ 기타(_____)

1-3. 당신이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 전반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 ①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 ___ ② 나랑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 ___ ③ 프로그램이 지루해서
- ___ ④ 내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에 대하여 도움이 되지 않아서
- ___ ⑤ 프로그램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 ___ ⑥ 기타(_____)

2. 당신은 다음의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합니까?

프로그램명	만 족 도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그저 그렇다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⑥ 경험 없다
1)절도비행 예방교육						
2)폭력예방 교육						
3)성비행 예방교육						
4)약물 예방교육						
5)교통안전 교육						
6)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3. 당신은 소년원에서 실시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합니까?

프로그램명	만 족 도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그저 그렇다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⑥ 경험 없다
1)미술치료						
2)인간관계 회복프로그램						
3)두드림						
4)영화치료						
5)세상열기						

(자아성장 회복프로그램)						
6)법교육 프로그램						
7)음악치료						

4. 당신은 소년원에서 실시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프로그램명	만 족 도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그저 그렇다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⑥ 경험 없다
1)자연친화교육						
2)사회봉사활동						
3)스포츠교실 (축구)						
4)솔로몬파크 (법체험활동)						
5)인라인교실						
6)댄스교실						
7)등산						
8)전통체험						

5. 당신은 소년원에서 실시한 교양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프로그램명	만 족 도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그저 그렇다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⑥ 경험 없다
1)독서클리닉						
2)전문직업인과의 만남						
3)보호관찰안내						

6. 위의 프로그램 중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과 그 이유를 모두 적어주세요.

프로그램명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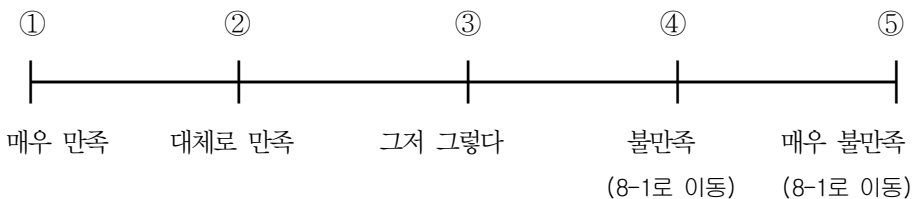
이 유 : _____

7. 위의 프로그램 중 싫었던 프로그램과 그 이유를 모두 적어주세요.

프로그램명 : _____

이 유 : _____

8. 교육을 받는 동안 교육시설 또는 환경에 만족스러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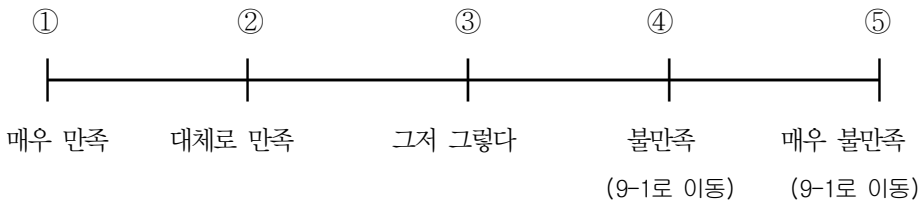


8-1. 당신이 교육시설 또는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 ① 교실 등 교육장소가 비좁다

- ___ ② 교육기자재가 낡았다.
 ___ ③ 책걸상이 몸에 맞지 않아 불편하다.
 ___ ④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___ ⑤ 기타(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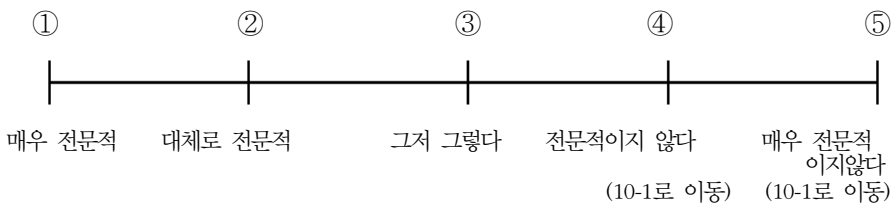
9. 교육을 받을 동안 선생님의 수업진행방식에 대하여 만족스러웠습니까?



9-1. 선생님의 수업진행방식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 ① 수업이 너무 일방적이다.
 ___ ② 이해하기 어렵게 설명한다.
 ___ ③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수업을 진행한다.
 ___ ④ 교육시간이 너무 길다.
 ___ ⑤ 수업준비 및 진행에 성의가 없다.
 ___ ⑥ 기타(_____)

10. 당신은 교육을 하는 선생님이 전문적이라고 생각합니까?



10-1. 교육담당 선생님이 전문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소년원에서의 교육 효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해 주십시오.

1. 소년원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의 생활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한 것은 언제입니까?

- ___ ① 판사로부터 처분을 받았을 때
 ___ ② 소년원에 들어오면서부터
 ___ ③ 신입자 교육을 받으면서
 ___ ④ 소년원의 교육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___ ⑤ 소년원 퇴원 직전
 ___ ⑥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

2. 소년원에서의 교육은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습니까? (모두 고르시오)

- | | |
|-------------------|----------------------|
| ___ ① 잘못에 대한 반성 | ___ ⑥ 책임감 |
| ___ ② 가족에 대한 사랑 | ___ ⑦ 준법의식 |
| ___ ③ 타인 이해 및 배려 | ___ ⑧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습득 |
| ___ ④ 인내심 | ___ ⑨ 효과 없다 |
| ___ ⑤ 자기 이해와 자기존중 | |
| ___ ⑩ 기타(_____) | |

3. 퇴원 이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 | | |
|------------------|-----------------|
| ___ ① 학교 복학 | ___ ④ 계획 없음 |
| ___ ② 구직 또는 취업준비 | ___ ⑤ 기타(_____) |
| ___ ③ 검정고시 준비 | |

4. 퇴원 후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 | |
|------------------------|-----------------|
| ___ ① 주위의 따뜻한 시선 | ___ ④ 복학 또는 구직 |
| ___ ② 부모님과의 관계 개선 | ___ ⑤ 생계의 안정 |
| ___ ③ (선량한) 친구들과의 교우관계 | ___ ⑥ 기타(_____) |

5. 소년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 | |
|---------------------------------------|--|
| ☐ ① 교육프로그램의 개선 | ☐ ④ 시설 및 환경의 개선 |
| ☐ ② 선생님의 전문화 | ☐ ⑤ 기타() |
| ☐ ③ 자율적인 생활화 | |

다음은 개인신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해 주십시오.

1. 당신은 몇 살입니까? (만)세

2.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 | |
|------------------------------|------------------------------|
| ☐ ① 남 | ☐ ② 여 |
|------------------------------|------------------------------|

3. 당신은 소년원에 들어오기 전 누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까?

- | | |
|-----------------------------------|-----------------------------------|
| ☐ ① 부모 | ☐ ④ 부 또는 모 |
| ☐ ② 조부모 | ☐ ⑤ 아동복지시설 |
| ☐ ③ 형제자매끼리 | ☐ ⑥ 기타() |

4. 당신의 현재 교육정도는 어떠합니까?

- | | |
|------------------------------------|------------------------------------|
| ☐ ① 초등학교 재학 | ☐ ⑥ 중학교 졸업 |
| ☐ ② 초등학교 유예 | ☐ ⑦ 고등학교 재학 |
| ☐ ③ 초등학교 졸업 | ☐ ⑧ 고등학교 유예 |
| ☐ ④ 중학교 재학 | ☐ ⑨ 고등학교 졸업 |
| ☐ ⑤ 중학교 유예 | ☐ ⑩ 대학교 재학 |

5. 소년원에 들어오기 전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___ ① 학생
 ___ ② 아르바이트생
 ___ ③ 무직
 ___ ④ 기타(_____)

6. 당신 가족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___ ① 월 100만원 미만
 ___ ② 월 100만원~200만원
 ___ ③ 월 200만원~300만원
 ___ ④ 월 300만원 이상

7. 당신은 어떠한 비행을 저질러서 소년원에 들어왔습니까?

- ___ ① 재산범죄(절도, 사기, 공갈) ___ ⑤ 보호관찰 위반
 ___ ② 강력범죄(살인, 강도) ___ ⑥ 도로교통법 위반
 ___ ③ 폭력범죄(폭행, 상해) ___ ⑦ 성폭력범죄(강간, 강제추행)
 ___ ④ 과실범죄(과실치사상) ___ ⑧ 기타 (_____)

8. 당신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 ① 우발적·충동적 ___ ⑤ 생활비 마련을 위해
 ___ ② 호기심에 ___ ⑥ 친구의 유혹에 못 이겨
 ___ ③ 실수로 ___ ⑦ 기타(_____)
 ___ ④ 유흥비 마련을 위해

9. 비행을 저지를 당시에 공범이 있었습니까?

- ___ ① 있었다. ___ ② 없었다.

10. 다음 중 당신이 경험한 적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 ___ ① 흡연, 음주 ___ ⑤ 성경험

- | | |
|------------|------------------------|
| ___ ② 가출 | ___ ⑥ 본드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경험 |
| ___ ③ 자살시도 | ___ ⑦ 없다 |
| ___ ④ 문신 | |

11. 당신은 이전에도 잘못을 저질러 경찰서에 간 경험이 있습니까?

- ___ ① 있다 (회) ___ ② 없다

12. 당신은 이전에도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___ ① 있다(12-1로 이동) ___ ② 없다

12-1. 당신이 이전에 보호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처분의 종류는
무엇이었습니까?

- | | |
|-------------------|----------------------|
| ___ ① 보호자감호위탁(1호) | ___ ⑤ 아동복지시설 수용(6호) |
| ___ ② 수강명령(2호) | ___ ⑥ 소년원 입원(9, 10호) |
| ___ ③ 사회봉사명령(3호) | ___ ⑦ 모르겠다. |
| ___ ④ 보호관찰(4, 5호) | |

-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연구총서 10-08

소년원의 처우방안에 대한 연구
-8호처분을 중심으로-

발 행 / 2010년 12월

발행인 / 김일수

발행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02)575-5285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인 쇄 / 디자인프리즘
(02)2264-1728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정가 10,000원

ISBN 978-89-7366-847-2 93360